

월간
재정포럼

2020. April_Vol.286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4

권두칼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조세·재정의 역할 | 이우진

현안분석

재정성과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 | 장우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 | 오종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수당 세금 공제 조치 발표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조세·재정의 역할 | 이우진 02

현안분석

재정성과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 | 장우현 08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 | 오종현 3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수당 세금 공제 조치 발표 외 66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조세·재정의 역할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올해 1월 초 중국 우한 지방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곧바로 주변 국가들로 옮겨가더니 1월 말 부터는 유럽과 미주로 급속히 퍼져나가 급기야 3월 중순에는 WHO가 지구 적 확산(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고 사망자 가 속출하면서 올림픽도 연기되었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아비규환이다. 국민 건강보험을 갖추지 못한 미국에서는 세계의 패권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 게 가장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통해 대응해야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마트, 영화관, 공연장, 관광지 등에서는 평소 시끌벅적하던 광경을 찾아볼 수 없고, 공장들은 멈추어 섰으며 회사들은 무급휴직 권고와 인원 감축을 하고 있다. 연쇄 부도와 대량 해고가 목전이고 나라로 떨어질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이다. 4월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세 가 꺾이지 않는다면 감염보다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곤란 때문에 더 많은 생 명이 희생당할까 우려스럽다.

코로나19가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이유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 양쪽 모 두에 충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노동력 손실,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교통마비,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부진, 공장의 가동 중단 등은 공급에 가해지는 충격 이다. 반면 소비 위축, 불확실성으로 인한 구매 연기 등은 수요에 가해지는 충 격이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 동시 충격을 주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통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에 ‘선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그리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적절히 조합하여 금융위기와 실물위기에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출렁이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막으며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가 양적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정책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재정정책을 소홀히 하면서 완화적 대출정책만 편성하는 것은 정부부채의 증가가 무서워 민간부채의 증가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격이다. 거의 0%대의 실질금리하에서 정부부채의 증가를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우선 ‘한시적’으로나마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 현금수당을 지원하는 재정지출(긴급재난수당)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컨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3~4개월 정도 지급하는 정책은 검토해볼 만하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과 달리 아주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을뿐더러 선별의 비용도 크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와 주민등록제도가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급 대상자를 빠른 시간 안에 판별할 수 있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은 현행 복지제도의 개편과 함께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볼 수는 있어도 시급성을 요하는 현재의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둘째,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대폭 증액과 실업수당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 현금수당이나 기본소득 지급은 수요 측 충격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공급 측 경제충격에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현금수당이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공장가동 중단이나 폐업을 막을

●●●●●●●●●●
**출렁이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막으며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
**‘재난사회보험기금’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전 국민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평상시에 보험료를
 내고 사회재난 시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의 보험기금이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돌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어렵다면 최소 한두 개의 돌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재정을 기본소득이나 현금수당에만 쏟아부을 수 없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업에는 해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추가적인 추경편성을 통해서 재원을 대폭 더 늘려야 한다. 당분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도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긴급재난수당과 고용유지지원금 외에도 정부지출이 필요한 곳은 엄청나게 많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심각하면서도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신뉴딜)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재난사회보험기금’의 설립을 검토해 볼 만하다. 전 국민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평상시에 보험료를 내고 사회재난 시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의 보험기금이다. 현재 30여개의 재난기금이 존재한다. 이는 대부분 재난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이나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후죽순 격인 다양한 재난기금도 통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기금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편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신속한 대응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불러올 사회변화의 방향성

전염병이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발본(拔本)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사례는 많다. 14세기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손실을 안겨준 흑사병이 대표적이다. 흑사병으로 노동력이 희소해지면서 실질임금이 크게 상승한 반면, 지대는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봉건영주의 경제적 지위는 약화되고 농촌 노동자의 협상력과 이동성은 강화되었으며, 중국에는 기계화에 의한 생산과 장거리 교역 등이 촉진되었다. 흑사병이 봉건제를 해체하고 근대적 정책과 제도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어떤 발본적 변화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경제는 그간의 경제질서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1980년대 이래 진행되어 온 고삐 풀린 세계화와 금융 자유화에 대한 통렬한 반성, 공공의료의 확대 및 전 국민 건강보험의 확립 등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화와 금융 자유화, 공공의료의 와해, 전 국민 건강보험의 미확립 등이 사태를 악화시킨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것이다. 다만 변화의 방향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하다.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여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적 연대감이 어떻게 적극적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경제는 그간의
 경제질서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 현안분석 |

■ 재정성과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

장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재정성과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

I. 서론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wchang@kipf.re.kr)

재정성과관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 지출의 실제 성과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항시 인정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재정 확장기의 논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배가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기본적 기능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재정집행 시기와 달리, 정부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지출하는 재정 확장기의 논의에 있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추가·확대되는 재정정책들이 실제로 의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혹은 거둘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IMF와 KDI 등 국내외의 주요 거시경제연구기관은 현재 한국이 충분한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여력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재정 확장기의 재정지출에 있어 의도한 성과가 있다면 지출해야 하지만, 성과가 없다면 성과를 개선하거나 지출하면 안 된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재정성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지출이 과연 기대한 만큼의 국민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성과를 관리하는 재정당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 등 주요 재정정책에서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과학적인 정량평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산출물이 국민경제적 성과에 대한 근

거와 관리상의 함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경우, 우리나라의 2,800여개 단위사업 중 약 1,700여개를 관리하고 있고 개별 단위사업당 단수 또는 복수의 성과지표들이 나열되어 있어 기본정보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파편화된 수천 개의 성과지표로부터 실제 어떤 국민경제적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함의를 얻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현업의 부담은 많이 주면서도 실제 효과성에서는 의문이 든다는 문제의식 아래, 2019년 초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선정하고 많은 시간과 재원을 배정하여 제도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정당국과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연말 기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한 후 대안적 접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문제점 분석과 개선안 제시가 추상적인 내용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해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완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목적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서론과 연결되는 제II장에서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해 조망한다. 제III장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며, 이어지는 제IV장에서는 개별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V장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제III장과 제IV장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제V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2019년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소개

본 장에서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9년 현재 재정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는 ① 성과계획서/보고서 검토, ② 핵심사업평가, ③ 재정사업심층평가, ④ 재정사업자율(자체)평가, ⑤ 기금/보조금/부담금 평가, ⑥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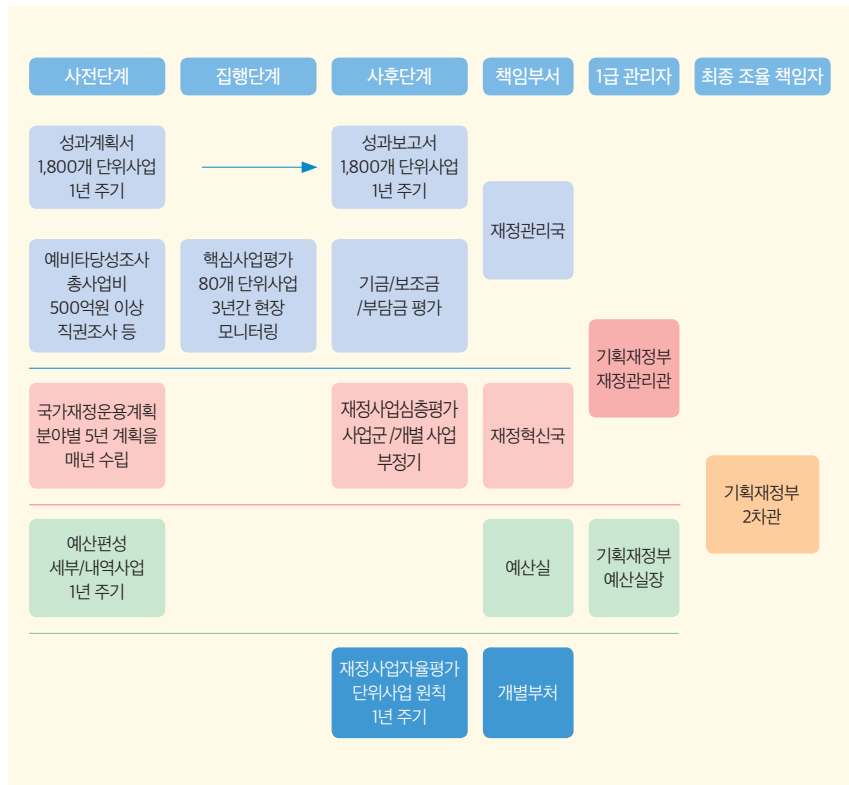
[그림 1]은 저자가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분류하여

본고에서는
2019년 연말 기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대안적 접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분류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도식화한 것이다.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사전단계 관리, 집행단계 관리, 사후 단계 관리로 구분하고 책임부서와 담당 1급 관리자 및 최종 조율 책임자로 구성했으며, 규모와 주기 등의 정보를 함께 담았다.

[그림 1] 2019년 말 대한민국의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



출처: 저자 작성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예산 단위

먼저 [그림 1]과 이후 논의 전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예산사업의 단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현행 예산제도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도하는 예산제도인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

적으로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부처 중심 품목별 예산전달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진정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볼 수는 없다. 참고로 과거의 품목별 예산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부처 중심의 분류로서, 부처의 사업들을 부처-국-과 등 조직의 규모별로 구분한 것이 사업 단위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후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와 같은 부처 중심의 예산제도에서는 여러 부처에 존재하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대상이 동일한 사업을 하나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없어 전 부처의 사업을 일일이 찾아보는 별도의 작업 없이는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파악할 수 없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에 존재하지만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는 각 부처의 해당 실 또는 국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므로 동일 목적의 사업이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원칙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를 전제하고, 현재의 사업 단위는 위계별로 다음과 같다. 가장 큰 분류기준은 ‘분야’, 다음으로는 ‘부문’, 그다음은 한 부처 내 한 개의 실 또는 국의 업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그 아래에 ‘단위사업’, 단위사업 아래에 ‘세부사업’, 세부사업 아래 ‘내역사업’이 존재한다. 주의할 점은 규모 면에서 본다면 단위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단위사업이 있고, 내역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이 있다는 점이다. 즉, 사업 단위는 상위로부터의 개별적 위계를 나타낼 뿐 중요도나 위상 면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이 반드시 다른 단위사업에 속한 세부나 내역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앞서 다룬 성과관리제도 중 본고에서 제시하는 개선방향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그리고 핵심사업평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¹⁾

2.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제도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매년 기획재정부가 개별부처에 요청하여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별로 재정성과지표를 정하고 달성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예산 편성 전에 부처별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별로 어떤 성과지표로 어떤 수준의 목표치를 정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부처 중심의 품목별 예산전달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진정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보기는 힘들다.

1) 모든 평가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논지를 약하게 할 수 있어 본고에서는 요약표를 제시하고 예시적 제도에 한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성과계획서에 담긴
전략목표 I의 프로그램
단위 성과지표와
단위사업들에 대해
예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할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성과계획서가 작성되며, 예산 집행 후 실제 계획서대로 성과지표들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보다 공식적인 정의로 대한민국정부(2020)에 따르면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 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정의되며,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으로 매년 1,700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지만,²⁾ 본 장에서는 본고에서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대안적 예시를 들어 살펴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부 2019년 성과계획서에 담긴 전략목표 I의 프로그램 단위 성과지표와 단위사업들에 대해 예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은 전략목표 I의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지표이다.

<표 1> 중소기업부 2019년 성과계획서 전략목표 I의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지표

| 전략목표 I.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장기성장을 도모한다. | | |
|--|----------------------|--------|
| 프로그램 목표 | 성과지표 | 목표치 |
| 프로그램 목표 I-1.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성장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 | 정책자금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 | 13.80% |
| 프로그램 목표 I-2. 보증지원을 통해 산업금융을 원활히 지원한다. | 신규보증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 | 9.3% |

출처: 중소기업부, 「2019년 성과계획서」를 기초로 저자 작성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지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먼저 중소기업부는 전략목표 I에서 정책 지원기업들의 매출액을 주된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로서 프로그램 목표 I-1의 하위 단위사업 성과지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프로그램 목표 I-1은 <표 2>와 같이 다섯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한민국정부(2020)에 따르면 2020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54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80개, 프로그램 목표 465개, 단위사업 1,735개로 구성되어 2019년도에 비해 전략목표 수는 2개 증가, 프로그램 목표는 1개 감소, 단위사업은 36개 감소하였다.

<표 2> 중소기업본부 2019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 1-1 산하 단위사업 성과지표

| 프로그램 목표 1-1.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성장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 | | |
|--|----------------------|--------|
| 단위사업 | 성과지표 | 목표치 |
| 단위사업 1: 신용보증기관출연 |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 65.1조원 |
| | 신용보증기관 운용배수 | 12.5배 |
| 단위사업 2: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 | 진단기업 매출액 증가율 | 11.2% |
|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 38.5% |
| | 재창업자금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 6.9% |
| 단위사업 3: 성장안정자금(기금) | 지원업체 인당 매출액 증가율 | 12.1% |
| | 수출 증가율 | 7.8% |
| 단위사업 4: 투융자복합금융지원(기금) | 지원업체 매출액영업 이익률 | 5.26%p |
| 단위사업 5: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 보증수혜업체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 8.37% |

출처: 중소기업본부, 「2019년 성과계획서」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2>의 예에서는 단위사업별로 1~3개의 성과지표가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질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의 성과지표 외 4개 사업의 8개 성과지표 역시 자금공급과 운용배수 등의 투입지표 및 매출액과 고용 등 양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핵심사업평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핵심사업평가

핵심사업평가는 다른 평가와 달리 과정에서의 집행을 관리하는 재정성과관리 제도로 2018년 최초 도입되어 첫 시행 중인 평가이기에 별도의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핵심사업평가는 1,700여개가 넘는 단위사업 중 중요성과 대표성, 파급성을 기준으로 핵심적인 성격, 즉 성공해야 하는 사업을 골라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관리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핵심사업평가는
다른 평가와 달리
과정에서의 집행을
관리하는
재정성과관리제도로
2018년 최초 도입되어
첫 시행 중이다.

핵심사업평가는 선정된 사업을 최장 3년간 성과관리하는 제도로서 관리 단위는 단위사업이다. 2019년에는 82개의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안을 중간 도출하였다.

핵심사업평가는 선정된 사업을 최장 3년간 성과관리하는 제도로서 관리 단위는 단위사업이다. 최초 80개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82개의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안을 중간 도출하였다. 2020년 3년차의 최종 평가가 마무리 되면 사업별 최종 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사업평가의 경우 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실제 사례를 들어 제시할 수는 없지만, 평가 과정에서 원래의 제도설계나 재정당국의 의도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경우, 명실상부하지 않은 사업관리, 유사 및 연관 사업과의 단절 사례, 불합리한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발굴되고 있다.

최초로 시행하는 평가인만큼 시행착오도 있고, 현장점검 시의 다양한 제약에 따른 한계가 있어 단점도 있는 평가임에는 분명하다. 예컨대 현재 선정된 사업들이 진정한 80개의 핵심사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재정당국은 재정 성과관리에 심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업에 개입하는 것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이와 같은 시도를 진정한 핵심사업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면, 그리고 재정당국이 정책의 공동 참여자이기보다 심판으로서의 판단 기준을 현장에 알려주는 역할과 재정당국의 역량을 살려 현장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요컨대 핵심사업평가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지만 잠재적인 장점도 많은 평가일 수 있으므로 근시안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리려는 시도가 필요한 관리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Ⅲ. 재정성과관리의 문제점

우리는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다양한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많은 제도가 존재함에도,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불만족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재정성과관리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다음에 서술하는 사항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점들이 어떻게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고 대안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V장에서 중소기업정책을 사례로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재정성과관리의 본질적 접근 미흡

본 절에서는 먼저 재정성과관리는 본연의 목표와 가치를 가져야 함에도, 제도와 운용 면에서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기존 예산제도의 차용 및 확장에 기반한 접근을 해왔음에 대해 지적하기로 한다.

본질적으로 재정성과관리는 집행된 재정이 국민경제의 목표에 맞춰 예산에 걸 맞는 국민경제적 가치(Value for Money)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즉, 재정성과관리에 있어서는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민경제적 상위 가치를 명확히 하고, 개별 사업들이 해당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체계를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재정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제 성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재정성과관리 제도에서 이와 같은 본질적인 접근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성과관리가 예산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오류로 볼 수 있다. 예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예산제도의 틀과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후에 보다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재정성과관리만의 본질적인 가치창출 없이 기존 예산제도의 틀과 관점에서 재정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재정성과관리의 산출물들은 기존의 예산제도에 기여할 점이 없어지고 연계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예산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성과관리당국이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재정성과 정보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단순히 예산사업 뒤에 성과지표 몇 개를 나열하고 달성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예산당국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거나 새로운 정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 본질적 인프라 부적절 - 정책분류체계의 문제

앞 절에서 제기한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 사업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다뤄보기로 하자. 재정성과관리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에 적합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이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미시적 지원정보가 결집되어야 함은 당연하

먼저 제도와
운용 면에서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기존 예산제도의
차용 및 확장에
기반한 접근을
해왔음에 대해
지적하기로 한다.

현재의 재정성과관리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는
 예산분류체계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올바른 재정성과관리
 방향을 추구하기
 어렵다.

지만, 현재의 재정성과관리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는 예산분류 체계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올바른 재정성과관리 방향을 추구하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을 육하원칙 및 상호배제와 전체포괄(MECE: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원칙에 따라 정보 중심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의 예산분류는 기본적으로 성과관리보다는 예산을 부처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우편번호와 유사한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산 차원에서는 반드시 잘못된 분류라고 볼 수는 없다. 예산의 목적은 성과관리 목적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별 부처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절한 금액을 전달하는 것도 예산제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선방안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재정성과관리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책분류는 부적절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해당 사업을 왜 하는지, 즉 국민경제적 상위 목표가 무엇이며 해당 사업에서 국민경제적 상위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택해야 할 전략적 관리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현재의 예산코드와 사업명에 적절히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과목 체계는 명목적으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표방하고 있다. 프로그램예산제도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정부의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계층구조를 통해 예산과목을 정한다. 이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사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도한 체계로, 조직의 성과목표와 성과평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현행 예산과목 체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기존의 부처 중심 예산제도의 분류를 프로그램 예산의 형태로 매칭한 것이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품목별·장·관·항식 분류는 프로그램으로 매칭할 수 있어 사실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류체계이다. 대표적으로 부처 간 동일/유사 목표 사업들이 프로그램 단위에서 확인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타 부처에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있어도 프로그램 차원에서 재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3> 품목별 예산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 품목별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세목 | 목 |
|----------------|-----|-----|-----------|-----|------------------|--------|------------|
| 예산체계 (2006)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실·국 | 세부사업 | 지역사업 등 | 예산편성 비목 |
| 프로그램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 단위사업 | | 목 |
| 예산체계 (2007) | 대기능 | 중기능 | 실·국별 정책사업 | | 정책사업의 하위 단위사업 | | 예산편성 비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0), p. 5 [표 1]

3. 재정성과관리 전문가 유인구조의 미흡

재정성과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을 객관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당국이 추구해야 하는 국민경제적 상위 목표를 이해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의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한 전문성도 겸비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비록 기본적으로 재정성과관리는 재정당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용하는 것이지만, 부족한 인원과 공무원의 순환보직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당국이 개별 분야의 세부적인 전문성과 재정적인 입장을 함께 겸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재정당국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력이 긴 전문가들은 유인구조상 국민경제적 입장보다는 사업의 입장, 주무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쉬우며 자칫 개별 부처에 포획될 가능성도 있다. 용역과제의 유인구조나 장기적 관계 측면에서 볼 때 개별 부문의 전문가들은 재정당국의 입장을 취하기보다 현업 부서의 입장을 취할 인센티브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에 있어 제도를 구축한다고 해도 운용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미흡하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재정성과관리에서는 제도 설정에 지나친 기대와 중심을 두고 접근하는 모습이 보인다. 물론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재정성과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 단위를 바꾸는 등 설계 측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여도, 그 제도를 운영할 전문성과 전략성이 없다면 잘 설계된 사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재정성과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목적을
이해하고 분야의
전문성도 겸비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체계는 미흡하다.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재정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에서는
정교한 전략적 계획이
없는 단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있다. 물론 현행 제도에서도 재정성과관리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해당 지원체계는 보조급 전문가는 물론 재정의 전문성과 개별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하고 전략적 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책임급 전문가들이 충분히 존재함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국민경제와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미흡한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4. 전략성의 미흡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재정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에서는 정교한 전략적 계획이 없는 단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국민경제적인 상위 전략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교하고도 다차원적인 하위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부분의 승리를 모아 전체의 승리를 꾀한다는, 사실상 전략으로 볼 수 없는 단순성과관리 전략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지원에 있어 전 영역, 전 사업, 전 대상에서의 양적 증가를 전략으로 하므로, 산업환경에 관계없이 지원기업의 유형자산을 유사 비지원기업에 비해 증가시킨다. 특히 침체기나 축소기에 있는 지원 기업들에서 유사 비지원기업 대비 재고자산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장우현 외, 2019). 상식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과잉에 처한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할 때 총자산이나 유형자산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절약된 자원은 보다 수요가 많은 산업으로 재배분하도록 해야겠지만, 정책자금이 성장이나 우량산업뿐만 아니라 축소와 침체 산업에도 살포형으로 주어지는 것은 물론 중간 목표도 ‘확장’이므로, 공급과잉 상황에 오히려 공급을 증가시키는 이중고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정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산업과 기업의 일자리는 줄이고 성장산업이나 기업으로 재배치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적 목표인 일자리의 순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모든 사업, 모든 지원 대상에서 일자리 확대를 추구하여 실제 일자리 순증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장우현·강희우, 2018 참고). 전략이라는 말을 차용해 온 군사 분야에서 만일 전전선(全

戰線)에서 전진하여 개별 병사들이 최대한 적을 많이 섬멸하라는 계획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전략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재정집행과 성과관리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 구조가 대규모로 용인되는바,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5. 과학적 근거와 평가환류의 미흡

마지막으로 짚어볼 문제점은, 재정성과관리에 있어서 실제 지출구조조정이나 사업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객관적이며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재정성과관리 산출물은 지출구조조정의 근거가 될 정도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지출되고 있는가, 국민경제적 성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가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성과관리산출물은 예산불용, 설계부적절 등 지출구조조정과는 관계가 낮은 체크리스트형 문제 지적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관리에서는 체크리스트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해서 해결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과가 있고 국민경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예산집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역시 성과가 있을 수 있으나 설계가 부적절하면 설계를 적절하게 하면 되므로 체크리스트에서의 지적사항이 지출구조조정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이력에 기초한 과학적인 정책조준분석과 정책성과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적 성과 입장에서 성과가 부족한 사업, 정부의 재정지출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구분하여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성과를 제고해야 할 사업은 잘 운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충분한 분석과 과학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V. 재정성과관리의 개선방향

제III장에서는 현행 재정성과관리의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제IV장에서는 앞서 다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어질 제V장에서는 이와 같은 개선방향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짚어볼
현행 재정성과관리의
문제점은 과학적 근거와
평가환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국민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독자적인
정책분류체계와 관점,
전략을 기초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정정책과 관련한 기존의 성과관리의 문제점과 새로 제안하는 성과관리 방향에 따른 개선안을 비교해 제시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먼저, 재정성과관리제도는 기존 예산편성 체계의 파생제도가 아닌 국민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독자적인 정책분류체계와 관점, 전략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재정성과관리에 있어 예산의 보조적 접근이 아닌, 재정성과관리 본위접근이 본연의 가치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예산과 연계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예산편성과는 다른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독자적 가치를 가진 재정성과관리체계가 예산과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성과관리에 기반한 업그레이드된 예산편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 번째 개선방향으로, 현행 사업들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분류체계를 구축하여 과목구조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재정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 기준, 즉 본고에서 제안하는 기본 원칙으로는 육하원칙 기준으로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준 정책분석을 통해 이질적인 사업들로 구성된 상위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을 파악하여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위사업인 프로그램의 성격과 속해 있는 단위사업의 성격을 비교했을 때 상위사업의 목적과 하위사업의 목적이 상이하거나 상위사업의 주요 정책 대상과 하위사업의 정책 대상이 상이하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분류를 통해 정책의 중복 집행과 사각지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수단과 목적 및 대상을 공유하면서 지원 주체만 다른 사업들은 부처 중복사업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특정 대상이나 특정 목적에 있어 설계가 누락된 사업들은 정책사각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더하여, 사업분류가 이뤄질 경우 정책 이력을 분류된 개별 사업 기준으로 정리하여, 뒤에 언급할 과학적 평가에서 비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한 예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상이한 수단의 정책효과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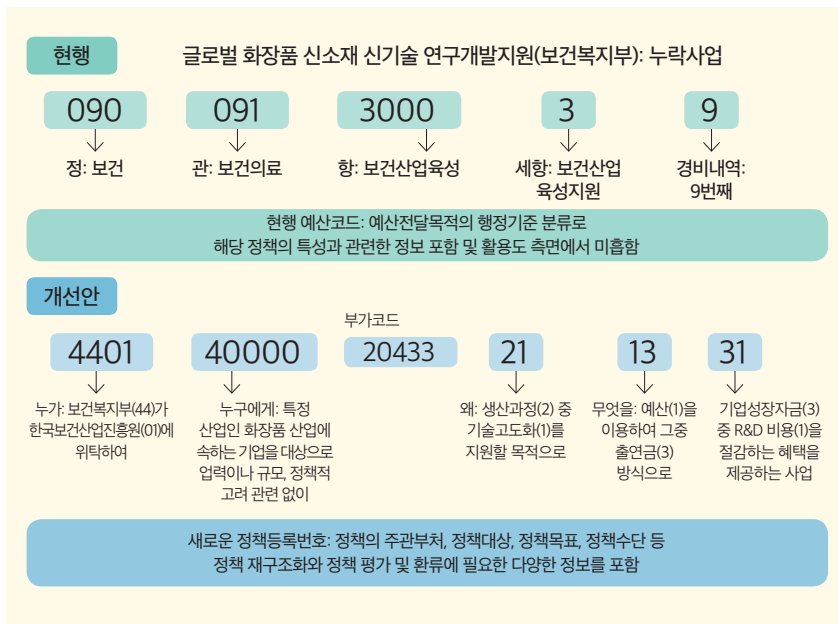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재정성과관리 본위 입장에서의 사업분류체계를 제시하면, 부처 구성과 예산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오히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오히려 재정성과관리 중심의 접근을 통해 다른 분야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는 장우현(2015)에서 제시했던 중소기업정책등록번호체계 구축의 예시이다. 같은 사업을 분류하더라도 재정성과관리의 입장에서 정보 기준으로 사업을 분류한다면, 재정성과관리에 적합한 정보를 집결하여 앞서 제시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분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해당 사업이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 화장품 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출연금 사업이라는 것 등을 재정성과 기준 정보분류에서는 쉽게 확인하고 선택해낼 수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사한 사업들을 용이하게 찾아내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강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성과관리
본위 입장에서의
사업분류체계를
제시하면,
부처 구성과
예산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오히려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 중소기업 정책등록번호체계구축 예시



출처: 장우현(2014)

새로운 재정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국민경제적 목표에 대한 이해와 개별 사업의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개선방향으로, 전문가 집단의 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재정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국민경제적 목표에 대한 이해와 개별 사업의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분야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분야별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재정당국의 관점과는 더 멀어진다는 딜레마가 있고 재정성과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은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장기간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의 성격과 미션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업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재정성과관리 전문가로 함께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접근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개별 부처에 포획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재정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재정 전문가들에게 분야 전문성을 가질 기회와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성과관리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업만으로도 충분한 경제적, 학술적 유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이거나 학술적인 유인이 있더라도 학자들은 재정당국과 해당 분야 양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 적어도 특정 기간 동안은 이해관계의 상충을 막기 위해 독점적으로 계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해당 전문가들은 특정 기간 동안 재정당국의 성과관리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개별 부처가 주관하는 분야별 용역과제나 평가 등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금전적인 이해관계 외에도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에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전문가들의 참여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근거 기반 정책평가는 과학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굳이 큰 재원을 들여 전문가들을 확보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주 민감한 현재의 정책을 제외하고 과거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로는 앞서 지적한 전략성 미흡에 대한 대안을 논하고자 한다. 재정성과관리의 전략성 제고에 있어서는 상위사업과 하위사업 간, 그리고 개별 사업 내에 있어서도 정책 대상과 집행기관 간 전략적 역할 차별화를 위한 논리모형 정교화와 성과지표 연계분석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위 전략목표와 하위 전략목표를 전략적으로 연계해 모든 사업을 “왜”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략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군사학에서도 무적의 전략·전술이 없는 것처럼 재정성과관리 전략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근거로 전략이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망치와 모루, 주공과 조공, 청야 전술 등 다양한 전술·전략이 사용되는데 반해 재정성과관리에서는 단순한 전전선(全戰線) 전진과 전전선 후퇴 수준의 일차원적 접근이 용인되는바 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성과관리 차원에서 집행 부서들이 개별 사업에 추구하는 전략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해당 전략의 실현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의 정립이 필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소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떤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근거기반의 과학적 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이전에는 활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료와 방법론들이 등장하고 이와 같은 변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 명확히 예측됨에도, 재정성과관리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대응이 느린 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과학적 평가가 정책적 결론까지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타당한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재정당국과 성과관리 전문가들이 이미 가능한 과학적 평가까지 외면하는 현실은 극복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특성상 평가를 받는 대상들은 우려와 반발을 할 수 있지만, 재정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최근 일자리나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재정당국의 과학적 평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던 해당 부처들이 자신들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경우는 타

다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과 마찬가지로 재정의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자료와 과학적인 방법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거기반의 성과관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지난 7년간의
중소기업 및
일자리 정책에 관한
과학적 정량평가 중심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앞서 제시한
재정성과관리의
개선방향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부처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이력을 확보하여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재정당국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들에도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재정성과관리에 있어 과학적 평가에 따른 근거 기반 접근은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V장의 중소기업정책 예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V. 재정성과관리 개선방향 세부 예시: 중소기업정책

본 장에서는 장우현 외(2013), 장우현(2014), 장우현 외(2014), 장우현(2016), Chang(2017), 장우현·강희우(2018), 장우현 외(2019) 등 지난 7년간의 중소기업 및 일자리 정책에 관한 과학적 정량평가 중심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앞서 제시한 재정성과관리 개선방향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정책의 재정성과관리에서 중심에 두어야 할 국민경제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소기업정책의 국민경제적 목표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자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승강사다리를 통해 성장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임은 물론,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근거에 기반한 목표이다.³⁾

<표 4> 2011년 경제총조사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

(단위: %)

| 구분 | 대기업 | 핵심중소기업 | 소상공인 |
|-----------|-------|--------|-------|
| 기업 | 0.15 | 7.74 | 92.10 |
| 사업체 | 2.30 | 9.59 | 88.11 |
| 매출액 | 60.98 | 26.68 | 12.34 |
| 영업이익 | 61.47 | 18.46 | 20.06 |
| 상용종사자 수 | 31.39 | 52.16 | 16.44 |
| 상용종사자 지급액 | 43.42 | 46.37 | 10.22 |
| 종사자 수 | 22.46 | 37.49 | 40.05 |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소개한 연구들을 참고 바람

<표 4>의 계속

| 구분 | 대기업 | 핵심중소기업 | 소상공인 |
|------------------|--------|--------|-------|
| 종사자 지급액 | 40.95 | 45.86 | 13.19 |
| R&D 지출액(경상연구개발비) | 67.98 | 29.52 | 2.50 |
| 평균(100%) 대비 비율 | 대기업 | 핵심중소기업 | 소상공인 |
| 종사자당 지급액 | 182.35 | 122.31 | 32.94 |
| 상용종사자당 지급액 | 138.29 | 88.89 | 62.13 |
| 종사자당 영업이익 | 273.72 | 49.25 | 50.10 |

주: 1. 소상공인은 5인(서비스업) 또는 10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운송업) 미만 사업체임

2. 핵심중소기업은 법적인 중소기업이면서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함

3. 대기업에는 중견기업이 포함됨

출처: 장우현(2013); 통계청, 「2010년 경제총조사」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보아도 2010년 물리적 사업장이 존재하는 사업체 및 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체의 37.49%의 고용 수준을 보이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18.46%로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의 22.46%를 고용하면서 영업이익의 61.47%를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수익성은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총요소 생산성이나 총자산 영업이익률 등을 구해서 살펴보아도 이는 상당히 일관적이며, 시점에 있어서도 2015년 경제총조사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적 목표에서 볼 때에, 제II장에서 검토한 성과지표들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종 목표인 생산성과 수익성이 아닌, 양적 결과지표로 볼 수 있는 매출액 또는 투입지표인 지원규모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과학적 평가 결과의 요약과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단기 매출액의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및 수익성과 관계가 없거나, 특히 정책이 개입했을 경우에는 역의 관계를 강력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하지 않은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당국은 현업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중기벤처기업부 등에 중소기업정책과 관련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에 상응하는 수익성 또는 생산성 지표를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적어도 지원받은 기업들이 지원받지 않은 유사기업 대비 더 유의한 생산성 또는 수익성 개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산업 단위와 전체 경제 단위에서도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재정당국은 현업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중기벤처기업부 등에 중소기업정책과 관련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에 상응하는 수익성 또는 생산성 지표를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재정성과관리에 있어서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완화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여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성과관리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요컨대, 중소기업의 재정성과관리에 있어서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완화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여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성과관리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추구하는 중소기업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생산적인 기업정책임을 의미한다는 점을 부연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은 헌법적 가치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중소기업정책의 목적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

두 번째로는 정책분류체계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은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지만, 적절한 정책분류체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장우현(2014) 등에서 제안했던 정책분류체계의 구축은 제안과 달리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예산주기와 별도로 정책을 사후 분류하고 있어 재정성과관리에 있어서는 유용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재정당국은 지금이라도 이를 육하원칙 및 상호배제와 전체포괄(MECE) 원칙에 따라 시급히 분류할 필요가 있다. 장우현(2016)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분류체계 코드북과 실제 분류체계 구현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당국의 정책분류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장우현(2014)에 따른 정책분류 활용 예시

| 지원 목적과 지원 수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묶어 공동운영/통폐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 | | | | | | | | | |
|---|-------|-------|----|----|----|----------|-------|-------|-----|
| 사업명 | 주관 기관 | 수행 기관 | 입력 | 업종 | 규모 | 특정 정책 대상 | 목적 | 수단A | 수단B |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41 | 03 | 0 | 1 | 0 | 06 | 21 | 16 | 31 |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42 | 06 | 0 | 1 | 0 | 00 | 21 | 16 | 31 |
| 생산/기술고도화 | | | | | | | 재정/설비 | R&D자금 | |
| 산업융합 촉진(R&D) | 41 | 01 | 0 | 0 | 0 | 16 | 21 | 13 | 31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 | 42 | 04 | 0 | 0 | 0 | 16 | 21 | 13 | 31 |
| 생산/기술고도화 | | | | | | | 재정/출연 | R&D자금 | |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R&D) | 41 | 02 | 0 | 0 | 0 | 15 | 21 | 10 | 31 |
|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R&D) | 41 | 00 | 0 | 0 | 0 | 54 | 31 | 10 | 31 |
| 생산/기술고도화 | | | | | | | 재정/일반 | R&D자금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42 | 05 | 0 | 0 | 0 | 00 | 21 | 13 | 31 |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 | 42 | 05 | 0 | 0 | 0 | 00 | 21 | 13 | 31 |
| 창업성장기술 개발 ¹⁾ | 42 | 04 | 0 | 0 | 0 | 00 | 21 | 13 | 31 |
| 생산/기술고도화 | | | | | | | 재정/출연 | R&D자금 | |

4)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자: 2020년 3월 23일):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5>의 계속

| 지원 목적과 지원 수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묶어 공동운영/통폐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 | | | | | | | | | |
|---|-------|-------|----|----|----|----------|----|-----|-----|
| 사업명 | 주관 기관 | 수행 기관 | 입력 | 업종 | 규모 | 특정 정책 대상 | 목적 | 수단A | 수단B |
| 소재부품기술 개발 | 41 | 01 | 0 | 2 | 0 | 11 | 21 | 13 | 31 |
| 소재부품기술 기반 혁신 | 41 | 02 | 0 | 2 | 0 | 11 | 21 | 13 | 31 |
| 신산업 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 24 | 03 | 0 | 2 | 0 | 54 | 21 | 11 | 31 |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주력 및 신산업) | 41 | 01 | 0 | 2 | 0 | 05 | 21 | 11 | 31 |
| 기술확산 지원 | 24 | 03 | 0 | 2 | 0 | 00 | 21 | 13 | 31 |

주: 1. 표에 제시된 사업들은 주관기관이나 대상은 다르지만 목적(21: 생산/기술고도화), 수단B(R&D자금)가 동일한 사업들임

1) 창업, 성장, 재도약과제는 모두 한 사업에 포함됨

출처: 장우현(2014)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의 성격을 육하원칙에 따라 분류하면 유사 성격을 지닌 사업들을 묶어내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데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이 기업들이 정부가 제공한 설비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라는 점은 사업명 또는 예산코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반면, 육하원칙에 따라 재정성과관리 관점에서 분류한 코드에서는 이 점이 명확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전문가의 문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본 장의 서두에서 제시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본과제와 재정당국의 용역의뢰과제에 따라 한 명의 연구자가 주도하여 수행한 것이다. 저자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여 충분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수는 있으나, 충분한 시간과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된다면 국책연구원 재정 관련 연구자가 이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재정당국을 지원하는 정책연구기관에 재정 입장에서 접근하되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한 책임연구자급 전문가들을 양성한다면, 재정성과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로는 과학적 평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다양한 자료 및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지원기업의 매출액이나 총자산, 단순 고용 등 양적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원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과 월지급액 등 질적 지표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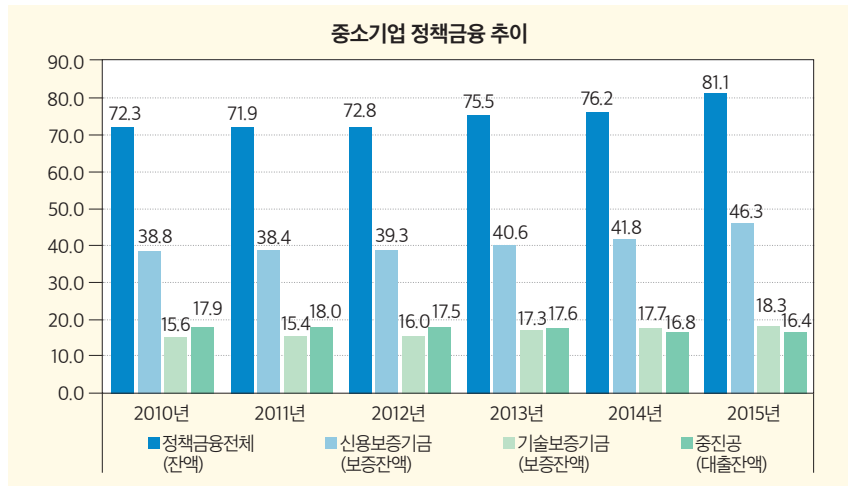
<표 5>와 같이 정책의 성격을 육하원칙에 따라 분류하면 유사성격을 지닌 사업들을 묶어내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지원기업의 양적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질적 지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음(-)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을 나타낸다.

어서는 오히려 음(-)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개별 기업에 영향이 있다고 해도, 산업이나 전체 경제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정책은 성과지표에 투입요소가 포함된 점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되지만 그 양적인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주요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규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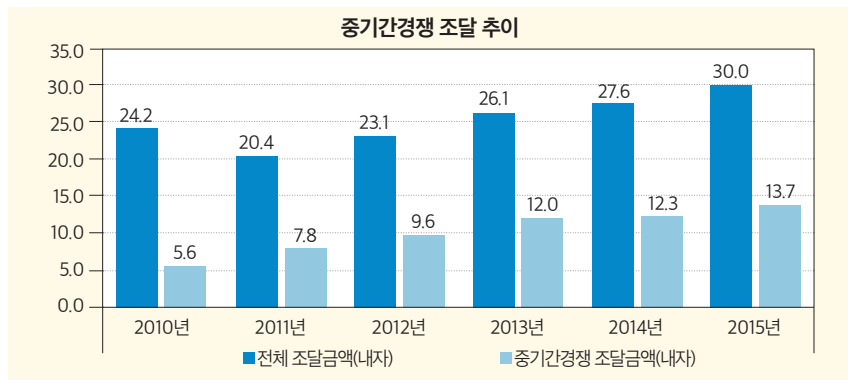
(단위: 잔액 기준, 1조원)



출처: 지원이력 자료 기준, Chang(2017)의 기초통계를 그림으로 가공

[그림 4] 공공조달 중기간경쟁 조달추이

(단위: 조달청 내자, 1조원)



출처: Chang(2017)에 의함

마지막으로 앞서 개선방향에서 제시했던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도 과학적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함께 다뤄보기로 한다. 재정당국은 경제성장의 기획과 효율적 재정지출을 위해 실제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에 기반한 전략적 정책기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효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 평가를 통해 효과가 높은 정책은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정책은 축소하는 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전략은 선택의 문제이다. 만일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정책의 총량 규모를 축소적으로 관리하여 한계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추구할 수도 있다. 만일 총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싶다면, 중소기업정책 내부 배분을 전략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일한 지출금액으로도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에 맞춰 중간 목표를 설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우현 외(2019)에서는 기업이 축소나 침체 산업에 분류되는 곳에 속할 경우 정책들이 오히려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증가를 야기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최종 목표인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축소나 침체산업 소속 기업들의 경우는 오히려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중간 목표로 정하는 것이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 특성별 비교에 따른 재배분이다. 성과가 더 높은 특성을 지닌 기업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예컨대 저업력 기업의 경우는 경제 이론적으로 정부 지원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기업들이므로 시장에 정보가 충분히 알려진 고업력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재원을 저업력 기업으로 재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성 개선을 위해 절대평가는 물론 상대평가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원기관 간 비교를 통해 동일 목적 및 수단의 경우 성과가 더 높은 기관 추가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수단 간 비교도 중요하다. 만일 동일 목적의 경우 성과가 더 높은 정책수단을 확장하여 배분한다면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고 국민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적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연동 배분을 통해 성과개선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정당국은
경제성장의 기획과
효율적 재정지출을
위해 실제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에 기반한
전략적 정책기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효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정당국은
중소기업정책의 효과성
개선을 위해서 현업
부처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6> 장우현 외(2014)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부그룹정량평가 결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 매출 | 영업 이익 | 수익성 평가 | 고용 | 인당 지급액 | 고용 평가 | 종합 평가 | 생존율 | |
|----------|---------|-------|--------|----|--------|-------|-------|-----|----|
| 종합성적 | A | D | × | A | B | ○ | △ | 가중 | |
| 규모별 | ~30인 | A | C | ○ | A | B | ○ | ○○ | 가중 |
| | 31~100인 | B | D | ×× | A | C | ○ | × | 가중 |
| | 101인~ | B | D | ×× | B | C | × | ××× | 가중 |
| 업력별 | 0~5년 | A | B | ○ | A | B | ○ | ○○ | 가중 |
| | 6~10년 | A | C* | ○ | B | C | × | △ | 가중 |
| | 11년~ | A | D | × | B | C | × | ×× | 가중 |
| 이익별 | 영업이익 | A | D | × | A | B | ○ | △ | 가중 |
| | 영업손실 | A | C | ○ | A | C | ○ | ○○ | 가중 |
| 신규자금성적 | A | C** | ○ | A | A | ○ | ○○ | 가중 | |

주: 1.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와 지원기관의 지원이력을 연계해 구축한 자료를 활용한 자체 추정결과에 따라 2009년 정책자금의 2011년 효과를 평가한 것임. 광업과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만을 포함함
2. * P값이 7.8%로 D에 가까움 ** P값이 6.1%로 D에 가까움
출처: 장우현 외(2014)

<표 7> 장우현 외(2014)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세부그룹정량평가 결과

| 신용보증기금 | 매출 | 영업 이익 | 수익성 평가 | 고용 | 인당 지급액 | 고용 평가 | 종합 평가 | 생존율 | |
|--------|---------|-------|--------|-----|--------|-------|-------|------|----|
| 종합성적 | C | D | ×× | B | C | × | ××× | 가중 | |
| 규모별 | ~30인 | B | D | ×× | B | C | × | ××× | 가중 |
| | 31~100인 | C | D | ×× | B | D | ×× | ×××× | 가중 |
| | 101인~ | C | C | × | C | B | × | ×× | 가중 |
| 업력별 | 0~5년 | C | C | × | C* | C | × | ×× | 가중 |
| | 6~10년 | C | C | × | B | C | × | ×× | 가중 |
| | 11년~ | B | D | ×× | B | C | × | ××× | 가중 |
| 이익별 | 영업이익 | A | C | ○ | A | C | ○ | ○○ | 가중 |
| | 영업손실 | D | D | ×× | B | C | × | ××× | 가중 |
| 신규자금성적 | B | C | × | B** | B | × | ×× | 가중 | |

주: 1.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와 지원기관의 지원이력을 연계해 구축한 자료를 활용한 자체 추정결과에 따라 2009년 정책자금의 2011년 효과를 평가한 것임. 광업과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만을 포함함
2. * P값이 7.9%로 D에 가까움 ** P값이 5.4%로 A에 매우 가까움
출처: 장우현 외(2014)

<표 8> 장우현 외(2014)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세부그룹 정량평가 결과

| 기술보증기금 | 매출 | 영업 이익 | 수익성 평가 | 고용 | 인당 지급액 | 고용 평가 | 종합 평가 | 생존율 | |
|--------|---------|-------|--------|----|--------|-------|-------|-----|----|
| 종합성적 | B | C | × | A | D | × | × | 가중 | |
| 규모별 | ~30인 | A | ○ | A | D | × | △ | 가중 | |
| | 31~100인 | B | C* | × | A | D | × | 가중 | |
| | 101인~ | B | C | × | B | C | × | - | |
| 업력별 | 0~5년 | A | B | ○ | A | B | ○ | ○○ | 가중 |
| | 6~10년 | B | B | × | A | B | ○ | △ | 가중 |
| | 11년~ | C | C | × | B | D | × | × | 가중 |
| 이익별 | 영업이익 | A | C | ○ | A | D | × | △ | 가중 |
| | 영업손실 | B | B | × | B | D | × | × | 가중 |
| 신규자금성적 | B | D | × | A | B | ○ | × | 가중 | |

주: 1.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와 지원기관의 지원이력을 연계해 구축한 자료를 활용한 자체 추정결과에 따라 2009년 정책자금의 2011년 효과를 평가한 것임. 광업과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만을 포함함
 2. * P값이 7.9%로 D에 가까움 ** P값이 5.4%로 A에 매우 가까움
 출처: 장우현 외(2014)

<표 6>~<표 8>은 2009년 정책금융지원이 광업·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의 2008년부터 2011년간 성과에 미친 영향을 성향점수짜짓기법을 이용하여 세부그룹별로 평가한 성적표이다. 통계적 유의성 5% 기준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는 A, 유의한 음(-)의 효과는 D, 유의하지 않은 효과들은 B와 C로 표시하였다. 기관간의 차이도 확인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30인 미만 규모 기업지원의 경우는 매출액은 늘고 영업이익은 감소가 유의하지 않는 등 바람직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예시한 결과 자체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재정당국과 현업 부처들이 이를 참고로 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략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전략에는 정량적 근거와 명료하면서도 정교한 논리, 의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정책평가는 기본 도구가 되어야 하며, 전략은 사전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략에는 정량적 근거와 명료하면서도 정교한 논리, 의도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정책평가는 기본 도구가 되어야 하며, 전략은 분명하게 사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정성과관리의 독자적 관점에 따라 분류체계와 전문가 그룹을 인프라로 구축하고 과학적 정책평가와 환류를 도입하여 전략성을 강화하여 접근한다면, 향후 재정성과관리의 효과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기존 주력산업의 퇴조에 따른 산업구조 진부화에 대한 우려와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 경제에 있어, 향후 재정정책은 주요한 대응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부인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성과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여 소중한 재정성과가 저하된다든지, 오히려 부작용이 의도한 작용을 압도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에, 재정당국은 재정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정성과관리에 있어 국민경제적 목표에서 출발하는 재정성과관리 중심의 관점을 기반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정책분류체계와 전문가 집단을 인프라로 갖추면서 과학적 정책평가와 환류를 도입하여 전략성을 강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재정성과관리를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 본고에서 제안한 내용이 관심 있는 독자와 정책담당자들에게 작은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상)』, 2010.
- 대한민국정부, 『2019년도 성과계획서(중소벤처기업부)』, 2018.
- _____, 『2020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9.
- 장우현, 『중소기업 정책 효율성 제고방안: 정책전달체계 혁신과 지원방식 전환』,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2014.
- _____,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KDI, 2016.
- 장우현·강희우, 『일자리 재정정책의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장우현·강희우·김빛마로, 『산업 및 기업재정정책 효율화를 위한 동태적 산업재정정책 평가분석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장우현·양용현·우석진,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3.
- _____,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4.
- Chang, W.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ublic Procurement on the Productivity and Survivability of SMEs: Case of the Korean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9(1) 2017, pp. 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 검색일자: 2020년 3월 23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

I. 서론

주거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주거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가격 및 임대료 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직접적인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낮고 안정적인 임대료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거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고는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고, 이러한 편익이 소득 계층과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임대료 편익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임대주택은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를 임대료 편익으로 정의한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편익이 증진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jhoh@kipf.re.kr)

본고와 유사한 연구로는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가 있다.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는 가계에 귀착되는 사회적 현물이전의 규모를 추정하면서 유승동·김주영(2017)의 방법을 준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고는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의 기초자료를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최신화하고, 임대료 편익 추정방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유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임대료 결정 요인으로 주거환경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한다. 제Ⅱ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분석 대상 표본인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공공임대주택 현황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중 대표적인 것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업무편람』을 통해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임대주택 145만 7천호 중 약 36%인 52만 4천호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50년 임대를 포함한 영구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약 22.4%인 32만 7천호가 공급되었다. 즉,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약 58.4%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는 공공임대주택은 24만 1천호가 공급되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은 19만 5천호가 공급되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약 13.4%를 차지하며, 전세임대주택과 유사한 매입임대주택은 10만 3천호가 공급되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약 7.1%를 차지한다. 그 밖에 장기전세주택, 사원임대주택, 행복주택은 각각 3만 3천호, 1만 8천호, 1만 6천호가 공급되어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임대주택
145만 7천호 중
약 36%인 52만 4천호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표 1> 2017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단위: 만호, %)

| 구분 | 합계 | 영구임대(50년 포함) | | | 국민 임대 | 행복 주택 | 장기 전세 | 분양전환 공공임대 | | | 사원 임대 | 매입 임대 | 전세 임대 |
|----|-------|--------------|------|------|-------|-------|-------|-----------|------|-----|-------|-------|-------|
| | | 소계 | 영구 | 50년 | | | | 소계 | 10년 | 5년 | | | |
| 재고 | 145.7 | 32.7 | 21.7 | 11.0 | 52.4 | 1.6 | 3.3 | 24.1 | 16.8 | 7.3 | 1.8 | 10.3 | 19.5 |
| 비중 | 100 | 22.4 | 14.9 | 7.5 | 36.0 | 1.1 | 2.2 | 16.6 | 11.5 | 5.0 | 1.2 | 7.1 | 13.4 |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택업무편람』, p. 399

본고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크게 임대기간, 공급대상, 주택규모, 임대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40㎡ 이하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무주택이면서 소득 1~4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30년으로 영구임대주택보다 짧고,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보다 넓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보다 높게 책정된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존재한다. 2019년 적용기준 소득요건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100% 이하(전용면적 60~85㎡ 이하)인 사람이다. 자산요건은 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표 2>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제도 비교

| 구분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
| 목적 | • 최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거 지원 |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 임대기간 | • 50년 이상 | • 30년 이상 |
| 입주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100% 이하(전용면적 60㎡ 초과) • (자산요건) 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 주택규모 (전용면적) | • 40㎡ 이하 | • 60㎡ 이하 |
| 임대조건 | • 시세의 30% | • 시세의 60~80% |

출처: 1.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택업무편람』, p. 246
 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LH/index.html#GUD::CLCC_GUD_0040:1020301, 최종접속일: 2020. 4. 14.

본고는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한다.

III. 주거실태조사 기초통계량

1. 분석 대상 표본

본고는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한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국토교통부, 2019)에 따르면 「주거실태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다. 동 조사는 2006년 처음 실시된 이후 2016년까지는 격년으로 수행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통해 이용 가능한 원시자료 중 가장 최근에 공표된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전체 유효표본
6만 1,275가구 중
33.3%인 2만 384가구가
임대주택 가구이다.
「주거실태조사」에서
임대주택 가구는 크게
민간임대,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기타임대 가구로
구분된다.**

해당 자료는 2018년 7월 2일~12월 7일에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모집단은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주택 및 가구이며, 목표표본수는 6만 1천가구, 유효표본수는 6만 1,275가구이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의 전체 유효표본 6만 1,275가구 중 33.3%인 2만 384가구가 임대주택 가구이다. 「주거실태조사」에서 임대주택 가구는 크게 민간임대,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기타임대 가구로 구분된다. 기타임대주택에는 공무원임대아파트, 군인아파트, 회사사택, 마을회관 임대, 지자체 제공 상가임대주택, 국유지로서 시에서 임대하는 주택 등이 포함된다. 전체 임대주택 가구 중 민간임대주택 가구는 1만 6,594가구로 약 81.4%를,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3,299가구로 약 16.2%를 차지한다. 즉, 전체 임대주택 가구 중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가구가 약 9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 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기타임대주택 가구는 각각 372가구와 119가구로, 전체 임대가구 중 각각 약 1.8%와 약 0.6%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다.

<표 3> 주택점유 유형 및 임대주택 유형별 표본 관측치

(단위: 가구)

| 주택점유 유형 | 임대주택 유형 | | | | 합계 |
|------------|---------|-------|--------------|------|--------|
| | 민간임대 | 공공임대 | 분양전환 공공임대 | 기타임대 | |
| 전세 | 7,389 | 443 | 84 | 67 | 7,983 |
| 보증금 있는 월세 | 7,938 | 2,846 | 288 | 42 | 11,114 |
| 보증금 없는 월세 | 917 | 10 | 0 | 2 | 929 |
| 사글세 또는 연세 | 349 | 0 | 0 | 8 | 357 |
| 일세 | 1 | 0 | 0 | 0 | 1 |
| 합계 | 16,594 | 3,299 | 372 | 119 | 20,384 |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민간임대주택 가구의 주택점유 유형을 살펴보면, 약 92.4%가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만 6,594가구 중 약 44.5%인 7,389가구가 전세 형태로 거주하며, 약 47.8%인

7,938가구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299가구 중에서는 약 86.3%인 2,846가구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거주 가구의 90% 이상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164가구 중에서는 약 81.7%인 134가구가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10가구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대주택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299가구 중 88.7%인 2,925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주택점유 유형별 표본 관측치

(단위: 가구)

| 공공임대주택 유형 | 주택점유 유형 | | | 합계 |
|--------------|---------|-----------|-----------|-------|
|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
| 영구임대주택 | 97 | 931 | 0 | 1,028 |
| 국민임대주택 | 112 | 1,528 | 0 | 1,640 |
| 행복주택 | 3 | 142 | 0 | 145 |
| 장기전세주택 | 134 | 30 | 0 | 164 |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 95 | 213 | 10 | 318 |
| 기타 | 2 | 2 | 0 | 4 |
| 합계 | 443 | 2,846 | 10 | 3,299 |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임대주택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299가구 중 88.7%인 2,925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 가구가 6,075가구로 전체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약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약 30.6%인 5,084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다세대주택과 일반 단독주택에도 각각 1,534가구와 1,168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인 372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은 모두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모두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
가구가 6,075가구로
전체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약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약 30.6%인
5,084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 가구 중 일반 단독주택에 13가구, 다가구 단독주택에 199가구, 영업겸용 단독주택에 2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주택 유형 및 임대주택 유형별 표본 관측치

(단위: 가구)

| 주택 유형 | 임대주택 유형 | | | | 합계 |
|---------------------------------|---------|-------|--------------|------|--------|
| | 민간임대 | 공공임대 | 분양전환 공공임대 | 기타임대 | |
| 일반 단독주택 | 1,168 | 13 | 0 | 0 | 1,181 |
| 다가구 단독주택 | 6,075 | 199 | 0 | 0 | 6,274 |
| 영업겸용 단독주택 | 724 | 2 | 0 | 0 | 726 |
| 아파트 | 5,084 | 2,925 | 372 | 106 | 8,487 |
| 연립주택 | 564 | 48 | 0 | 0 | 612 |
| 다세대주택 | 1,534 | 112 | 0 | 3 | 1,649 |
| 비거주용 건물 (상가·공장·여관 등) 내 주택 | 174 | 0 | 0 | 0 | 174 |
| 오피스텔 | 790 | 0 | 0 | 0 | 790 |
| 고시원 | 356 | 0 | 0 | 0 | 356 |
|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37 | 0 | 0 | 3 | 40 |
| 기타 | 88 | 0 | 0 | 7 | 95 |
| 합계 | 16,594 | 3,299 | 372 | 119 | 20,384 |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6>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주택점유 유형별 표본 관측치

(단위: 가구)

| 공공임대주택 유형 | 주택 유형 | | | | | | 합계 |
|-----------------|------------|-------------|--------------|-------|----------|-----------|-------|
| | 일반 단독주택 | 다가구 단독주택 | 영업겸용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 주택 | 다세대 주택 | |
| 영구임대주택 | 0 | 0 | 0 | 1,004 | 9 | 15 | 1,028 |
| 국민임대주택 | 0 | 0 | 0 | 1,592 | 15 | 33 | 1,640 |
| 행복주택 | 0 | 0 | 0 | 138 | 2 | 5 | 145 |
| 장기전세주택 | 0 | 0 | 0 | 154 | 1 | 9 | 164 |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 13 | 199 | 2 | 35 | 19 | 50 | 318 |
| 기타 | 0 | 0 | 0 | 2 | 2 | 0 | 4 |
| 합계 | 13 | 199 | 2 | 2,925 | 48 | 112 | 3,299 |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의 분석 대상 표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3,299가구 중 약 78.6%인 2,596가구가 아파트 형태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 대상 표본을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면서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 추정 시 비교 대상이 되는 민간임대주택 또한 분석 대상 주택 유형을 아파트에 한정한다. 또한, 주택점유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모두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형태로 점유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임대주택 역시 해당 유형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임대료 결정 모형에서 고려하는 주요 변수인 임대료와 건축연한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가구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최종적으로 임대료 결정 모형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총 7,343가구이며, 이 중 민간임대주택 가구가 5,027가구,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954가구, 국민임대주택 가구가 1,552가구이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 표본을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면서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표 7> 임대료 결정 요인 분석 대상 표본

(단위: 가구)

| 주택 유형 | | 주택점유 유형 | | 합계 |
|--------|--------|---------|-----------|-------|
| |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
| 민간임대주택 | | 3,397 | 1,440 | 5,027 |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85 | 869 | 954 |
| | 국민임대주택 | 95 | 1,457 | 1,552 |
| | 소계 | 180 | 2,326 | 2,506 |
| 합계 | | 3,577 | 3,766 | 7,343 |

주: 주택 유형은 모두 아파트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임대주택자의 경상소득과 임대료 분포 비교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된다. 본고는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식 (1)과 같이 월간 임대료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식 (1)에서 $Rent_j$ 는 가구 j 의 월환산 임대료이고, DP_j 는 전월세 보증금, CR 은 전월세전환율, $MonRent_j$ 는 가구 j 가 매월 부담하는 월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된다. 본고는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식 (1)과 같이 월간 임대료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세이다. 전월세전환율은 <표 8>과 같이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조사시점인 2018년 7~11월¹⁾의 지역별·규모별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한다.

$$Rent_j = \frac{DP_j \times CR}{12} + MonRent_j \quad \text{식 (1)}$$

<표 8> 지역별·규모별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

(단위: %)

| 지역 | 면적 | | |
|---------|--------|---------------|--------|
| | 60㎡ 이하 | 60㎡ 초과~85㎡ 이하 | 85㎡ 초과 |
| 전국 | 5.18 | 4.40 | 4.30 |
| 서울특별시 | 4.30 | 3.80 | 4.00 |
| 부산광역시 | 5.12 | 4.32 | 4.28 |
| 대구광역시 | 4.92 | 4.20 | 4.22 |
| 인천광역시 | 5.22 | 4.52 | 4.68 |
| 광주광역시 | 5.54 | 4.84 | 4.48 |
| 대전광역시 | 6.00 | 4.30 | 4.36 |
| 울산광역시 | 5.32 | 4.38 | 4.10 |
| 세종특별자치시 | 5.24 | 4.94 | 4.86 |
| 경기도 | 4.96 | 4.50 | 4.40 |
| 강원도 | 7.20 | 5.38 | 4.74 |
| 충청북도 | 6.66 | 4.96 | 4.50 |
| 충청남도 | 6.84 | 4.84 | 4.86 |
| 전라북도 | 6.70 | 5.06 | 4.90 |
| 전라남도 | 8.98 | 4.68 | 4.20 |
| 경상북도 | 6.52 | 4.98 | 4.42 |
| 경상남도 | 5.56 | 4.66 | 4.42 |
| 제주특별자치도 | 5.04 | 4.70 | 4.30 |

주: 2018년 7~11월 평균
출처: 한국감정원, 「규모별 전월세전환율」, <https://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 검색 일자: 2020. 1. 20.

이하에서는 임대료 결정 요인 분석 대상에 포함된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경상 소득과 임대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균등화한 소득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분석 대상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경상소득은 약 190만 2천원인

1) 실제로는 2018년 12월 7일까지 조사되었으나 12월은 전체 31일 중 7일만 포함되어 월평균 전월세전환율 계산 시 12월은 제외하였다.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전세 거주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234만 6천원으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 거주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인 148만 3천 원보다 높다. 월평균 경상소득을 임대주택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229만 9천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128만 5천원인 국민임대주택, 90만 1천원인 영구임대주택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 세부 유형별 월평균 경상소득의 순위는 주택점유 유형을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한정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임대주택 세부 유형별로 소득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Ⅱ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국민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자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지만 소득 1~4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료상에는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거주 가구라도 균등화 경상소득이 400만원을 넘어가는 고소득 가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입주 시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입주 이후 소득수준이 상승하는 등의 변화가 있는 가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전세 거주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234만 6천원으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 거주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인 148만 3천원보다 높다.

<표 9>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균등화 경상소득 기초통계량

(단위: 가구,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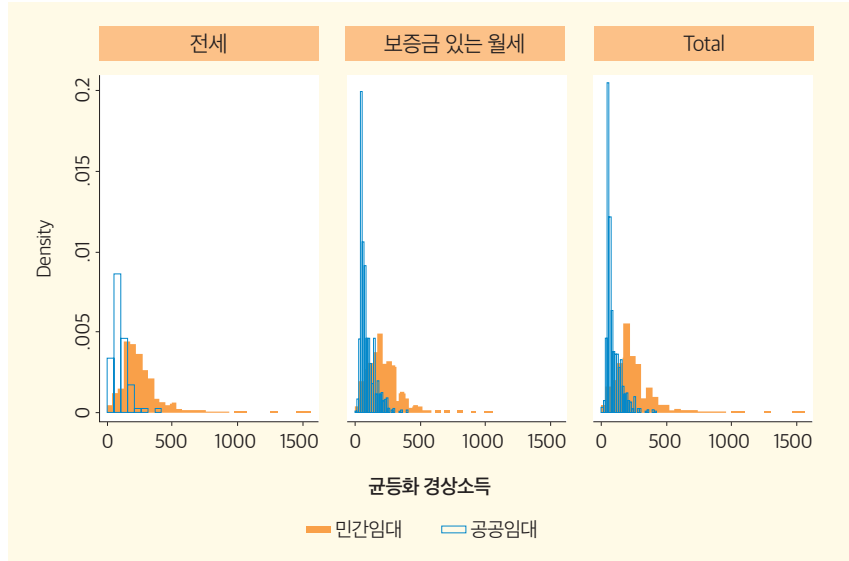
| 구분 | 관측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전체 | 7,273 | 190.21 | 119.26 | 0.00 | 1,558.85 |
| 민간임대 | 4,781 | 229.93 | 121.63 | 0.00 | 1,558.85 |
| 영구임대 | 943 | 90.12 | 57.03 | 0.00 | 420.00 |
| 국민임대 | 1,549 | 128.53 | 66.15 | 0.00 | 409.92 |
| 전세 | 3,530 | 234.61 | 123.38 | 0.00 | 1,558.85 |
| 민간임대 | 3,356 | 240.00 | 123.13 | 0.00 | 1,558.85 |
| 영구임대 | 79 | 100.30 | 61.96 | 0.00 | 420.00 |
| 국민임대 | 95 | 155.93 | 68.79 | 20.00 | 353.55 |
| 보증금 있는 월세 | 3,743 | 148.33 | 98.34 | 0.00 | 1,060.66 |
| 민간임대 | 1,425 | 206.20 | 114.63 | 0.00 | 1,060.66 |
| 영구임대 | 864 | 89.19 | 56.50 | 0.00 | 404.15 |
| 국민임대 | 1,454 | 126.74 | 65.60 | 0.00 | 409.92 |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임대주택 세부 유형별로
소득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림 1]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균등화 경상소득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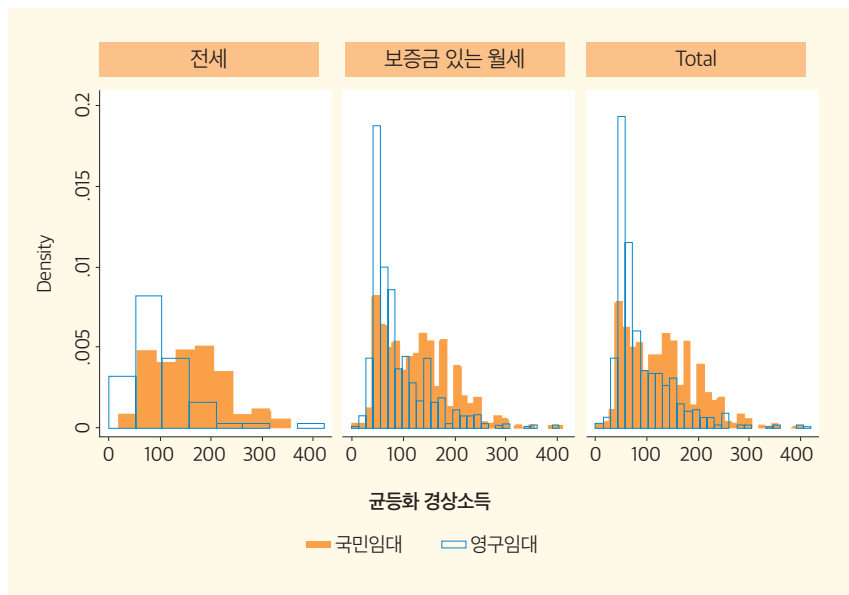
(단위: 만원)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균등화 경상소득 분포 비교

(단위: 만원)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임대주택의 월평균 균등화 임대료는 35만 8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주택의 월평균 임대료 또한 경상소득과 마찬가지로 전세 거주 가구의 전월세 환산 월간 임대료가 47만 1천원으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 거주 가구의 월간 임대료인 25만 2천원보다 높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는 46만 2천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보다 높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가 18만 7천원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인 10만 9천원보다 높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가 18만 7천원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인 10만 9천원보다 높다.

<표 10> 주택점유 유형별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균등화 임대료 기초통계량

(단위: 가구,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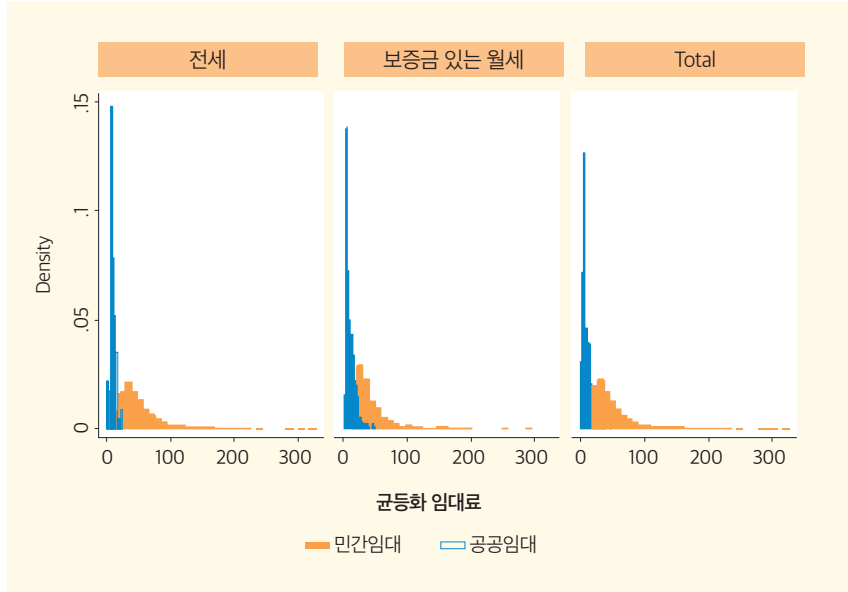
| 구분 | 관측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전체 | 7,343 | 35.83 | 28.59 | 0.38 | 327.17 |
| 민간임대 | 4,837 | 46.23 | 29.75 | 1.43 | 327.17 |
| 영구임대 | 954 | 10.89 | 6.93 | 0.38 | 49.25 |
| 국민임대 | 1,552 | 18.73 | 8.17 | 1.77 | 82.32 |
| 전세 | 3,577 | 47.06 | 30.84 | 0.38 | 327.17 |
| 민간임대 | 3,397 | 48.60 | 30.72 | 1.43 | 327.17 |
| 영구임대 | 85 | 9.42 | 4.36 | 0.38 | 24.73 |
| 국민임대 | 95 | 25.81 | 15.14 | 1.77 | 82.32 |
| 보증금 있는 월세 | 3,766 | 25.15 | 21.38 | 1.40 | 295.00 |
| 민간임대 | 1,440 | 40.65 | 26.52 | 2.91 | 295.00 |
| 영구임대 | 869 | 11.03 | 7.11 | 1.40 | 49.25 |
| 국민임대 | 1,457 | 18.27 | 7.27 | 4.04 | 79.40 |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특별시가 81만 9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그다음으로 경기도가 52만 9천원, 제주특별자치도가 49만 7천원 순으로 높다.

[그림 3]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균등화 임대료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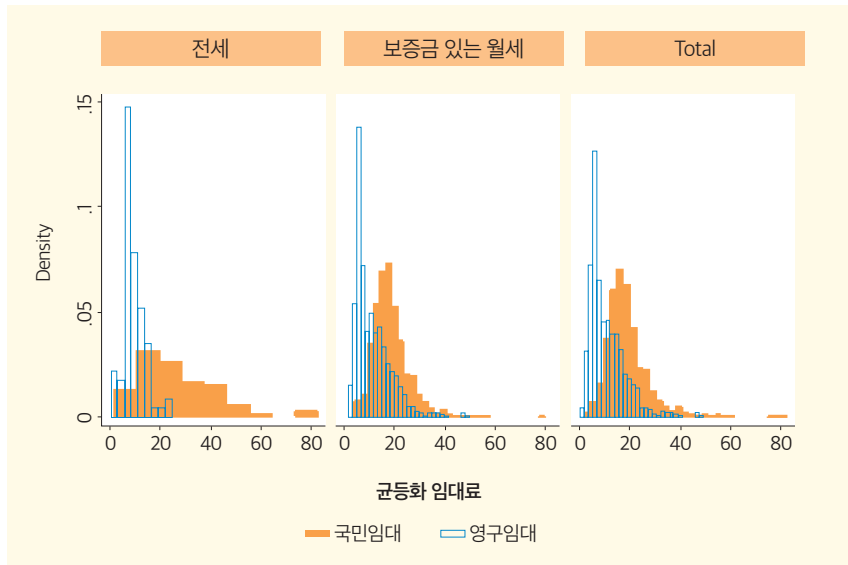
(단위: 만원)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균등화 임대료 분포 비교

(단위: 만원)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평균 월간 임대료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81만 9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서울특별시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52만 9천원, 제주특별자치도가 49만 7천원 순으로 높다. 반면 경상북도의 평균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28만 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충청북도와 전라남도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도 각각 29만 9천원과 30만 7천원으로 다른 시·도보다 낮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27만 7천원으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 전라남도가 26만 7천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충청남도과 충청북도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각각 14만 3천원과 15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임대료가 각각 18만 2천원과 18만 1천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의 임대료는 각각 5만 5천원과 5만 9천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다.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간 임대료 격차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국에서 서울특별시의 임대료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관찰된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와 비교해 서울특별시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각각 70만 9천원과 64만 4천원 낮다. 반면, 전라남도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보다 4만 1천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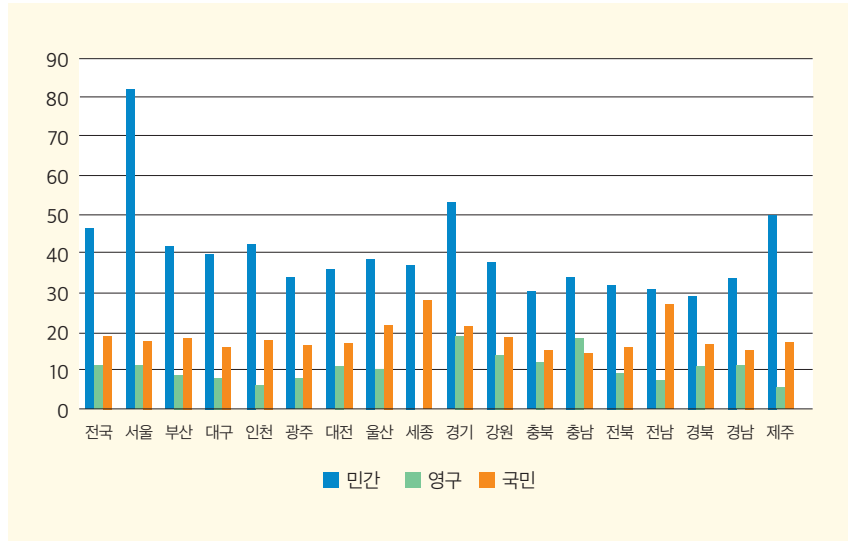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간 임대료 격차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은 임대료 편익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임대료 편익이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료의 지역별 차이에는 단순히 지역 특성으로 인한 차이도 존재하겠지만, 지역별로 임대주택의 면적이나 건축연한, 주거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27만 7천원으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26만 7천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간
임대료 격차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은
임대료 편익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 지역별 평균 균등화 임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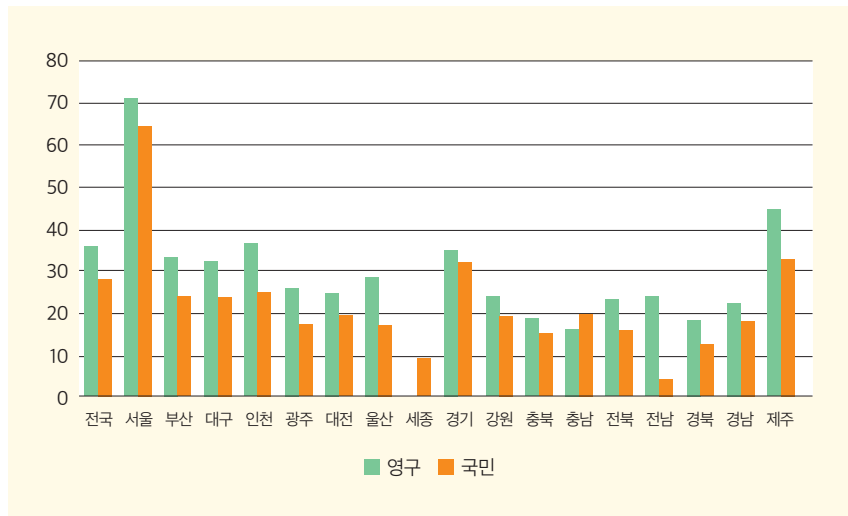
(단위: 만원)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음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지역별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균등화 임대료 격차

(단위: 만원)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음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1> 지역별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균등화 임대료

(단위: 만원)

| 구분 | 평균 임대료 | | | | 민간 대비 격차 | |
|---------|--------|--------|--------|--------|----------|----------|
| | 전체 | 민간 (A) | 영구 (B) | 국민 (C) | 영구 (A-B) | 국민 (A-C) |
| 전국 | 35.83 | 46.23 | 10.89 | 18.73 | 35.34 | 27.5 |
| 서울특별시 | 58.49 | 81.85 | 10.97 | 17.46 | 70.88 | 64.39 |
| 부산광역시 | 30.37 | 41.45 | 8.55 | 17.86 | 32.90 | 23.59 |
| 대구광역시 | 29.16 | 39.58 | 7.74 | 15.87 | 31.84 | 23.71 |
| 인천광역시 | 34.87 | 42.22 | 5.87 | 17.51 | 36.35 | 24.71 |
| 광주광역시 | 23.92 | 33.25 | 7.56 | 16.30 | 25.69 | 16.95 |
| 대전광역시 | 30.86 | 35.75 | 11.20 | 16.62 | 24.55 | 19.13 |
| 울산광역시 | 35.26 | 38.21 | 9.91 | 21.33 | 28.30 | 16.88 |
| 세종특별자치시 | 35.05 | 36.75 | - | 27.72 | - | 9.03 |
| 경기도 | 42.57 | 52.89 | 18.23 | 21.15 | 34.66 | 31.74 |
| 강원도 | 29.02 | 37.50 | 13.87 | 18.50 | 23.63 | 19.00 |
| 충청북도 | 23.79 | 29.88 | 11.64 | 14.96 | 18.24 | 14.92 |
| 충청남도 | 28.12 | 33.77 | 18.06 | 14.34 | 15.71 | 19.43 |
| 전라북도 | 24.21 | 31.64 | 8.86 | 15.96 | 22.78 | 15.68 |
| 전라남도 | 27.21 | 30.74 | 7.08 | 26.68 | 23.66 | 4.06 |
| 경상북도 | 22.78 | 28.77 | 10.66 | 16.41 | 18.11 | 12.36 |
| 경상남도 | 27.82 | 33.24 | 11.15 | 15.15 | 22.09 | 18.09 |
| 제주특별자치도 | 32.06 | 49.68 | 5.53 | 17.09 | 44.15 | 32.59 |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음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본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비율인 ‘임대조건’의 추정을 통해 측정된다.

IV.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

1. 분석 개요

본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비율인 ‘임대조건’의 추정을 통해 측정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j 의 임대료 편익은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 (2)에서 $Benefit_j$ 는 가구 j 의 임대료 편익이며, $BeneRatio_j$ 는 가구 j 의 임대조건이다. 그리고 $Rent_j$ 는 가구 j 가 부담하는 임대료로 식 (1)에 의해 산출된 값이다. 식 (2)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의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면적, 건축연한 등의 물리적 특성과 상업시설, 문화시설, 대중교통, 교육환경 등과 관련된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 등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인 $Benefit_j$ 의 추정은 결국 임대조건인 $BeneRatio_j$ 의 추정 문제로 귀결된다.

$$Benefit_j = \left(\frac{1 - BeneRatio_j}{BeneRatio_j} \right) \times Rent_j \quad \text{식 (2)}$$

임대조건은 임대료 결정 요인들이 반영된 회귀방정식 통해 추정된다. 본고는 임대료 결정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기 위해 유승동·김주영(2017),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의 방법을 준용하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해당 방법을 수정하여 활용한다. 이하에서는 임대료 결정 모형의 해석과 임대조건의 추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모형을 먼저 설명한 뒤, 실제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확장모형에 대해 논의한다.

2. 임대료 결정 단순모형과 추정 결과

주택의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면적, 건축연한 등의 물리적 특성과 상업 시설, 문화시설, 대중교통, 교육환경 등과 관련된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 등에 의해 결정된다.²⁾ 또한 임대주택의 세부 유형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발생한다. 식 (3)에서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더미변수를 도입하였다.

$$\log(Rent_j) = \beta X_j + \gamma_1 D_{1,j} + \gamma_2 D_{2,j} + \epsilon_j, \quad \epsilon_j \sim N(0, \sigma^2) \quad \text{식 (3)}$$

X_j : 임대주택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주택의 물리적 특성(면적, 건축연한 더미), 주거환경(상업시설, 문화시설, 대중교통, 교육환경), 지역 더미, 상수항으로 구성

$D_{1,j}$: 영구임대주택 더미(영구임대주택=1, 그 외=0)

$D_{2,j}$: 국민임대주택 더미(국민임대주택=1, 그 외=0)

ϵ_j : 잔차항

2)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는 임대료 결정 모형에 주택 유형도 고려하였으나, 본고는 주택 유형 중 아파트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 유형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본고는 유승동·김주영(2017)과 달리 임대료 결정 요인으로 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선행연구 중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 또한 본고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을 임대료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대료가 가구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택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임대료가 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수준의 가구가 해당 임대주택을 선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소득수준이 임대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임대료가 소득수준을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료 결정 요인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와 달리 임대료 결정 요인에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유형, 즉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는 임대료 결정 모형에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의 세부 유형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임대주택은 그 세부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르고, 시세 대비 임대료 비율인 임대조건도 다르다.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가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자료에 포함된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모두 명시적으로 고려하기에는 특정 유형의 임대주택의 관측치가 매우 작은 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 본고는 공공임대주택 중 표본에 관측치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두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임대료 결정 요인으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의 한계를 보완한다.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는 임대료 결정 요인으로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업시설, 문화시설, 대중교통, 교육환경에 대한 주거환경 만족도 변수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분석한다. 해당 변수들은 각각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1부터 4까지 4단계의 값으로 구성된 변수로, 1은 매우 불만족, 그리고 4는 매우 만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수는 응답자의 주관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각 단계 간 차이에 동일한 값을 부

본고는 임대료 결정 요인으로 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임대료가 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수준의 가구가 해당 임대주택을 선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만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세부 지역 간
임대료에 많은
차이가 있다.

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주택의 임대료는 본고에서 고려한 요인들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역만 보더라도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만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세부 지역 간 임대료에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분석 자료에 세부적인 지역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앞에서 고려한 변수들 이외에 의료시설, 녹지비율, 주차시설, 치안 등 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난방 및 단열, 채광, 방음상태 등 다양한 주택상태도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변수들은 임대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대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다.

임대료가 식 (3)을 통해 결정된다면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가구 j 의 임대료 비율인 임대조건 *BeneRatio* _{j} 는 식 (4)와 같이 결정된다. 식 (4)에서 $\hat{\gamma}_j$ 은 식 (3)의 공공임대주택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치로 가구 j 가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인 경우에는 $\hat{\gamma}_1$, 국민임대주택 거주 가구인 경우에는 $\hat{\gamma}_2$ 이다.

$$BeneRatio_j = \begin{cases} e^{\hat{\gamma}_1} & (D_{1,j} = 1) \\ e^{\hat{\gamma}_2} & (D_{2,j} = 1) \end{cases} \quad \text{식 (4)}$$

임대료 결정 단순모형을 추정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보다 낮으며,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 (4)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의 임대료가 식 (3)의 단순모형에 의해 결정된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면적, 주거환경, 지역, 건축연한 등 주택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더미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더미변수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수(-)로 추정되었다. 특히, <표 12>의 추정 결과는 평균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각각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의 약 33.4%³⁾와 51.5%⁴⁾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제Ⅱ장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시세의 30% 수준이라는 설명에 부합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해

3) $\exp(-1.098) = 0.334$

4) $\exp(-0.663) = 0.515$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더 높다는 점도 제Ⅱ장의 설명에 부합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이지만 식 (3)을 통한 분석 결과는 51.5%로 제도설계상의 임대조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임대료 결정 단순모형 추정 결과

| 구분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
|-------------------------|------------|-----------------------|---------|
| 상수 | 0.636*** | (0.073) | |
| 영구임대주택 더미 | -1.098*** | (0.018) | |
| 국민임대주택 더미 | -0.663*** | (0.015) | |
| ln(면적(m ²)) | 0.886*** | (0.015) | |
| 주거환경 만족도 | 상업시설 접근용이성 | 0.030*** | (0.009) |
| | 문화시설 접근용이성 | 0.042*** | (0.008) |
| |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 0.026*** | (0.009) |
| | 교육환경 | 0.056*** | (0.010) |
| 지역더미 (서울특별시 기준) | 부산광역시 | -0.600*** | (0.020) |
| | 대구광역시 | -0.633*** | (0.026) |
| | 인천광역시 | -0.482*** | (0.023) |
| | 광주광역시 | -0.645*** | (0.024) |
| | 대전광역시 | -0.594*** | (0.026) |
| | 울산광역시 | -0.587*** | (0.032) |
| | 세종특별자치시 | -0.756*** | (0.028) |
| | 경기도 | -0.273*** | (0.017) |
| | 강원도 | -0.544*** | (0.028) |
| | 충청북도 | -0.742*** | (0.026) |
| | 충청남도 | -0.644*** | (0.024) |
| | 전라북도 | -0.759*** | (0.028) |
| | 전라남도 | -0.715*** | (0.024) |
| | 경상북도 | -0.785*** | (0.026) |
| | 경상남도 | -0.726*** | (0.023) |
| | 제주특별자치도 | -0.508*** | (0.030) |
| 건축연한더미 (3년 미만 기준) | 3~5년 | 0.036* | (0.019) |
| | 6~10년 | -0.063*** | (0.018) |
| | 11~15년 | -0.146*** | (0.019) |
| | 16~20년 | -0.266*** | (0.019) |
| | 21~25년 | -0.296*** | (0.018) |
| | 26~30년 | -0.477*** | (0.020) |
| 30년 초과 | -0.412*** | (0.023) | |
| 관측치 | 7,343 | 결정계수(R ²) | 0.792 |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임대료 결정 단순모형을
추정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보다 낮으며,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여부
이외에도 임대료 결정
단순모형에서 고려한
주택의 면적, 주거환경,
지역, 건축연한 등의
요인 또한 임대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여부 이외에도 임대료 결정 단순모형에서 고려한 주택의 면적, 주거환경, 지역, 건축연한 등의 요인 또한 임대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주택 면적이 10% 증가할 때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8.86% 증가한다. 본 연구의 분석 표본에서 임대주택의 평균 면적은 61.6㎡이고 월평균 임대료는 57만 8천원인 사실에 비추어볼 때 평균적으로 주택 면적이 약 6㎡ 증가하면 월간 임대료는 약 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환경 만족도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상업시설, 문화시설, 대중교통, 교육환경 모두 임대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 중 교육환경에 대한 추정치가 다른 주거환경 만족도보다 더 큰 값으로 추정되어 주거환경 중 교육환경이 임대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임대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다음으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임대료가 높다. 한편, 경상북도,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임대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북도의 임대료는 서울특별시의 약 45.6%⁵⁾ 수준이다.

건축연한에 따른 임대료 차이를 살펴보면, 건축연한이 오래될수록 임대료는 대체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건축연한이 26~30년 경과된 아파트의 임대료는 건축연한이 2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 임대료의 약 62.1%⁶⁾ 수준이다. 다만, 건축연한이 3~5년 경과된 아파트의 임대료는 신축 아파트의 임대료보다 약 3.7%⁷⁾ 더 높아지고, 건축연한이 30년을 초과한 아파트의 임대료는 26~30년을 경과한 아파트의 임대료보다 높아지는 비선형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3. 임대료 결정 확장모형과 추정 결과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비율인 임대조건은 면적, 주거환경, 지역, 건축연한과 같은 임대주택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면적 증가에 따른 임대료 증가 속도가 민간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간에 다를 수 있다. 또한 주거환경, 지역, 건축연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또한 임대주택 세부 유형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단순모형에서는 이와 같은 임대주택의 다양한 특성이 임대조건에도 직접적으

5) $\exp(-0.785) = 0.456$
6) $\exp(-0.477) = 0.621$
7) $\exp(0.036) = 1.037$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는 임대조건 추정을 위한 임대료 결정 모형을 앞의 식 (3)에서 다음의 식 (5)로 확장하여 분석한다. 식 (3)과 비교해 식 (5)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더미변수와 주택의 특성을 나타내는 면적, 주거환경, 지역, 건축연한과의 교차항이 추가되었다. 임대료 결정 모형을 식 (5)와 같이 확장한다면, 식 (6)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주택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다.

$$\log(Rent_j) = \beta X_j + \gamma_1(X_j \times D_{1,j}) + \gamma_2(X_j \times D_{2,j}) + \epsilon_j, \quad \epsilon_j \sim N(0, \sigma^2) \quad \text{식 (5)}$$

$$BeneRatio_j = \begin{cases} e^{\hat{\gamma}_1 X_j} & (D_{1,j} = 1) \\ e^{\hat{\gamma}_2 X_j} & (D_{2,j} = 1) \end{cases} \quad \text{식 (6)}$$

임대료 결정 요인을 식 (5)와 같이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에서 단독항에 해당되는 열은 식 (5)의 β , 영구임대주택 더미와의 교차항 열은 γ_2 ,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더미와의 교차항 열은 γ_1 에 대한 추정치이다.

임대료 결정 확장모형을 추정한 결과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여부뿐만 아니라 주택의 특성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더미변수와와의 교차항 열에 해당되는 추정치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추정치들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령,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더미변수가 각각 -0.775와 -2.971로 추정되었는데, 이를 단순히 영구임대주택보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더 낮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주택 면적이나 주거환경, 지역, 건축연한 또한 임대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앞의 해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더미변수와 면적에 대한 교차항의 추정치를 보면 주택 면적 1% 증가 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

**임대료 결정 확장모형을
추정한 결과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여부뿐만 아니라
주택의 특성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추정치만을 토대로
두 가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 0.548%p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파트의 건축연한이 오래될수록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영구임대주택보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앞의 해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추정치만을 토대로 두 가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더미변수와 공공임대주택의 교차항에 대한 추정치는 모두 양수(+)이다. 이는 지역더미변수의 추정치가 모두 음수(-)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더미의 추정치가 음수(-)인 것은 서울특별시의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역더미변수와 공공임대주택 더미변수의 교차항이 양수(+)로 추정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다른 시·도 간의 임대료 격차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와 비교해 감소하거나 오히려 서울특별시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시·도도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 임대료 결정 확장모형 추정 결과

| 구분 | 단독항 | | 영구임대주택 더미와의 교차항 | | 국민임대주택 더미와의 교차항 | | |
|---------------------------|----------|-----------|--------------------|-----------|--------------------|----------|---------|
|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
| 상수 | 1.436*** | (0.077) | -0.775*** | (0.300) | -2.971*** | (0.180) | |
| ln(면적(m ²)) | 0.723*** | (0.016) | 0.097 | (0.062) | 0.548*** | (0.045) | |
| 주거환경 만족도 | 상업시설 | 0.030*** | (0.011) | -0.060** | (0.027) | -0.036* | (0.021) |
| | 문화시설 | 0.053*** | (0.009) | 0.006 | (0.022) | -0.040** | (0.019) |
| | 대중교통 | 0.049*** | (0.010) | -0.093*** | (0.027) | -0.047** | (0.020) |
| | 교육환경 | 0.050*** | (0.011) | -0.039 | (0.032) | 0.029 | (0.024) |
| 지역더미 (서울 특별시 기준) | 부산광역시 | -0.787*** | (0.023) | 0.540*** | (0.053) | 0.611*** | (0.052) |
| | 대구광역시 | -0.858*** | (0.029) | 0.711*** | (0.059) | 0.703*** | (0.074) |
| | 인천광역시 | -0.633*** | (0.025) | 0.383*** | (0.075) | 0.559*** | (0.060) |
| | 광주광역시 | -0.870*** | (0.029) | 0.695*** | (0.061) | 0.701*** | (0.060) |
| | 대전광역시 | -0.837*** | (0.027) | 0.860*** | (0.066) | 0.878*** | (0.211) |
| | 울산광역시 | -0.799*** | (0.032) | 0.802*** | (0.112) | 0.742*** | (0.120) |
| | 세종특별자치시 | -0.999*** | (0.029) | - | - | 0.911*** | (0.080) |

<표 13>의 계속

| 구분 | | 단독항 | | 영구임대주택 더미와의 교차항 | | 국민임대주택 더미와의 교차항 | |
|-----------------------------|---------|-----------|---------|--------------------|---------|--------------------|---------|
| |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 지역더미 (서울 특별시 기준) | 경기도 | -0.435*** | (0.018) | 0.436*** | (0.055) | 0.432*** | (0.045) |
| | 강원도 | -0.819*** | (0.033) | 0.826*** | (0.077) | 0.638*** | (0.069) |
| | 충청북도 | -1.028*** | (0.029) | 0.711*** | (0.065) | 0.681*** | (0.067) |
| | 충청남도 | -0.884*** | (0.026) | 0.909*** | (0.085) | 0.515*** | (0.059) |
| | 전라북도 | -1.048*** | (0.033) | 0.648*** | (0.079) | 0.810*** | (0.064) |
| | 전라남도 | -1.070*** | (0.028) | 0.806*** | (0.073) | 0.934*** | (0.058) |
| | 경상북도 | -1.086*** | (0.031) | 1.239*** | (0.095) | 0.789*** | (0.058) |
| | 경상남도 | -0.958*** | (0.025) | 0.692*** | (0.060) | 0.651*** | (0.073) |
| | 제주특별자치도 | -0.662*** | (0.039) | 0.444*** | (0.125) | 0.454*** | (0.064) |
| 건축연한 더미 (3년 미만 기준) | 3~5년 | -0.015 | (0.021) | -0.339*** | (0.119) | -0.055 | (0.051) |
| | 6~10년 | -0.086*** | (0.022) | -0.487*** | (0.100) | -0.160*** | (0.046) |
| | 11~15년 | -0.154*** | (0.021) | -0.493*** | (0.107) | -0.172*** | (0.050) |
| | 16~20년 | -0.255*** | (0.019) | -0.609*** | (0.106) | -0.094 | (0.057) |
| | 21~25년 | -0.270*** | (0.019) | -0.937*** | (0.107) | -0.156** | (0.068) |
| | 26~30년 | -0.435*** | (0.021) | -0.900*** | (0.108) | -0.190* | (0.112) |
| | 30년 초과 | -0.491*** | (0.022) | -0.632*** | (0.143) | 0.677*** | (0.211) |
| 관측치 | | 7,343 | | 결정계수(R^2) | | 0.831 | |

주: 1. 세종특별자치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14>는 공공임대주택 가구별로 식 (6)을 통해 추정된 임대조건 전체 및 지역별 평균을 보여준다. 임대료 결정 확장모형을 토대로 추정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약 44.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31.4%,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51.9%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 (3)의 단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유사하다. 단순모형을 이용할 경우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33.5%,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51.5%로 추정되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대비 20.8%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임대조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세 대비 18.2%로 매우 낮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가 다른 시·도

**임대료 결정
확장모형을 토대로
추정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약 44.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대비 20.8%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임대조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78.1% 수준으로, 임대조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지역별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

(단위: 가구, %)

| 지역 | 공공임대주택 전체 | | 영구임대주택 | | 국민임대주택 | | 차이 (B-A) |
|---------|-----------|-------|--------|-------|--------|-------|-------------|
| | 관측치 | 평균 | 관측치 | 평균(A) | 관측치 | 평균(B) | |
| 전체 | 2,506 | 44.10 | 954 | 31.40 | 1,552 | 51.91 | 20.51 |
| 서울특별시 | 382 | 20.83 | 258 | 18.19 | 124 | 26.33 | 8.15 |
| 부산광역시 | 261 | 43.62 | 87 | 26.75 | 174 | 52.06 | 25.32 |
| 대구광역시 | 109 | 40.09 | 69 | 32.02 | 40 | 54.00 | 21.98 |
| 인천광역시 | 108 | 37.38 | 31 | 21.30 | 77 | 43.86 | 22.55 |
| 광주광역시 | 163 | 45.12 | 67 | 29.88 | 96 | 55.75 | 25.87 |
| 대전광역시 | 59 | 39.48 | 56 | 38.55 | 3 | 56.77 | 18.22 |
| 울산광역시 | 23 | 48.57 | 12 | 34.35 | 11 | 64.09 | 29.74 |
| 세종특별자치시 | 50 | 78.11 | 0 | - | 50 | 78.11 | - |
| 경기도 | 416 | 41.86 | 88 | 36.39 | 328 | 43.33 | 6.95 |
| 강원도 | 98 | 49.61 | 39 | 44.77 | 59 | 52.81 | 8.05 |
| 충청북도 | 113 | 49.77 | 57 | 43.80 | 56 | 55.85 | 12.05 |
| 충청남도 | 119 | 49.76 | 30 | 58.86 | 89 | 46.69 | -12.17 |
| 전라북도 | 103 | 54.76 | 30 | 37.17 | 73 | 61.98 | 24.82 |
| 전라남도 | 150 | 71.38 | 38 | 34.36 | 112 | 83.94 | 49.58 |
| 경상북도 | 138 | 59.27 | 20 | 50.72 | 118 | 60.72 | 9.99 |
| 경상남도 | 104 | 47.17 | 62 | 42.23 | 42 | 54.47 | 12.24 |
| 제주특별자치도 | 110 | 43.62 | 10 | 22.50 | 100 | 45.74 | 23.23 |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음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15>는 공공임대주택 개별 가구의 임대료 편익을 전체 및 지역별로 평균하여 보여준다. 임대료 편익은 가구별로 식 (6)을 통해 추정된 임대조건을 식 (2)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평균 임대료 편익은 29만 7천원으로 추정되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 편익은 약 33만 5천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 편익인 약 27만 3천원보다 약 6만 2천원 높다.

임대료 편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임대료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임대료 편익은 월간 약 64만 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특별시의 임대료 편익은 그다음으로 높은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 편익인 약 40만 1천원보다도 약 24만 5천원 높아 서울특별시와 그 외 지역 간의 임대료 편익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국민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임대료 편익은 69만 1천원이다. 한편, 전라남도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은 약 7만 9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임대료 편익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의 12.3%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또한 8만 6천원으로 전라남도 다음으로 낮다. 이처럼 임대료 편익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임대료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지역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

(단위: 가구, 만원)

| 지역 | 공공임대주택 전체 | | 영구임대주택 | | 국민임대주택 | | 차이 (B-A) |
|---------|-----------|-------|--------|-------|--------|-------|----------|
| | 관측치 | 평균 | 관측치 | 평균(A) | 관측치 | 평균(B) | |
| 전체 | 2,506 | 29.70 | 954 | 33.54 | 1,552 | 27.33 | 6.20 |
| 서울특별시 | 382 | 64.57 | 258 | 62.40 | 124 | 69.10 | -6.70 |
| 부산광역시 | 261 | 22.93 | 87 | 24.53 | 174 | 22.12 | 2.41 |
| 대구광역시 | 109 | 17.70 | 69 | 17.31 | 40 | 18.37 | -1.06 |
| 인천광역시 | 108 | 29.33 | 31 | 26.52 | 77 | 30.47 | -3.95 |
| 광주광역시 | 163 | 19.05 | 67 | 19.65 | 96 | 18.62 | 1.03 |
| 대전광역시 | 59 | 21.15 | 56 | 21.18 | 3 | 20.69 | 0.49 |
| 울산광역시 | 23 | 18.52 | 12 | 21.69 | 11 | 15.05 | 6.65 |
| 세종특별자치시 | 50 | 8.60 | 0 | - | 50 | 8.60 | - |
| 경기도 | 416 | 40.06 | 88 | 42.22 | 328 | 39.48 | 2.75 |
| 강원도 | 98 | 22.38 | 39 | 23.41 | 59 | 21.69 | 1.72 |
| 충청북도 | 113 | 17.41 | 57 | 18.02 | 56 | 16.80 | 1.22 |
| 충청남도 | 119 | 22.39 | 30 | 18.28 | 89 | 23.78 | -5.50 |
| 전라북도 | 103 | 14.23 | 30 | 17.14 | 73 | 13.03 | 4.11 |
| 전라남도 | 150 | 7.94 | 38 | 13.96 | 112 | 5.89 | 8.06 |
| 경상북도 | 138 | 14.37 | 20 | 15.10 | 118 | 14.25 | 0.85 |
| 경상남도 | 104 | 18.52 | 62 | 19.44 | 42 | 17.15 | 2.28 |
| 제주특별자치도 | 110 | 30.96 | 10 | 22.39 | 100 | 31.81 | -9.42 |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음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임대료 편익이 높은
이유는 이 지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임대료 편익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임대료 편익이 높은 이유는 이 지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임대료 편익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지역별 편차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지역별 편차보다 작다. 따라서 지역별 임대료 편익의 차이는 지역별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공급되어야 효과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데, 공공부문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낮고 안정적인 임대료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한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임대료가 높고 불안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이 시장을 통해서만 공급된다면 해당 지역 임대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성은 심하게 위협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임대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임대료가 낮고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 공급한다면 서민의 주거안정성과 편익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임대료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임대료 편익은 소득 1분위의 약 1만 9천원에서 소득 10분위의 3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낮아진다. 월평균 임대료 편익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소득 1분위의 약 3.3%에서 소득 10분위의 0.01%로 소득수준과 함께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이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선정 시 소득요건을 고려해 저소득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각 소득분위의 평균 임대료 편익은 해당 분위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중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조건부 임대료 편익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이 높은 이유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소득 1분위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중은 7.4%로 높은 수준이지만, 소득 10분위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중은 약 0.2%로 매우 낮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조건부 임대료 편익은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

(단위: 만원, %)

| 소득 분위 | 월평균 경상소득 (A) | 월평균 임대료 편익 (B) | 비중 (B/A)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중 | |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 편익 | | |
|----------|--------------------|----------------------|-------------|--------------------|------|------|-------------------------|------|------|
| | | | | 합계 | 영구 | 국민 | 합계 | 영구 | 국민 |
| 전체 | 209.44 | 0.68 | 0.33 | 2.75 | 0.96 | 1.79 | 24.8 | 29.3 | 22.4 |
| 1분위 | 57.60 | 1.93 | 3.34 | 7.43 | 4.30 | 3.14 | 25.9 | 29.2 | 21.4 |
| 2분위 | 107.05 | 1.55 | 1.45 | 6.21 | 2.15 | 4.05 | 25.0 | 29.5 | 22.6 |
| 3분위 | 142.73 | 1.06 | 0.74 | 4.16 | 1.21 | 2.95 | 25.4 | 28.3 | 24.2 |
| 4분위 | 167.65 | 0.55 | 0.33 | 2.69 | 0.49 | 2.20 | 20.3 | 27.0 | 18.8 |
| 5분위 | 191.36 | 0.54 | 0.28 | 1.98 | 0.38 | 1.60 | 27.2 | 37.3 | 24.8 |
| 6분위 | 207.75 | 0.49 | 0.24 | 2.05 | 0.26 | 1.79 | 23.9 | 22.8 | 24.1 |
| 7분위 | 231.21 | 0.25 | 0.11 | 1.10 | 0.23 | 0.87 | 22.4 | 28.2 | 20.9 |
| 8분위 | 260.92 | 0.21 | 0.08 | 0.87 | 0.15 | 0.72 | 24.4 | 30.2 | 23.1 |
| 9분위 | 307.40 | 0.11 | 0.04 | 0.47 | 0.08 | 0.39 | 22.9 | 23.4 | 22.8 |
| 10분위 | 442.93 | 0.03 | 0.01 | 0.16 | 0.09 | 0.07 | 21.7 | 33.2 | 5.1 |

주: 이 표는 <표 15>의 전체 평균 임대료 편익과 차이가 있는데, 이 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반면, <표 15>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임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임대료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선정 시 소득요건을 고려해 저소득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본고는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의 약 44.1%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의 해당 비율은 31.4%로 국민임대주택의 약 51.9%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월간 균등화 임대료 편익으로 환산하면 분석 대상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의 전체적인 임대료 편익은 약 29만 7천원이며,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의 편익은 약 33만 5천원, 국민임대주택의 편익은 약 27만 3천원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생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임대료 편익이 가장 높으며,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임대료 편익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이는 이러한 지역의 임대시장에서 형성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공급할 때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료 편익을 소득계층별로도 살펴보았는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임대료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즉,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인상, 양도소득세 증과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책의 주된 목적은 우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일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주거생활을 시장에만 맡겨 놓는다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생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2019. 3.

_____, 『2019년 주택업무편람』, 2019. 2.

오종현·김우현·권성오,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2.

유승동·김주영, 「공공임대 주택의 편익: 임대료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2017. 8, pp. 205~223.

<통계자료 및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시자료(통계청 MDIS), 2019.

한국감정원, 「규모별 전월세전환율」, <https://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 최종접속일: 2020. 1. 20.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LH/index.html#GUD::CLCC_GUD_0040:1020301, 최종접속일: 2020. 4. 1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수당 세금 공제 조치 발표]

■ 2020년 3월 18일 미국 의회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발표함¹⁾

- 본 법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용한 유급 휴가에 지불한 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 조치가 포함됨
 - 동 법에서 5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혹은 현 상황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피고용인이 사용한 유급 휴가에 수당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이 사용한 병가 및 가족휴가에 고용주가 지불한 수당을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세(이하 FICA세)²⁾의 고용주 부담분에서 공제함

- 최대 공제기간은 총 10일이며 본인이 확진자로

병가 사용 시 1일당 511달러,³⁾ 가족 돌봄의 경우 1일당 200달러⁴⁾ 한도임

- 공제액이 FICA 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가능함
- FICA세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는 자영업자 대상의 자영업세에도 해당 법안이 동일하게 적용됨

■ 본 법안에 근거하여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수당을 지급받은 피고용인의 경우 소득세 산정 시 총소득에서 제외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연구원>

[미국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 2020년 3월 17일 미국 재무부 및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 대해 90일간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발표함⁵⁾

■ 2020년 4월 15일부터 90일간 개인 및 비법인(non-corporate)은 최대 100만달러,⁶⁾ 법인은 1천만달러⁷⁾까지 납부 연기에 따른 이자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1)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201>, 검색일자: 2020. 3. 26.

2) FICA는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각각 7.85%(사회보장세 6.2%+의료보장세 1.45%)씩 부과되고 있음(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taxtopics/tc751>, 검색일자: 2020. 3. 26.)

3)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2만 6천원임

4)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4만 5천원임

5) 미국 재무부, Treasury and IRS Issue Guidance on Deferring Tax Payments Due to COVID-19 Outbreak(2020. 3. 18.),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948>, 검색일자: 2020. 3. 19.

6)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2억 2,500만원임

7)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22만 5천원임

- 소득 신고기한은 기존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 2020년 4월 15일에서 변동되지 않음
 - 이는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납세자를 고려한 조치로, 세금 환급 대상자는 2020년 4월 15일 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환급이 가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캐나다 - 코로나19 관련 납세 유연화 조치 발표]

■ 2020년 3월 18일 캐나다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조치를 발표함⁸⁾

- 본 조치는 납세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조세 관련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캐나다 국세청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함

- 소득세 신고기한을 기존 2020년 4월 30일에서 개인의 경우 2020년 6월 1일로 연장함
 - 부가가치세 공제(GSTC) 혹은 자녀양육수당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의 경우 기존 기한 내에 제출을 권장함
- 또한 대책 발표일인 2020년 3월 18일부터 9월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를 2020년 8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분할납부 이외의 납부의무가 부여된 모든 세액에 적용되며, 연장에 따른 이자 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납세자와 과세 담당자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의 서명 요건으로 전자서명을 일시적으로 인정함

- 기존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던 세금신고서 양식인 T183 또는 T183CORP에 전자서명이 인정됨
- 개인이 세금 및 수당 등의 신고서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할 경우, 2018년 도입된 캐나다의 전자세금신고 서비스인 File My Return⁹⁾ 서비스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코로나19 발생기간 동안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지원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기존 방문 및 대면으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화 및 화상회의 형태로도 제공함

- 개인이 납세액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공제 등 각종 혜택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 중소기업의 경우 연락 담당자(Liaison Officer)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가 납부세액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기존

8) 캐나다 정부, 'Canada's 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 (2020. 3. 18.),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business>, 검색일자: 2020. 3. 19.

9) 캐나다 정부, Were you invited to use File my Return? You may be eligible to do your taxes over the phon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18/file-my-return-over-phone.html>, 검색일자: 2020. 3. 19.



대면서비스에 전화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됨
- 또한, 납부 마감일과 예방적 구제조치와 같은
현 시기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대부분의 사업체에 대해 납세자와의 세무조사 관
련 소통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 2020년 3월 18일부터 향후 4주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사후 평가 및 세무조사와
관련한 행위를 중단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아일랜드 - 코로나19 관련 국세청 긴급 조치 발표]

■ 2020년 3월 13일 아일랜드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금유동성 및 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정 관련 긴급 조치
를 발표함¹⁰⁾

- 아일랜드의 조세 목적상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300만유로¹¹⁾ 미만인 기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

■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체납 이자를 면제하고 일
부 조세 관련 집행 및 검토 활동을 중단함

- 2020년 1~2월의 부가가치세 및 2~3월의 고용주
원천징수세에 대한 체납 이자를 면제함
-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조세 관련 모든
채무 집행 활동을 중단함
- 2020년 3월 예정이었던 하청업체에 대한
RCT(Relevant Contract Tax) 요율 검토를 중단함
- RCT는 건설, 임업 및 육류 가공 산업에서 원
수급인이 하청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에 적용
되는 원천세임¹²⁾

■ 주요 제약 및 의약품의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
기 위해 관련 품목에 세관에서 'Green' 라우팅 등
급을 부여함

- AEP(Automated Entry Processing)에 세관신
고서 제출 후 Green 등급을 받게 되면, 관련 증
빙 문서 및 물품에 대한 검사를 생략함¹³⁾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그리스 -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한 긴급 조치 발표]

■ 2020년 3월 11일과 3월 20일, 그리스 정부는 코로
나19의 납세자 영향 완화를 위한 입법과 함께 긴
급 조치를 발표함¹⁴⁾

10) Irelan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to assist SMEs experiencing cash flow difficulties (18 Mar. 2020), News IBFD

11)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0억 7천만원임

12)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self-assessment-and-self-employment/rct/index.aspx>, 검색일자: 2020. 3. 19.

13) Tax and Duty Manual(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customs/import-export-policy/customs-import-procedures-section-01-03.pdf>, 검색일자: 2020. 3. 25.

14) KPMG 홈페이지, <https://home.kpmg/gr/en/home/insights/2020/03/gr-tax-update-related-to-covid-19.html>, 검색일자: 2020. 3. 26.

-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제품군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함
 - 마스크 및 장갑, 소독제 및 소독제 원료(에탄올 등), 개인 위생을 위한 비누 및 유사 건강 관리 제품 등에 대해 기존 24%였던 부가가치세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6%로 인하함

- 현재 계류 중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심사 건 중, 환급 청구 총액이 3만유로¹⁵⁾ 이하인 경우 즉시 환급이 이루어짐
 - 이때 환급 심사 계류 건이란 예비 세금평가서 발행 전의 건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8월 31일로 연장됨
 - 산출 예정 세액뿐만 아니라, 이미 산출되어 세무서 및 세무조사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 및 할부액까지 모두 납부기한이 연장됨
 - 이 조치는 기존 직원 수를 유지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함

- 2020년 예정이었던 부동산 관련 목적세인 UREOT(Unified Real Estate Ownership Tax)의 개정을 연기함¹⁶⁾
 - 2020년의 UREOT 세액은 이전 세율에 기초하

여 산출되며, 개정을 통해 결정될 새로운 세율은 2021년부터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벨기에 - 코로나19 관련 세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발표]

- 2020년 3월 12일 벨기에 재무부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납세기한 연장과 관련한 조치들을 발표함^{17), 18)}

-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납부일을 다음과 같이 연기함
 - 2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은 3월 20일에서 4월 6일로, 3월 및 1사분기 신고의 마감일은 4월 20일에서 5월 7일로 연장됨
 -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245유로¹⁹⁾ 이상인 과세 대상자는 4월 3일까지 조기 전자신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4월 30일 이전에 환급이 이루어짐
 - 납부 마감일은 2월 부가가치세는 3월 20일에서 5월 20일로, 3월 및 1사분기 납부 마감일은 4월 20일에서 6월 20일로 연장됨
 - 이자나 과태료 없이 2개월의 납부 자동 연기가 적용됨

15)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070만원임

16) KPMG 홈페이지, <https://home.kpmg/gr/en/home/insights/2020/03/gr-tax-update-related-to-covid-19.html>, 검색일자: 2020. 4. 2.

17) Belgiu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VAT measures taken (19 Mar. 2020), News IBFD

18) Belgiu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further corporate income tax, personal income tax, wage tax and VAT measures taken (30 Mar. 2020), News IBFD

19) 2020. 4.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2만 9천원임



■ 법인세 및 비법적 실체와 비거주자 법인에 대한 세금의 신고 및 납부일이 연장됨

- 신고일은 3월 16일에서 4월 20일로 변경됨
- 3월 12일 이후 발생하는 조세채무의 납부일은 2개월씩 연장됨

■ 원천징수세 납부일은 2월분 3월 13일, 3월과 1사분기분은 6월 15일로 연장됨

■ 본 조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전 신청이 필요함²⁰⁾

- 세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체납 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나, 미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프랑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 프랑스 재무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자영업자 및 법인 납세자의 세금 납부 관련 조정 조치를 발표함^{21), 22)}

-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와 급여세(taxe sur les salaires)²³⁾ 납부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 가산세 부과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3월분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SEPA 계좌이체 시스템(SEPA Direct Debit Scheme)을 통하여 실제 출금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완납처리로 확인된다면 별도로 담당 부서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산출소득액²⁴⁾의 자율적 조정 및 유예를 허용함

- 적용세율 및 산출소득액 조정에 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번호로 접속하여 개별 조정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 경우, 월별 징수는 최대 3회, 분기별 징수는 다음 분기까지 유예 가능함

● 월별 납부를 신청한 법인 분담 재산세(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또는 토지세(taxe foncière)²⁵⁾의 경우, 프랑스 국세청 등에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미납세액은 별도의 납부행위 없이 추후 계좌내 보유 잔액을 한도로 인출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 17일 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발표하였으며, 조세 관련 부분은 아

20) Belgium - COVID-19-related taxation measures announced (16 Mar. 2020), News IBFD

21) 재정일반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재무부, 보도자료, 2020. 3. 13.

프랑스 재무부, Les réseaux des Urssaf et des services des impôts des entreprises prennent des mesures exceptionnelles pour accompagner les entreprises, 2020. 3. 13., <https://www.economie.gouv.fr/mesures-exceptionnelles-urssaf-et-services-impots-entreprises#>, 검색일자: 2020. 3. 19.

22)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기한 조정에 관하여는 위 '가. 재정' 참조

2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의 기업은 피고용자에 지불하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급여세를 납부

24) 자영업자의 경우 그 소득의 불규칙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소득에 근거하여 소득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

25) 한국의 재산세 개념

래와 같음²⁶⁾

- 가장 취약한 상태의 기업은 신청에 따른 개별 평가를 통하여 직접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일차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최후 수단으로 국세청 사이트의 별도 링크²⁷⁾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적용 범위는 법인세로 한정되며, 감면금액 또한 신청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임²⁸⁾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독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납세자 지원 조치를 발표함²⁹⁾

-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손실 보상제도(Kurzarbeitsentgelt³⁰⁾)의 적용 범위를 코로나19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 신청 가능 최소 단축 근무 발생 기준을 기존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근로시간 감축분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은 독일 연방노동청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 납부기한 연장,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의 조세 관련 조치를 통하여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함
 - 과세관청은, 징수절차 개시로 인하여 납세의 무자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의 금년도 소득이 직전 연도보다 낮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즉시 예납세액을 감면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징수절차를 유예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 영업세 납세의무자는, 금년도 소득이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통하여 연말까지 영업세 예납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³¹⁾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26) 프랑스 재무부, Coronavirus COVID-19 : chefs d'entreprise, le ministère de l'Economie est à vos côtés, 2020. 3. 17., <https://www.economie.gouv.fr/coronavirus-soutien-entreprises>, 검색일자: 2020. 3. 19.; <https://www.economie.gouv.fr/files/files/PDF/2020/Coronavirus-MINEFI-10032020.pdf>, 검색일자: 2020. 3. 19.

27) <https://www.impots.gouv.fr/portail/node/13465>

28) KPMG, France: Tax relief available for businesses affected by coronavirus (COVID-19), 2020. 3. 13.,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3/tnf-france-tax-relief-available-for-businesses-affected-by-coronavirus.html>, 검색일자: 2020. 3. 19.

29) News IBFD, German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2020. 3.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de_20200317_0821, 검색일자: 2020. 3. 19.

30)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로 기업 내 일상적인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근로 감축 시 고용인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일연방노동청의 지원하에 원칙적으로 12개월, 최대 24개월에 한해 상실된 고용인원의 순임금의 60% 또는 67%(최소 자녀 1명인 경우)를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608>, 검색일자: 2020. 3. 30.

31) News IBFD, German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implementation guidance issued, 2020. 3.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de_20200320_1010, 검색일자: 2020. 3. 30.



[네덜란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0년 3월 12일 네덜란드 하원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함³²⁾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 서면 신청이 원칙이며, 기한 연장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함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징수를 유예하여야 함
- 코로나 피해 기업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과세 표준 재결정을 위한 임시 재평가(provisional assessments)를 실시함

■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3월 17일 납세자를 위한 코로나19 타격 경감 목적 조세 조치를 발표함³³⁾

- 위 발표는 앞선 2020년 3월 12일자 정부 조치에 더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유예의 필요성에 관한 별도의 입증서류 제출 없이도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하여 예납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다음 회차에 대한 감면 여부는 당해 기업의 예상 전망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위 조치들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이탈리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세 조치를 발표함³⁴⁾

- 위 긴급 조세 조치는 2020년 3월 2일 마련된 시행령의 추가 개정안으로, 2020년 3월 17일 시행령으로 입법되었음
- 납부의무 및 기타 이행의무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함³⁵⁾
 - 2020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지역사회의 거주자들(2020년 2월 21 기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함
 - 관광, 스포츠,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적격 이탈리아 법인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2020년 3월 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2020년 4월

32) News IBFD, Netherlands - Corona-related taxation measures announced, 2020. 3.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nl_20200313_1142, 검색일자: 2020. 3. 19.

33) News IBFD, Netherlands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2020. 3.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3-20_nl_1, 검색일자: 2020. 3. 30.

34)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Law Decree approved, 2020. 3.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it_20200317_1346, 검색일자: 2020. 3. 19.);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Law Decree published, 2020. 3.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it_20200320_1359, 검색일자: 2020. 3. 30.

35) News IBFD, Italy - Suspension of deadlines for tax payments and obligations - Ministerial Decree published, 2020. 2.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2-28_it_1, 검색일자: 2020. 3. 19.

30일까지 사회보장기여금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유예함

- 유예된 금액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일시납 또는 2020년 5월부터 5회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되어야 함

- 국세청의 청산, 평가, 징수, 불복 등 행정행위의 기한이 2020년 3월 8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 사이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을 진행하지 아니함

● 조세 특례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기부금에 대하여, 3만유로³⁶⁾를 한도로 30%의 소득공제/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격 기부금의 소득공제 비율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직전 연도 대비 2020 사업연도 언론매체 광고비용이 최소 1%라도 증가한 법인의 경우, 해당 광고 투자비용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근로사업장의 안전/보안 개선 관련 비용(방역 비용 등), 상업용 부동산 임대비용 관련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도입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영국 - 2020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 영국 재무부 장관은 2020년 3월 11일 2020년도

예산안(Budget 2020)을 의회에 제출함³⁷⁾

- 정부는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조세 환경을 유지하여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업가 세액 경감제도의 평생 한도 인하, R&D 지출 세액 공제율 인상, 비주거용 건물 및 구축물 소득 공제 비율 인상, 레드 디젤 세액 경감 제도의 적용 대상이 일부 제외됨

- 기업가 세액 경감 제도(Entrepreneur's Relief)의 평생 한도는 2020년 3월 11일부터 1천만파운드³⁸⁾에서 100만파운드³⁹⁾로 감소됨
 - 개인 기업가가 보유한 소정의 사업체 전부 또는 일부 매각으로부터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하여 10%의 경감된 세율로 과세함⁴⁰⁾
- R&D 지출 세액 공제율은 2020년 4월 1일부터 12%에서 13%로 인상됨
 - 정부는 세액 공제 대상에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 포함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비주거용 건물 및 구축물 소득 공제(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 비율은 2020년 4월 1일부터 2%에서 3%로 인상됨
- 레드 디젤 세액 경감 제도(Red Diesel Relief)는 철도, 가정 난방, 농업 이외의 영역에서는 2022년

36)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061만원임

37)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budget-2020-tax-related-documents>, 검색일자: 2020. 3. 18. United Kingdom - Budget 2020 - presented (11 March 2020), News IBFD

38)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49억 7,490만원임

39)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4억 9,749만원임

4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2호, 2018



4월부터 폐지될 것임

- 현재 건축업과 같이 도로 외에서 디젤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디젤 소비보다 경감된 세율로 과세되고 있음

■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고용 세액 공제액 인상, 청소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아동신탁기금 가입 한도 인상 및 여성 위생용품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고용 세액 공제(Employment Allowance)는 2020년 4월부터 3천파운드⁴¹⁾에서 4천파운드⁴²⁾로 인상됨
- 청소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아동신탁기금 가입 한도는 4,368파운드⁴³⁾에서 9천파운드⁴⁴⁾로 인상됨
- 여성 위생용품 및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이 영국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은 2019년 12월 24일 디지털 출판물이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함⁴⁵⁾

■ 간접세 관련하여 영국 비거주자의 인지 및 토지세 추가 부과, 국민보험분담금 납부 최저 소득 기준 인상, 플라스틱세가 도입됨

- 영국 비거주자가 영국과 북아일랜드 내의 주거용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인지 및 토지세(Stamp Duty Land Tax)는 2021년 4월 1일부터 2%의 세율이 추가 부과됨
-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국민보험분담금(NCIs)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 소득 기준을 2020년 4월부터 9,500파운드⁴⁶⁾로 인상함
- 재활용 플라스틱을 30%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의 생산 및 수입에 대하여 2022년 4월부터 톤당 200파운드⁴⁷⁾의 플라스틱세가 부과될 예정임

■ 2020년 4월 1일부터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가 실행됨

- 2018년 예산안⁴⁸⁾에서 발표된 대로 특정 디지털 기업의 매출에 대하여 2%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부과됨
 - 영국 정부는 디지털 마켓 운송료에도 디지털 서비스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 중임

41)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55만원임

42)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06만원임

43)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62만원임

44)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365만원임

45) 영국 정부, <https://www.gov.uk/tax-and-chancery-tribunal-decisions/news-corp-uk-and-ireland-ltd-v-the-commissioners-for-hm-revenue-and-customs-2019-ukut-0404-tcc> 검색일자: 2020. 3. 26.

HMRC Not Changing VAT Rate For Digital Publications Despite Loss(2020. 2. 24.), Taxnotes International

46)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430만원임

47)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0만원임

4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2호, 2018

- 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협조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영국 -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등 긴급 조치 발표]

■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11일 2020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업용 재산세 감면, 지방세 감면을 위한 기금 조성, 납세 지원제도와 관련한 조세정책을 발표함⁴⁹⁾

- 여가, 접객업에 대하여 사업용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기금(Hardship Fund)을 조성함
- 영국 과세관청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기한 서비스와 COVID-19 헬프라인을 운영함
 - 경제적 위기에 있고 미지불된 체납 세액이 있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납세기한 서비스(Time To Pay Service)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각자 처한 상황과 책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임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납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 2천명의 상담원이 있는 COVID-19 헬프라인(전화 서비스)을 운영함

■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용 재산세 면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매 유통, 접객, 여가 기업은 면제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함⁵⁰⁾

- 영국 정부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2020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용재산세가 면제되고, 소매 유통, 접객, 여가 기업에 대하여 12개월 동안 면세된다고 발표함⁵¹⁾
- 모든 영국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됨
 - 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회수액은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임
- 개인사업자가 자진 신고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이 2020년 7월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그 기한이 2021년 1월까지 자동 연장됨
 - 연장기간 동안 과태료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49)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to-employers-and-businesses-about-covid-19/covid-19-support-for-businesses>, 검색일자: 2020. 3. 20.

United Kingdo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19 March 2020), News IBFD

50)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to-employers-and-businesses-about-covid-19/covid-19-support-for-businesses> 검색일자: 2020. 3. 25.

51) United Kingdo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19 March 2020), News IBFD



[스페인 - 디지털서비스세 및 금융거래세 법안 의회 제출]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2월 28일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와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에 제출되었던 초안과 마찬가지로 EU 지침을 따르며, 디지털 서비스세는 3% 세율로 부과되며 0.5%의 과태료가 부과됨
 - 디지털 서비스세는 2020년 12월 20일까지 부과하지 않고 기업 내의 데이터 이전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는 최대 40만 유로⁵²⁾를 한도로 하는 내용이 추가됨⁵³⁾
 - 금융거래세는 기업가치가 10억유로⁵⁴⁾를 넘는 스페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금융중개인에게 0.2%의 세율로 부과됨⁵⁵⁾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스페인 -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법령 관보 게재]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로 인

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Royal Decree-Law 7/2020)을 관보에 게재함⁵⁶⁾

- 보건, 가족, 관광, 임시 금융, 행정 및 조세와 관련한 조치로서 납세기한이 6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한의 첫 3개월 동안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의 이율이 증가하지 않음
- 이 법안은 2020년 3월 13일 발효되고 정부가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하는 한 계속 적용됨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조세영역에서의 행정 절차 정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행령(Royal Decree 465/2020)을 관보에 게재함

- 스페인 정부는 행정 절차 정지 조치 등을 포함하여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시행령(Royal Decree 463/2020)을 발표하였으나, 위 행정 절차 정지 조치는 소득 신고 또는 납세 환급 자진 신고와 같은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조치 법안(Royal Decree-Law 8/2020)을 관보에 게재함⁵⁷⁾

-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납부기한이 개시된 세목

52)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5억 4,267만원임

53) Spain to Exclude Intercompany Data Transfers From Digital Tax. Bloomberg Tax:Law(March 3, 2020)

54)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조 3,575억 3천만원임

55)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pain-sends-bill-on-financial-transaction-tax-to-parliament-2020>, 검색일자: 2020. 3. 16.

56) 스페인 정부, <https://www.boe.es/boe/dias/2020/03/13/pdfs/BOE-A-2020-3580.pdf>, 검색일자: 2020. 3. 19.

Spain - Urgent tax measures related to COVID-19 - gazetted, (16 March 2020), News IBFD

57) 스페인 정부, <https://www.boe.es/boe/dias/2020/03/18/pdfs/BOE-A-2020-3824.pdf> 검색일자: 2020. 3. 23.

Spain - COVID-19 pandemic: urgent tax measures - clarification of state of alarm(19 March 2020), News IBFD

의 경우 2020년 4월 30일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고, 조세와 관련한 일정한 행정 절차의 기한이 연장됨⁵⁸⁾

-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집행 기간 내에 통지되어 과세관청이 평가한 세목 및 과세관청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조정된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 이미 결정된 경매나 자산 양도 절차의 기한 연장
- 신청, 압수 절차, 조세정보 요구, 특정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기한 연장
- 강제 집행절차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 제공의 기한 연장

-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은 과세 및 과태료 적용과 관련한 행정 절차 기간과 소멸시효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 심판 제기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기산됨
- 법안은 2020년 3월 18일 발효되고, 1개월간 적용되며 다른 적용기한이 정해진 조치를 제외하고는 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오스트리아 - 코로나19 관련 면세 및 납세기한 연장]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을 발표함⁵⁹⁾

- 납세자들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목적의 중간에납세액은 면제됨
-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납세자가 분할 납부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납세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룩셈부르크 - 코로나19 관련 긴급 조세정책 발표]

■ 룩셈부르크 재무부는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세정책을 발표함⁶⁰⁾

-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역, 농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법인세 및 지방사업세(Municipal Business Tax)의 중간에 납세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납세기한이 2020년 2월 29일 이후인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법인세, 지방사업세, 부유세의 납부기한은 4개월 연장되고,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58) Spain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reinforcement measures gazetted(20 March 2020), News IBFD

59) Austria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17 March 2020), News IBFD

60) 룩셈부르크 정부, https://gouvernement.lu/en/actualites/toutes_actualites/communiqués/2020/03-mars/17-mesures-fiscales-covid19.html 검색일자: 2020. 3. 27.

Luxembourg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18 March 2020), News IBFD



- 법인과 자연인의 소득 신고기한 및 개인 소득세와 관련한 요청의 제출, 취소, 수정 요청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
- 과세관청은 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만유로⁶¹⁾ 이하의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기한 내에 환급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
-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관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2020년 3월 14일부터 재택 근무하는 것은 룩셈부르크-벨기에 조세조약에 의한 자국 소득세 면제 요건인 24일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상호합의안을 발표함⁶²⁾
 -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국가에서 일하는 통근 근로자들이 자국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 과세 관할 국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4일임
 - 이러한 조치는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노르웨이 -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 및 긴급 조세 정책]

- 노르웨이 정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기업을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함⁶³⁾
 - 원천징수세를 2020년 3월 15일에 첫 번째로 분할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납부기한이 2020년 5월 1일까지 연장됨
 - 항공 승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부과되지 않음
- 노르웨이 정부는 2020년 3월 16일 긴급 조세 조치에 관한 법률안(Prop. 53 LS)을 발표하고, 이 법안은 같은 날 의회에서 통과됨⁶⁴⁾
 - 2020년도에 손실이 발생한 유한책임회사(LLC)는 과세소득 산출 시 2018년도 또는 2019년도의 익금에서 2020년도의 결손금을 소급 공제할 수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조치가 도입된 바 있음
 - 2020년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부유세의 납부기한은 2021년까지 연장됨
- 노르웨이 정부는 2020년 3월 16일 12%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영역의 세율을 일시적으로

61)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357만원임

62) Belgium; Luxembourg - COVID-19 pandemic: agreement on taxation of frontier workers(26 March 2020), News IBFD

63) 노르웨이 정부,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the-government-acts-to-mitigate-effects-of-the-covid-19-pandemic-on-the-economy/id2693471/>, 검색일자: 2020. 3. 20.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3/tnf-norway-tax-relief-proposals-coronavirus-related-measures.html>, 검색일자: 2020. 3. 17.

64) 노르웨이 정부,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economic-measures-in-norway-in-response-to-covid-19/id2694274> 검색일자: 2020. 3. 25.

Norwa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direct tax measures, (17 March 2020), News IBFD

8%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함⁶⁵⁾

- 인하된 부가가치세는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여객운송의 공급 및 조달, 공영 방송국, 영화관, 박물관 등에 대한 입장료, 호텔 숙박업, 캠핑 산업에 적용됨
-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납부기한을 2020년 4월 14일에서 2020년 6월 10일로 연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덴마크 -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조치 발표]

■ 덴마크 정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법안(L 134)을 의회에 제출함⁶⁶⁾

- 기업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됨⁶⁷⁾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경우 원래의 기한이 3월, 4월, 5월인 경우 1개월 연장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신고 및 납부는 2020년 2분기의 기한까지 함께 가능하며, 영세기업의 경

우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신고를 하반기에 함께 할 수 있음

- 기업의 원천징수세(A-tax) 납부기한은 원래의 기한이 4월, 5월, 6월인 경우 각 4개월씩 연장됨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B-tax) 신고 및 납부기한이 4월 20일 경우 6월 22일로 연장되고, 5월 20일인 경우는 12월 20일로 연장됨

- 이 법안은 2020년 3월 17일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납세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기업의 법인세 계좌(Skattekontoen)의 최대 환급 한도를 20만 크로네⁶⁸⁾에서 1천만 크로네⁶⁹⁾로 상향하는 내용이 추가됨⁷⁰⁾

- 기업의 체납세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최대 환급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자동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계좌로 송금⁷¹⁾하는데, 원래의 기한 내에 납부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하여 환급 한도를 상향함⁷²⁾

- 새로운 금액 한도는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65) Norwa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reduced VAT rate further reduced, (17 March 2020), News IBFD

66) Denmark - Ministry of Taxation introduces measures to mitigate financial Impact of coronavirus - law proposal presented (16 March 2020), News IBFD

67) Denmark Grants \$20 Billion in Tax Breaks to Firms Hit by Virus, Bloomberg Tax:Law, (March 11, 2020)

68)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642만원임

69) 2020. 3.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8억 2,110만원임

70) Denmark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adopted (19 March 2020), News IBFD

71) 덴마크에서는 은행에 예금 시 계좌 보관 수수료(일명 '마이너스 금리')를 지불해야 함 (<https://taxfoundation.org/denmark-coronavirus-relief-plan/> 검색일자: 2020. 3. 30.)

72) https://www.ey.com/en_dk/tax/denmark-changes-tax-legislation-in-light-of-covid-19, 검색일자: 2020. 3. 31.



[스웨덴 - 코로나19 관련 수정 예산안 의회 제출]

■ 스웨덴 정부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⁷³⁾

- 기업들은 사회보장분담금, 원천징수세,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신청해야 함
 - 연장기간은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연 1.25%의 가산금과 월 0.3%의 가산세가 적용됨
- 위 법안은 2020년 4월 7일부터 발효되나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기업은 과세관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핀란드 -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조정 요건 완화]

■ 핀란드 정부는 대통령과 공동으로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그에 따른 조세정책을 발표함⁷⁴⁾

- 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 납세기한이 도래하며

이미 납부 조정이 된 세목의 가산세율은 일시적으로 7%에서 4%로 인하됨

- 핀란드 과세관청은 납세와 관련하여 온라인, 전화, 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⁷⁵⁾

- 각 세무관서는 예약제 운영, 운영시간 변경, 일시적 폐쇄 조치를 함

■ 핀란드 과세관청은 2020년 3월 18일 체납 세액에 대한 납부 조정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함⁷⁶⁾

- 코로나19로 인하여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납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납부 조정의 완화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납세자가 소득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첫 번째 분할 납부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기한 조정의 효력이 생긴 날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연장됨

- 과세관청은 납부 조정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체납 세액도 2020년 5월 31일까지 자동적으로 납부 조정에 포함시킬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73) 스웨덴 정부, <https://www.government.se/articles/2020/03/economic-measures-in-response-to-covid-19/>, 검색일자: 2020. 3. 26.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3/tnf-sweden-tax-relief-measures-to-address-coronavirus-issues.html>, 검색일자: 2020. 3. 19.

74) 핀란드 정부, https://valtioneuvosto.fi/en/article/-/asset_publisher/10616/hallitus-totesi-suomen-olevan-poikkeusoloissa-koronavirustilanteen-vuoksi 검색일자: 2020. 3. 20. Finlan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postponement of payment deadlines, (17 March 2020), News IBFD

75)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en/About-us/newsroom/corona-situation/please-use-our-e-services-or-contact-us-by-telephone-or-post/> 검색일자: 2020. 3. 27.

76)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en/About-us/newsroom/corona-situation/you-can-request-a-payment-arrangement-for-your-company-with-eased-terms/> 검색일자: 2020. 3. 27. Finlan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requirements for payment arrangements eased(20 March 2020), News IBFD

[호주 - 코로나19 대응정책 발표]

공장, 설비, 특허권 등의 특정 무형자산을 포함함

- 호주 정부는 2020년 3월 12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⁷⁷⁾
- 즉시상각자산의 기준 금액을 기존 3만호주달러⁷⁸⁾에서 15만호주달러⁷⁹⁾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⁸⁰⁾
 - 대상기업은 기존 연간 총매출액 5천만호주달러⁸¹⁾ 미만에서 5억호주달러⁸²⁾ 미만으로 확대함
 - 적용시기는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임
- 사업투자 지원정책을 통해 신규투자의 50%를 공제함⁸³⁾
 - 대상 기업은 총매출액이 5억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임
 - 대상이 되는 신규투자자산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설치한 감가상각자산이며
- 고용주의 현금흐름 확대를 위해 적격 사업자에게 현금 보조금을 제공함⁸⁴⁾
 - 적격 사업자는 고용근로자가 있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호주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자선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함
 - 최대 5만호주달러⁸⁵⁾를 한도로 피고용인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100%를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 1만호주달러⁸⁶⁾를 지급함
 - 더불어 1차로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2020년 7-10월 기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
 - 현금보조금은 두 차례에 걸쳐 최소 2만호주달러에서 최대 10만호주달러까지 지급될 예정임
- 호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특정 세금을 6개월까지 납부 연기할 수 있도록 함⁸⁷⁾
 - 대상 세목에는 소득세, PAYG 할부금,⁸⁸⁾ 부가급

7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 검색일자: 2020. 3. 20.
 78)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257만원임
 79)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억 1,285만원임
 8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Enhancingtheinstantassetwriteoff>, 검색일자: 2020. 3. 23.
 81)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76억원임
 82)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760억원임
 8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Backingbusinessincentive>, 검색일자: 2020. 3. 23.
 8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BoostingCashFlowforEmployers>, 검색일자: 2020. 3. 23.
 85)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761만원임
 86)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753만원임
 8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Dealing-with-disasters/In-detail/Specific-disasters/COVID-19/?page=1#Support_available_for_business, 검색일자: 2020. 3. 20.
 88) PAYG(Pay As You Go)할부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세금을 분기별, 반기별, 혹은 월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호주 정부, <https://www.business.gov.au/Finance/Taxation/Pay-as-you-go-PAYG-instalments>, 검색일자: 2020. 3. 20.



여세, 소비세 등이 해당됨

■ PAYG 할부 적용 대상 기업은 할부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분기별 PAYG를 선택하여 분할납부하는 법인은 2020년 1분기 활동보고서(Activity statement)를 제출할 경우 할부금을 변경 신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기업은 할부이율(Instalment rate)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거 납부한 할부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납세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함

- 2020년 1월 23일 이후로 발생한 미납지연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함
- 기업에 현존하는 조세채무에 대한 이자를 경감하여 저율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호주 정부, 중앙 및 지방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납세자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⁸⁹⁾

- 더불어 소규모 사업자 지원 전문가로 이루어진

임시 창구(Temporary shopfronts)를 케언즈에 설치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음⁹⁰⁾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뉴질랜드 - 코로나19 대응정책 발표]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1억뉴질랜드달러⁹¹⁾의 정책패키지를 발표함⁹²⁾

- 해당 정책의 가치는 GDP의 4%에 해당함
- 조세정책으로는 상업용 및 공업용 빌딩 감가상각 재도입, 소득세 예납 대상 기준금액 인상, 보조금 지급,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 면제가 있음

■ 상업용 및 공업용 빌딩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2020/2021 사업연도부터 재도입함⁹³⁾

- 단, 주거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 뉴질랜드는 2011년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건물의 세무상 감가상각률은 0%였으나 감가상각제도를 재도입함

8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Dealing-with-disasters/In-detail/Specific-disasters/COVID-19/?page=1#We_will_work_with_you, 검색일자: 2020. 3. 20.

9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Dealing-with-disasters/In-detail/Specific-disasters/COVID-19/?page=1#Temporary_shopfronts, 검색일자: 2020. 3. 20.

91)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8조 9,358억원임

92) New Zealan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17 Mar. 2020), News IBFD

93)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covid-19/tax-relief/depreciation>, 검색일자: 2020. 3. 24.

■ 소득세 예납 대상 기준금액을 연 2,500뉴질랜드 달러⁹⁴⁾에서 5천뉴질랜드달러로 인상함⁹⁵⁾

- 소득세 납부액이 5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인 자는 2020/2021 사업연도를 위한 소득세를 예납하지 않아도 됨⁹⁶⁾
-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예상치를 반영하여 소득세 예납금액이 변경되며, 기존에 과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환급함

■ 2020년 2월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의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를 면제함⁹⁷⁾

-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최소 30%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사업자 및 개인에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기타 공과금에 대한 미납이자를 면제함

■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도급업자, 자영업자에게 자가격리 보조금을 지급함⁹⁸⁾

- 지급 대상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업자, 계약자,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보조금은 고용주를 통하여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며, 이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통해 지급한 급여는 세무상 공제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홍콩 - 2020/21년도 예산안 발표]

■ 홍콩 재무부장관은 2020년 2월 26일 20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⁹⁹⁾

■ 세율 및 과세구간의 변동은 없으며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2020/21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 시 2만홍콩달러¹⁰⁰⁾의 한도 내에서 100% 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 세액감면은 개인소득세를 종합신고 함으로써 적용됨

■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타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음¹⁰¹⁾

-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사업자에게 사업등록세를 2천홍콩달러¹⁰²⁾까지 면제함
- 2019/20년도 적용되던 사업등록세 면제 혜택

94)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85만원임

95)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covid-19/tax-relief/provisional-tax>, 검색일자: 2020. 3. 24.

96) 뉴질랜드 세법상 소득세 납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차년도 소득세를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할부로 예납하여야 함

97)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covid-19/tax-relief/uomi>, 검색일자: 2020. 3. 24.

98)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covid-19/tax-relief/leave-subsidies>, 검색일자: 2020. 3. 24.

99) Hong Kong - Budget for 2020/21 - tax measures proposed (26 Feb. 2020), News IBFD

100)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16만원임

101) KPMG, "Hong Kong Budget Summary 2020-2021"

102)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2만원임



을 1년간 연장함

-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인지세를 면제함
- 2020/21 사업연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분기별로 1,500홍콩달러¹⁰³⁾ 한도 내에서 감면함
- 2020/21 사업연도 비주거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 2분기는 5천홍콩달러,¹⁰⁴⁾ 3, 4분기는 1,500홍콩달러 한도 내에서 감면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싱가포르 - 2020년도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0년 2월 18일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¹⁰⁵⁾

■ 법인세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기업들의 현금 유동화를 돕기 위해, 2020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의 25%을 1만 5천싱가포르달러¹⁰⁶⁾ 한도 내 할인함
- 싱가포르 인건비 향상을 위해, 급여세액공제 제도를 강화함
 - 공제 대상자의 월 급여를 2019년도 4천싱가포르달러¹⁰⁷⁾에서 5천싱가포르달러¹⁰⁸⁾로 인상함

- 2020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이 기존 직전 1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함
- 2021 사업연도에 공장 및 기계 취득으로 발생한 자본화 비용의 가속상각을 선택할 수 있음
- 2021 사업연도에 지출한 리노베이션 비용이 적격지출인 경우,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 가능함

■ 개인소득세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비거주자 중개인의 원천징수세 면제가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됨
- 비거주자 연예인의 10% 특례 원천징수세율 적용이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됨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시효가 2020년 3월 31일 만료되나, 기존 적격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적용됨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란, 소규모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의 투자금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임

■ 간접세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¹⁰⁹⁾

- GST 세율의 2% 인상이 2021년도에 발효되지 않으며, 2021년도는 종전 세율인 7%로 유지됨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격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10%에서 30%

103)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4만원임

104)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79만원임

105)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Singapore-Budget/Budget-2020---Overview-of-Tax-Changes/>, 검색일자: 2020. 3. 25. 106)

106)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288만원임

107)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43만원임

108)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30만원임

109) PWC, <https://www.pwc.com/sg/en/budget-2020.html#highlights>, 검색일자: 2020. 3. 25.

가량 할인됨

- 적격 상업용 부동산에는 호텔, 서비스 아파트먼트, 회의 및 행사용 장소 등이 포함됨
- 2021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전기자동차 등에 도로세 개정안이 도입될 예정임
- 친환경자동차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자동차의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세 과세체계를 재정비하였음¹¹⁰⁾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 법인세 납부액을 30% 감면함
- 수입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함
- 비수출업자는 기존 10억인도네시아루피아¹¹²⁾에서 50억인도네시아루피아¹¹³⁾의 한도 내에서, 수출업자는 한도 없이 허용함

- 연간 소득이 2억인도네시아루피아¹¹⁴⁾ 이하인 제조업 근로자는 소득세를 면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인도네시아 - 코로나19 대응정책 발표]

- 인도네시아 경제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¹¹¹⁾
- 해당 조세정책은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6개월간 유효함
-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세 납부의무자들은 아래 감면을 적용함

[EU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조세 조치 논의]

- 유로그룹(Eurogroup)¹¹⁵⁾은 2020년 3월 16일 유로화 미사용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책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음¹¹⁶⁾
- 각 국가의 과세당국이 시행 중인 일시적 조치들을 확인함
- 유럽 국가들의 조세 관련 시행 조치에는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유급 병가와 실업급여 범위

110)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newsroom/2020/february/news-releases/Supporting_cleaner_and_greener_vehicles.html, 검색일자: 2020. 4. 2.

111) 인도네시아 경제부, <https://ekon.go.id/publikasi/detail/183/pemerintah-umumkan-stimulus-ekonomi-kedua-untuk-menangani-dampak-covid-19>, 검색일자: 2020. 3. 25.

112)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7,510만원임

113)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억 7,550만원임

114)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500만원임

115)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관 협의체임

116) News IBFD, European Union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discussed by Eurogroup, 2020. 3.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3-17_e2_2.html, 검색일자: 2020. 3. 19.)



확대,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3월 17일 EU 회원국들의 경제 지원을 위한 일시적 국가보조 체계안(State aid temporary framework)을 발표함^{117), 118)}

- 본 체계안은 2020년 3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음
- 다른 지원 종류와는 달리 본 지원 체계에서는 회원국들의 정책적 재량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그 국가 소재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대 80만유로¹¹⁹⁾를 지원할 수 있음
 - 해당 지원 수단으로 선택적 세제 혜택, 직접 보조금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음
 - 시장과 특정 경제 분야에서의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 또는 개입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117) https://ec.europa.eu/competition/state_aid/what_is_new/sa_covid19_temporary-framework.pdf

118) News IBFD, European Union - COVID-19 pandemic: European Commission sends draft proposal for State aid temporary framework, 2020. 3.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3-18_e2_1.html, 검색일자: 2020. 3. 19., News IBFD, European Union - COVID-19 pandemic: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State aid temporary framework, 2020. 3.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3-20_e2_2, 검색일자: 2020. 3. 30.

119) 2020. 3.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0억 8,300만원임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회원국의 경제·사회적 우선순위 진행 상황 평가(European Semester Winter Package 발표)(2020. 2. 26.)¹⁾

※ 이는 EU 경제·재정 정책의 조정 및 감독을 위한 제도인 European Semester 과정의 일환임

- 2019년 12월에 발표된 “2020 연간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Annual Sustainable Growth Strategy: ASGS)²⁾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권고된 이슈의 진행 상황을 평가
 - 금융서비스 및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으나, 서비스 부문 경쟁과 공공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의 진척이 느림
 - 회원국들은 2011년 European Semester가 시작된 이래 적어도 2/3 이상의 권고 사항에서 ‘일부 진전’을 달성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European Semester 과정에 통합하여 회원국의 목표 달성 진전을 평가한 결과, 17개의 목표에서 진전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
- 2050년 유럽의 기후 중립을 이루기 위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회원국별 개혁 및 주요 투자 필요 부문 등을 분석
- 국가별 보고서는 환경 지속가능성, 생산성 제고, 공정성, 거시경제 안정 네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
 - 실업률 수준은 회원국마다 크게 다르지만, 빈곤 및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으로 낮아지고 있음
 -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생산성 개선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투자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력의 고령화와 기술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가 잠재성장률 증가를 억제
 - 채무 및 지속가능성 수준은 회원국별로 크게 상이한 상황이고, EU의 적자는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높은 수준의 채무는 일부 회원국의 취약성을 반영

1) European Commission, Winter Package puts competitive sustainability at the heart of the European Semester, 2020. 2. 2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320

2) European Semester의 시작 시점에 EU의 경제·고용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으로 이는 다음 해 봄에 발표되는 국가별 권고(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의 기초가 됨

2019년 12월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

① (환경 지속가능성) 2050년까지 친환경 및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생산성 제고) 연구 및 혁신 제고를 위한 투자 지원 및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함, ③ (공정성)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정책을 실행하여 공정성을 보장해야 함, ④ (거시경제 안정) 개별 국가 및 EU 차원에서 취약점을 개선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더욱 제고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9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list.do>



- 지난 12월 경고체계보고서에서 거시경제 불균형(imbalance)^{3), 4)}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13개⁵⁾ 회원국들에 대해 심층 검토⁶⁾를 진행
 - 그리스, 이탈리아, 키프로스는 여전히 초과 불균형 상태
 -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은 불균형 상태
 - 불가리아는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남
- EU집행위, EU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 대응 업데이트 발표(2020. 3. 28.)⁷⁾
 - (보건) 전염병 관련 전문가 그룹 회의 진행, 마스크 등 보호 장비 생산 증대

- (전문가 회의) 전염병 및 바이러스 관련 전문가 7명과 EU 집행위 의장 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진행
 -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한 코로나19 위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3월 19일 집행위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및 진단 전략 등)를 발표
- (보호 장비 생산) 집행위는 EU 내 개인 보호 장비의 재고와 생산 능력, 예상 수요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생산 증대를 위한 노력 진행
 -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개인 보호 장비 및 진단키트의 공동조달을 진행하고, EU 시민 보호 메커니즘(RescEU civil protection

<표 1> 심층검토 결과

| MIP 구분 | 국가 |
|--------|--|
| 초과불균형 | 그리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
| 불균형 |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
| 불균형 없음 | 불가리아 |

주: 1. 거시경제 초과불균형은 'EMU의 적절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정의
 2. 거시경제 불균형은 'EU 회원국, EMU, 또는 EU 경제의 적절한 기능에 부작용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거시경제적 변동을 일으키는 추세'로 정의
 출처: EU 집행위, 2020. 2. 26.

3) 측정 및 평가: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청년실업률 등 대내외 불균형을 나타내는 14개의 주요지표와 25개의 보조지표를 기초로 평가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macroeconomic-imbalance-procedure/scoreboard_en

4) 결과값 정의:
 ① "거시경제 초과불균형"은 'EMU의 적절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정의
 ② "거시경제 불균형"은 'EU 회원국, EMU, 또는 EU 경제의 적절한 기능에 부작용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거시경제적 변동을 일으키는 추세'로 정의

5)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6) 심층검토는 EU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감시체계인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MIP)의 일환임.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는 특정 회원국, 유로지역, EU 전체의 경제 안전성을 저해하는 거시경제 불균형을 식별, 예방,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 점검 및 경고, 심층 검토, 정책권고 불이행 국가 제재 등의 절차로 구성됨

7) EU집행위, EU Coronavirus response - latest updat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0_552

- mechanism)을 통해 의료기기 비축량을 늘림
- (국경 및 이동)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적이 지 않은 여행을 제한하며, EU 시민 송환 조치를 유지
 - (국경 관리) 보건을 강화하고 상품 및 필수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3월 17일 국경 관리 조치에 대한 유럽의 지침을 승인
 - (EU 여행 제한) 필수적이 지 않은 EU 여행을 30일간 제한하는 조치를 3월 17일 발표
 - EU 차원의 국경 관리 조치는 3월 17일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의 화상회의에서 합의
 - 이동 제한 조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EU 시민과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종사자 등은 이동 제한을 면제
 - (물류 지원) EU 회원국 내에서 상품의 빠르고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녹색 차선 (green lanes) 지침을 3월 24일 도입
 - (EU 시민 송환) 해외에 머물고 있는 EU 시민의 송환을 위해 항공 및 재정 지원
 - (항공사 지원) 주요 공항에서 일정 비행 수를 채워 슬롯을 보유하기 위해 항공사는 승객이 거의 없는 '유령 비행'을 해왔으나, 노선 운영을 하지 않아도 슬롯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
- (경제) EU 예산과 유럽 투자 은행을 통해 일자리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 실행
 - (중소기업 지원) 유럽 투자 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은 중소기업에 2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재원은 자사의 자산과 EU 예산으로 사용
 - (유럽 투자 펀드) 집행위는 유럽 투자 기금 (European Investment Fund)에 EU 예산 보증을 통해 10억유로를 확보하여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모두 80억유로를 지원하여 최소 10만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투자) 집행위는 370억 유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 (Coronavirus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를 승인
 - (EU 연대 기금) 공공 의료 비상사태 지원, 질병 확산 예방과 감시 통제 등의 조치를 위해 최대 8억유로까지 지원금을 증액
 - (EU State aid rule 적용) 한시적으로 국가 예산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 및 기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EU 재정준칙 면책)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럽 재정 프레임워크의 재정준칙 면책 조항을 발동
 - (ECB 양적 완화) 기존 1,200억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7,500억유로 규모의 국채 및 회사채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
 -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유럽의 중요한 자산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외국인 직접 투자 선별을 돕기 위한 지침을 3월 25일 발표
 - (백신 연구) 백신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팬데믹 문제 해결에 기업 참여를 독려
 - (프로젝트 지원) 136개 백신 연구팀이 참여한 17개의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4,750만유로 투자



- (협업) 제약 산업과의 협업을 위해 긴급 자금 4,500만유로 지원(The 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
- (백신 CureVac) 유럽 백신인 CureVac 지원을 위해 EU 보증의 형태로 8천만유로를 지원하였으며, 백신 개발 기업은 2020년 6월까지 백신 임상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혁신 인센티브 지원) 팬데믹 해결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유럽혁신위원회에 요청으로 1억 6,400만유로 지원
- (올바른 정보 제공)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음모론과 같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의 확산을 방지



IMF

- IMF, 코로나바이러스 해결을 위해 약 500억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2020. 3. 4.)⁸⁾
 - 지난 3월 2일 IMF 총재와 세계은행 총재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성명 발표⁹⁾에 이어 구체적 지원 가능 금액이 포함된 추가 성명을 발표
 - 긴급 금융 지원 도구인 긴급차관제도(RCF) 혹은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잠재적으로 지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저소득 및 신흥 시장 국가들을 위해 해당 금액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

- 긴급 금융 지원 기구 혹은 기존 약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IMF의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는 약 130개국으로 추산
- 이 가운데 가장 가난한 회원국들에는 긴급 차관제도(RCF)를 통해 100억달러를 무이자(zero interest)로 제공할 예정

■ IMFblog, “Limiting the Economic Fallout of the Coronavirus with Large Targeted Policies” 포스팅(2020. 3. 9.)¹⁰⁾

- (배경)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인적 비용이 놀라운 속도로 상승했으며, 더 많은 국가로 퍼지고 있음
 - 과거의 위기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에 충격을 가져오고, 이를 반영한 상당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현황) 중국의 경우 2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건축자재와 같은 드라이 벌크(dry bulk)¹¹⁾ 운송 수요 및 공급 역시 전 세계적 경제 활동 축소를 반영하여 크게 감소
 - (중국) 제조업에서의 하락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작과 비슷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

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3/04/sp030420-imf-makes-available-50-billion-to-help-address-coronavirus>

9) 재정동향 2월 2호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038>

10) <https://blogs.imf.org/2020/03/09/limiting-the-economic-fallout-of-the-coronavirus-with-large-targeted-policies/>

11) 곡물, 면화, 석탄 따위처럼 용적 단위로 산적(散積)하는 배짐의 종류

- 향을 반영한(social distancing) 서비스업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
- (세계) 드라이 벌크(dry bulk)¹²⁾ 운송 수요 및 공급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가장 심각했던 시기와 유사하게 크게 감소하였음
 -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의 만연은 기업 활동 중단에 따른 생산 감소로 공급에 충격을 주며,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을 꺼리면서 수요에도 충격을 줌
 - (공급부문) 건강에 해로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 공급 감소 및 사망률 증가, 공급 체인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필요한 부품 확보에 어려움 증가
 - (수요부문) 소득 감소와 전염에 대한 두려움 및 불확실성에 따른 지출 감소, 회사의 급여 지불 능력 하락에 따른 근로자 해고 가능성,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이에 따른 폐업 및 일자리 감소 문제 악화
 - (금융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와 기업이 적시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 증가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
 - 차입비용이 높을수록 저금리 기간 동안 축적된 재무 취약성이 노출되어 부채상환 연장(roll over)을 할 수 없는 위험이 증가하며, 신용의 감소는 수급 충격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충격이 여러 국가에 걸쳐 동시에 일어난다면, 국제 무역 및 금융 연계 경로를 통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되어 세계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상품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
 - (정책적 제언) 정책입안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가구와 기업을 돕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목표된(targeted)” 재정, 통화, 금융 시장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공급 중단과 수요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와 기업을 목표로 현금 이전, 임금 보조금,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그들이 니즈를 충족하고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이탈리아는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기일을 연장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 보충기금을 확대하였음
 - 한국은 영세 상인을 위한 보조금을 도입하였으며, 가정 간호와 구직자에 대한 수당을 증가시켰음
 - 중앙은행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기 위해,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단기 유동성 요구에 대해 일시적이고 목표된 신용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과 대출 담보를 위한 대출을 확대하였음
 - 금융시장 규제·감독 당국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음

12) 곡물, 면화, 석탄 따위처럼 용적 단위로 산적(散積)하는 뱃짐의 종류



■ IMF, 코로나19 대책으로 회원국을 돕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대출 활용을 준비 중이라 밝힘(2020. 3. 16.)¹³⁾

- IMF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성명을 통해 회원국을 돕기 위해 1조달러 규모의 대출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으로 IMF는 유연하고 신속한 긴급 대응 수단을 배치할 수 있음을 밝혔음

■ IMF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의 긴급회의 개최 및 성명 발표(2020. 3. 23.)¹⁴⁾

- IMF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과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성명을 발표
- (배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따른 인적 비용은 이미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모든 국가는 인간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 (주요 내용) 글로벌 경제성장의 부정적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 촉구, 신흥 시장국과 저소득 국가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 회원국에 대한 IMF의 지원 방안을 언급

-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2020년 경기 침체는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더 나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1년에는 회복할

것을 기대함

- 이를 위해 격리를 우선시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러스 확산이 더 빨리 멈출수록 회복은 더 빠르고 강할 것이며, 이에 IMF는 다수의 국가들이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재정 조치들을 강력히 지지하며,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환영함
- 이러한 과감한 조치들은 개별 국가의 이익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특히 재정 분야에서 더 많은 조치들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임
- (신흥 시장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신흥 시장 국가나 저소득 국가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사상 최대인 830억달러 규모의 외국 자본이 유출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부채 문제가 있는 저소득 국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IMF의 대응) 1조달러 규모의 대출 여력을 모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

■ IMF,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추적(Tracker of Policies)의 시작을 발표(2020. 3. 25.)¹⁵⁾

13) <https://blogs.imf.org/2020/03/16/policy-action-for-a-healthy-global-economy/>

14)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3/23/pr2098-imf-managing-director-statement-following-a-g20-ministerial-call-on-the-coronavirus-emergency>

15)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3/25/pr20103-joint-statement-world-bank-group-and-imf-call-to-action-on-debt-of-ida-countries>

- 전 세계의 정부는 코로나19의 인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예외적인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 조치를 취하였음
 - 이러한 조치들은 필수적이며 환영할 만하나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함
 - IMF는 회원국들이 전염병 퇴치를 위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과 관행을 자국의 고유한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정책 추적(Policy Tracker)¹⁶⁾을 시작함
 - IMF 총재는 코로나19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면 모두가 효과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
 - 정책 추적은 2020년 3월 24일 현재 주요 경제적 대응을 요약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재량적 조치들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다만 정책 대응은 충격의 특성과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 추적이 회원국 간 정책을 비교하기 위함은 아님
- IMFblog, “Europe’s COVID-19 Crisis and the Fund’s Response” 포스팅(2020. 3. 30.)¹⁷⁾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유럽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나 경제적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 주요국들 경제에서, 산출의 약 1/3에 해당하는 필수적이지 않은 서비스 부문이 정부의 조치에 의해 폐쇄되었음
 - 이 조치가 지속될 경우 여타 경제부문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연간 GDP를 약 3%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유럽의 강력한 복지 시스템과 사회적 시장 모델은 영향을 받는 가계와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수요의 규모를 고려할 때 복잡한 작업임에 분명함
 - IMF는 이를 돕기 위해 각국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추적(Policy Tracker)’¹⁸⁾ 웹사이트를 개설
 -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활용 가능한 버퍼와 정책 여력을 사용하려면 바로 지금이 사용할 적기이나,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유럽 각 국가마다 현저하게 다름
 - 따라서 유럽의 각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① 선진 경제 국가들, ② Euro Area는 아니지만 EU 회원국인 신흥 경제 국가들, ③ 비 EU 신흥 경제 국가들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용함
 - (선진 경제국) 선진 경제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 여력과 제도를 잘 활용하여, 위기의 영

16) 정책 추적기 사이트 링크: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

17) <https://blogs.imf.org/2020/03/30/europes-covid-19-crisis-and-the-funds-response/>

18) 정책 추적기 사이트 링크: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

향을 줄이기 위해 재정·통화 확장을 시행하였음
- 유럽 중앙은행의 대규모 개입과 유럽 지도자들의 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를 통한 자금 요청은, 공공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위기에 강력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정 여력을 마련하는 데 특히 중요함

- (Euro Area는 아니지만 EU 회원국인 신흥경제국) 비록 선진 경제 국가들과 동일한 정책 여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이룬 재정적자와 부채 감소, 은행 시스템 강화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들 국가들은 버퍼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이 이를 사용할 때임
- (비 EU 신흥경제국) 정책 여력과 관련하여 IMF의 주요 관심사는 이들 비 EU 소규모 국가에 있음
 - 재정 여력은 그룹 내 국가들마다 다양하지만 정책 여력의 중요한 기여를 하는 금융시장의 깊이 및 EU와의 연계성이 부족함
 - 외부 자본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규모가 작고 덜 발달한 은행 시스템으로 인해 해당 그룹 상당수의 국가들이 재정 적자를 크게 증가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IMF의 대응) 중유럽과 동유럽의 9개 비 EU 신흥경제국이 이미 IMF에 신속금융제도(RFI)/긴급차관제도(RCF)를 통한 긴급 지원을 요청하였음

- IMF는 내부 규칙과 절차를 극적으로 간소화하여 전염병 퇴치를 위한 유럽의 노력을 지원할 것임



OECD

■ 삶의 질 관련 보고서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¹⁹⁾ 발표(2020. 3. 9.)²⁰⁾

- 2010년 대비 삶의 질은 기대수명, 소득, 일자리, 치안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
 - 기대수명은 1년 이상 증가하여, 신생아 평균 기대수명은 80세 이상으로 예상
 - 가구 가처분소득과 성인 고용률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각각 6%p, 5%p 증가
 - 8가구 중 1가구가 과밀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3%p 적은 수치
 - OECD 평균 살인율은 2010년 이래 4분의 1 감소하여 현재 10만명당 2.4명
 - 2013년 대비 삶에 대한 만족도 OECD 평균이 7.2에서 7.4로 증가(0: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음, 10: 완전히 만족)
- 반면 불안, 단절, 절망은 인구 일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9) OECD는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환으로 보통 2년을 주기로 동 보고서를 발간하여, 소득·자산, 주거, 일·가정 양립, 건강, 지식과 역량 등 11개 영역에서 회원국들의 삶의 질(웰빙) 현황을 제시(첫 발간은 2011년). 금번 보고서는 2010년 대비 2018년(혹은 데이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

20) "How's Life? reveals improvements in well-being but persistent inequalities," OECD Newsroom, 2020. 3. 9, <http://www.oecd.org/newsroom/how-s-life-reveals-improvements-in-well-being-but-persistent-inequalities.htm>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2020, <http://www.oecd.org/statistics/how-s-life-23089679.htm>

- 가구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의 감소 또는 주택 구매력 향상은 2010년 이후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연간 소득 상위 20%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은 하위 20%에 있는 사람들의 5.4배로 2010년과 차이가 없었고, 가구 가처분소득의 21% 이상을 주택에 계속 소비
- OECD 국가의 대기 질은 평균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10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숨 쉬는 공기 중 위험한 수준의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에 노출
 - *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OECD 국가 전체 인구의 12%가 상대적 소득 빈곤* 상태에 있고, 유럽 OECD 국가의 경우는 21%로 거의 두 배
 - * 국가 중위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
- 사회적 상호작용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에서 1주일에 30분 정도, 벨기에는 40분 정도 단축
- 2010년 이후 평균 삶의 만족도는 개선되었으나, OECD 국가 인구의 7%가 매우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그중 8명에 1명은 더 부정적인 상황
- 성, 연령, 교육에 따른 삶의 질 격차(inequality)는 지속
 - OECD 국가의 3분의 1에서 2010년과 2017년 사이 남녀 소득격차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2%p 감소에 그침
 - OECD 평균 고용률은 남성 83%, 여성 70%이고, 유급 및 무급노동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 시간은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남성보다 길게 나타남(하루 평균 25분, 한 달 12.5시간)
-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비 유권자 투표율이 6%p 더 높게 나타났고, 18개 OECD 국가에서 25세 남녀 수명 또한 각각 3.7년, 1.6년 더 길게 예상됨
- 자연,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험은 미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음
 - OECD 국가의 3분의 2에서 가계 부채가 연간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등 2010년 이후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1인당 OECD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이후 약 1톤 감소하여 2017년 11.9톤으로 파악되나, 이러한 감축은 국제기후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
 - 정부에 대한 신뢰는 2010년 이후 평균 3%p 향상되었으나 OECD 국가 전체 인구의 43%만이 자국 정부를 신뢰하고, 3명 중 1명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의견이 존재
- 각 지표의 수치는 OECD 평균으로, 이 평균적인 사실이 모든 회원국에 항상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은 OECD 국가마다 상이
 - 아이슬란드, 독일, 그리스, 영국의 경우, 기대 수명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9개월 미만 정도 증가하였고, 미국은 78.6세로 순증이 일어나지 않음
 - 콜롬비아, 포르투갈, 터키의 경우 15세 학생들의 PISA 과학시험 점수는 OECD 평균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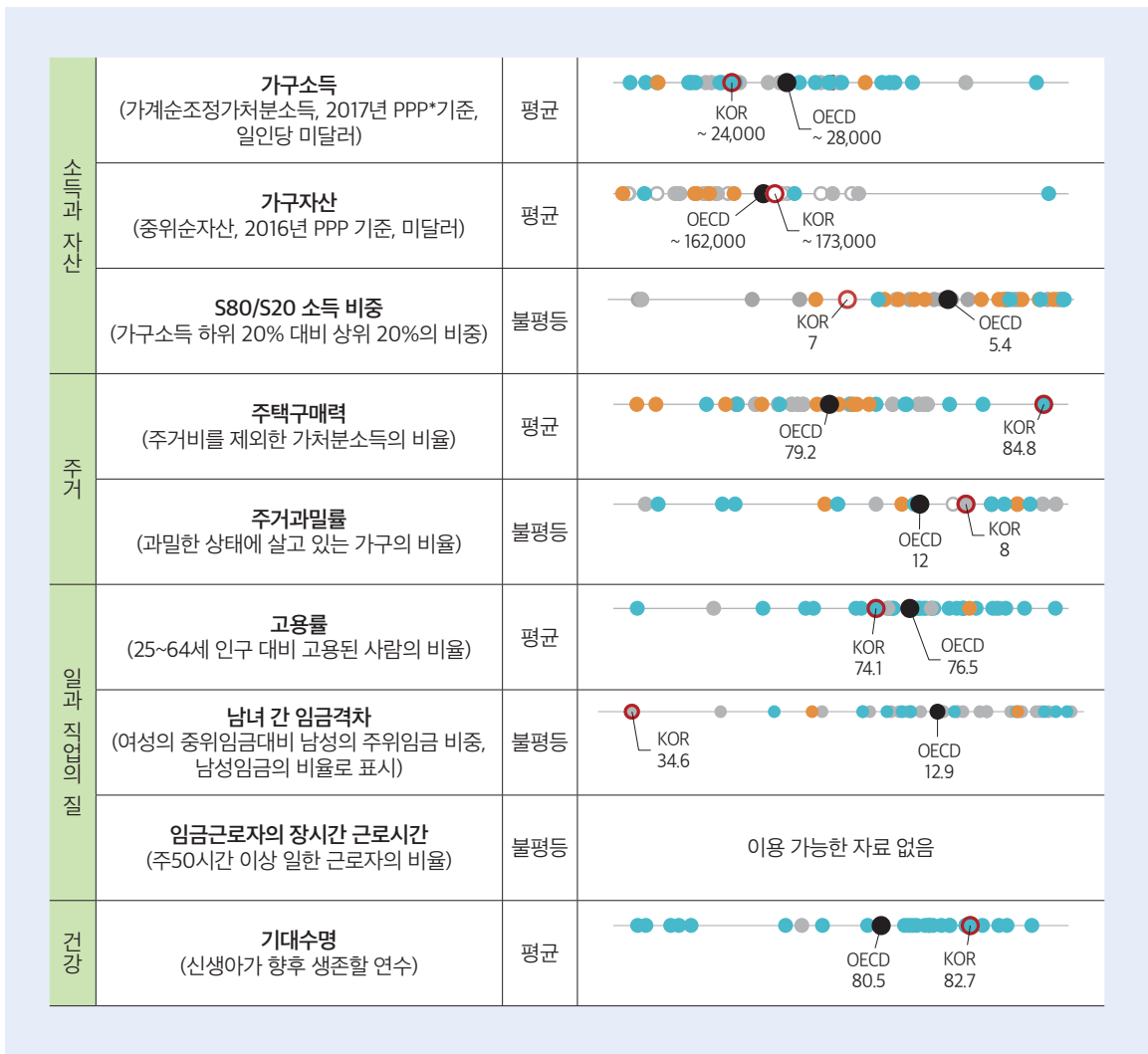


- 추세에서 벗어나 있음
- 삶의 질이 높기로 유명한 스웨덴과 덴마크는 최근 소득 불평등이 높아졌고, 사회적 지원은 낮아졌으며,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
- 경제, 자연 및 사회자본과 같은 미래 삶의 질

에 대한 자원은 2010년 이후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격차가 크게 확대

- OECD 평균 이하의 국가에서 가계 및 정부 부채는 2010년 이후 일반적으로 악화되었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커졌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대

[그림 1] 삶의 질 - OECD 평균과 한국



| | | | |
|----------|--|-----|--|
| 지식과 역량 | <p>과학분야의 학생 역량 (PISA 평균 점수)</p> | 평균 | |
| 환경의 질 | <p>대기오염 노출 (노출된 사람의 비율 > WHO 기준선)</p> | 불평등 | |
| 주관적 웰빙 | <p>삶의 만족도 (0~10점 척도의 평균)</p> | 평균 | |
| | <p>부정적 영향 균형 (어제 긍정적 기분보다는 부정적 기분을 느꼈던 사람의 비율)</p> | 불평등 | |
| 안전 | <p>살인율 (과인구 10만명당)</p> | 평균 | |
| | <p>안전감에 대한 남녀 격차 (밤에 혼자 걸을 때 남성보다 덜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율 차이)</p> | 불평등 | |
| 일과 삶의 균형 | <p>휴식 (레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한 시간, 1일당 시간)</p> | 평균 | |
| 사회적 관계 | <p>사회적 교류 (주당 시간)</p> | 평균 | |
| | <p>사회적 지원 부족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p> | 불평등 | |
| 시민참여 | <p>투표율 (투표한 선거등록자의 비율)</p> | 평균 | |

주: 1. 원의 색깔은 2010년 대비 2018년(혹은 데이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각 지표별 개선 추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개선, ●=지속적인 악화, ●=특정한 추세 없음을 나타내고, 흰색은 시계열이 불충분함을 의미

2. *는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출처: "How's Life in Korea?," Country profiles,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2020.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volume-/issue-_9870c393-en



■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소기업, 고용·사회, 보건 시스템, 조세·재정 등의 측면에서 대응 정책을 소개 (2020. 3. 16.~3. 27.)²¹⁾

- (중소기업) 각 국은 중소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특정 상황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²²⁾
 - 미국, 이탈리아, 일본, 유럽연합,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캐나다, 한국 등은²³⁾ 경제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정책에 중점을 둠
 - 일부 국가는 중소기업에 보다 중점을 둔 조치들을 취함²⁴⁾
 - 중소기업 기관이나 협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회사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단축, 임시 해고, 병가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조치들을 시행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조달 및 연체 관련 조치, 상업은행을 통한 신용 제공 및 대출상환 조건 완화 조치 등을 도입
- (고용·사회) 공급망 중단, 경제·사회적 교류 제한 조치, 수요 감소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어 즉각적인 고용·사회정책

대응이 필요²⁵⁾

- 직장 내 코로나19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정책
 - 재택 근무를 위한 기존 규정 완화 또는 새로운 옵션 도입, 원격근무를 위해 중소기업에 재정·비재정 지원 제공,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경우 근로자 노출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협상하도록 장려
- 아픈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
 - 유급병가 범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 유급병가 기간 연장, 유급병가 활용 요건 조정(예: 의료증빙 생략) 등
-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격리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
 - 유급병가 규정 조정,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한 고용주에 대한 보상, 격리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지원
 - 휴교 및 휴원에 따라 맞벌이 부모들에게 휴가 제공,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 할애, 자녀돌봄 비용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 등
- 근로자의 일자리와 기업의 경제적 생존 능력

21) OECD new online policy hub, <http://www.oecd.org/coronavirus/#id-9>
https://oecd.dam-broadcast.com/pm_7379_119_119680-di6h3qgi4x.pdf
https://oecd.dam-broadcast.com/pm_7379_119_119686-962r78x4do.pdf
https://oecd.dam-broadcast.com/pm_7379_119_119689-ud5comtf84.pdf
https://oecd.dam-broadcast.com/pm_7379_119_119695-dj2g5d5oun.pdf

22) 국가별 구체적인 대응 정책은 보고서 원문 pp. 6~19를 참고 바람

23) <https://www.nytimes.com/reuters/2020/03/15/world/europe/15reuters-health-coronavirus-economy-policy-factbox.html>

24) https://www.bruegel.org/wp-content/uploads/2020/03/PC062020_ECOFIN_Coronavirus.pdf

25) 각 국의 유형별 대응 정책 업데이트는 <http://www.oecd.org/social/Covid-19-Employment-and-Social-Policy-Responses-by-Country.xlsx>를 참고 바람

을 확보하는 정책

- 단기근로 참여 연장 및 조건부 요구사항의 일시적 유연화, 고용주에 대한 온라인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절차 단순화, 침체기 동안 직원들의 숙련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장려 등
-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소득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실업수당 확대, 저소득 가정의 급여(benefits) 접근 완화, 퇴거 중단이나 모기지·공공요금 연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 지원 등
-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연기,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설립 등
- (보건 시스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에 대응하는 보건 시스템에서의 주요 조치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 진단·치료에 취약한 사람들의 접근 보장
-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시스템 수용력 확대 및 최적화
- 주요 ‘3S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
 - (Staff: 인력 동원) 비활동기의 보건 전문가를 동원하고, 의료 공급자의 책임과 역할을 조정하며, 보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
 - (Supplies: 물품 보급)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에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확대
 - (Space: 공간 확대) 사람들을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및 확진자를 격리하며,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 디지털 도구(tool)와 데이터를 활용한 감시(surveillance) 및 돌봄
-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를 보다 잘 감지(detect), 예방(prevent), 대응(respond), 복구(recover)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제공하므로 다음의 정책이 필요
 - (detect) 디지털화된 진단뿐 아니라 조기경보 및 감시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
 - (prevent) 대중에게 권고하거나 신체 접촉을 제한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
 - (respond) 확진자들을 모니터링함에 있어 디지털 기술 활용(예: Telehealth)
 - (recover) 이번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음 발생에 대응하는 회복력(resilience)을 구축하는 데 디지털을 활용
- 진단 프로그램, 치료법,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R&D 개선
 - 새로운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R&D에 보다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R&D를 개선해야 함
 - 승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승인이 되면 백신과 치료법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새로운 약물치료에 접근함에 있어 ‘내가 먼저(me first)’라는 행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함
- (조세·재정) 잠재 생산에 대한 악영향을 제한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



- 개인과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복지급여, 소득지원을 일시적으로 제공
- 급여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고용주·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면제 또는 연기
- 보건 및 기타 비상 관련 근로자에게 세금 혜택 제공
- 수입품(식품, 의약품,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세 또는 소비세 납부 연기
- 부정위험(fraud risk)을 제한하기 위한 선별적 조치와 함께 부가가치세 초과분의 신속한 환불
- 부실 채권(bad debt)²⁶⁾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신청절차 간소화
- 수정된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필요한 선급금 조정
- 경제 사이클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 과세 기반으로 부과되는 세금 연기 또는 면제 [예: 판매세(business turnover tax),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부동산세]
- 이월결손금 공제(loss carry-forward provision)²⁷⁾ 완화
- 조세정책 등을 통한 복구 준비

■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2020. 3. 27.)²⁸⁾

- 보건 상황을 우선으로 하는 여러 조치는 비즈니스

스의 일시적 중단, 여행 및 이동성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금융시장 혼란, 신용 하락, 불확실성 증가 등을 야기

- 광범위한 섀다운이 GDP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그 영향은 2008-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추정은 관련 부문에 대해 이루어진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고려하였고, 추가적인 간접 영향은 고려하지 않음

-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정도의 섀다운을 가정* 하여 분석한 결과, 초기 대응은 주요 선진국의 연간 GDP를 20~25%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그림 1] 참고)

* 엄격한 억제 조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들(서비스업, 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 대한 완전한 섀다운 또는 부분적인 섀다운을 가정

-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의 GDP는 15% 이상, 중위(median) 경제국의 GDP는 약 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그림 2] 참고)
- 여행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여러 국가의 경우, 여행 중단 및 제한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석유생산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업 및 광업 부문을 보유한 국가는 초기 영향이 더 적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원자재 수요 감소에 의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26)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된 대출로,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채권 보전에 불안이 생긴 대출을 포함하기도 함

27) 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

28) "OECD updates G20 summit on outlook for global economy," OECD, 2020. 3. 27.

<http://www.oecd.org/newsroom/oecd-updates-g20-summit-on-outlook-for-global-economy.htm>

Evaluating the initial impact of COVID containment measures on activity, OECD, 2020.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6_126496-evgsi2gmqj&title=Evaluating_the_initial_impact_of_COVID-19_containment_measures_on_economic_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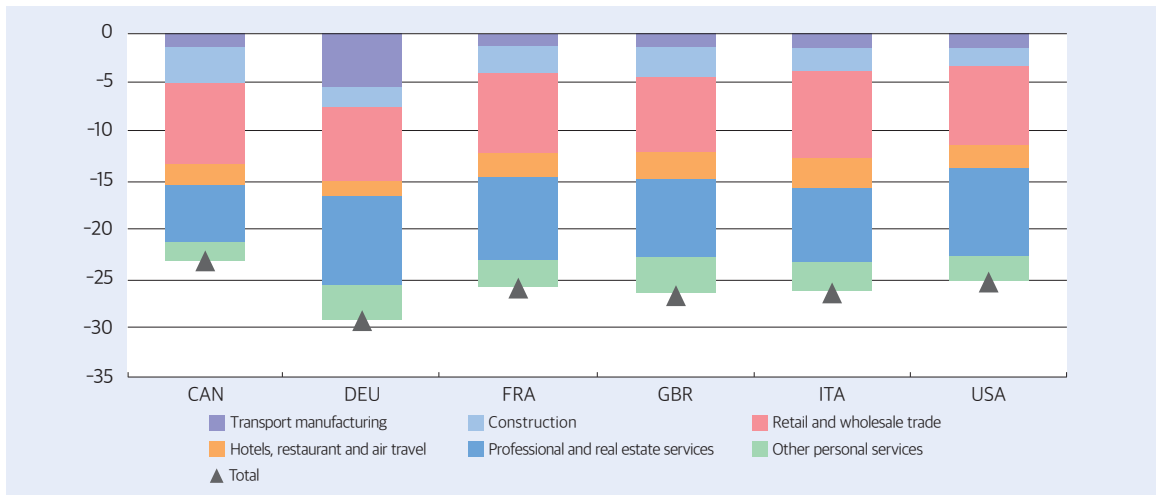
- 일부 지출 범주에서 부분적인 감소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억제 조치를 완전히 이행한 주요 선진국의 민간소비는 약 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그림 3] 참고)

* 상점 폐쇄 및 여행 제한으로 인한 의료, 신발, 가정용 가구, 패키지 휴가, 자동차 구입 및 미용과 같이 소비자 및 사업장 간 직접적인 접촉과 관련된 지출 등의 감소를 가정

[그림 2] 부분적/완전한 섯다운의 GDP에 대한 영향 - G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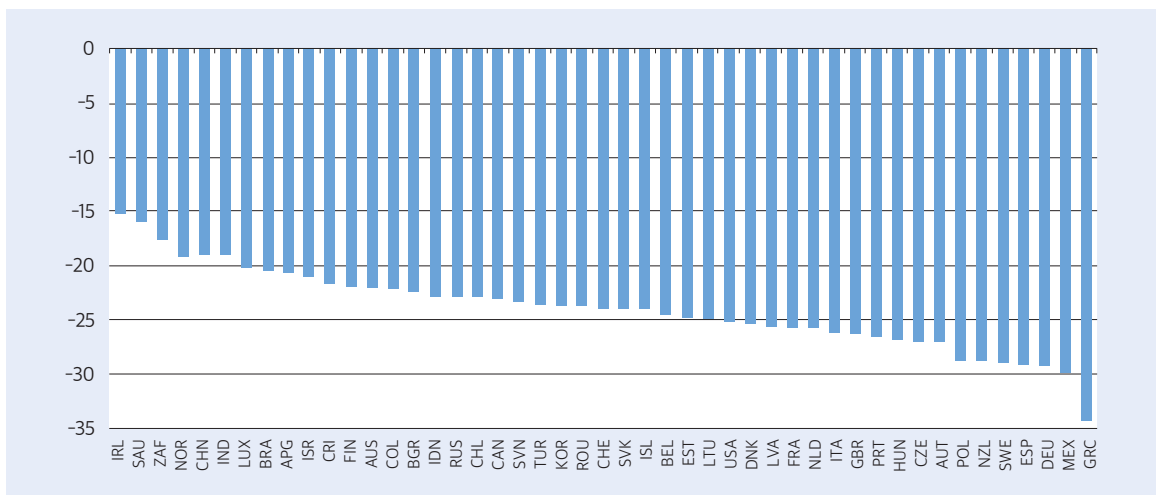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Evaluating the initial impact of COVID containment measures on activity; OECD, 2020, p. 3.

[그림 3] 부분적/완전한 섯다운의 GDP에 대한 영향 -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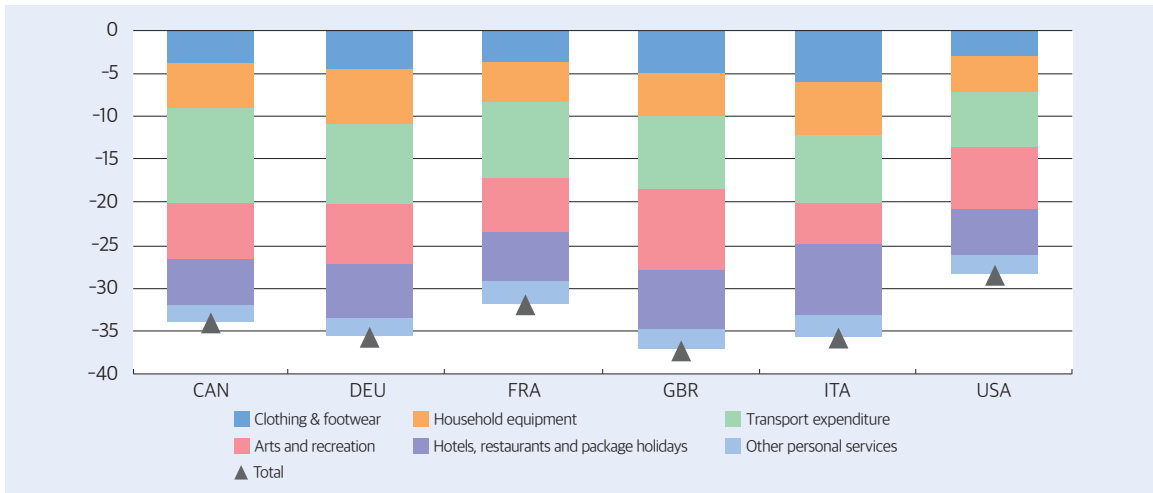


출처: Evaluating the initial impact of COVID containment measures on activity; OECD, 2020, p. 4.



[그림 4] 부분적/완전한 섯다운의 민간소비에 대한 영향 - G7

(단위: GDP 대비 %)



출처: Evaluating the initial impact of COVID containment measures on activity, OECD, 2020, p. 3.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의회,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한 추경세출예산(H.R. 6074; P.L. 116-123) 통과(2020. 3. 5.)²⁹⁾

- 이번 코로나 대응 예산은 정부 요청 규모(25억달러³⁰⁾ 대비 58억달러 증가한 총 83억달러 규모의 긴급자금(emergency spending)으로 편성³¹⁾
-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동 법안 발의 당일인 2020년 3월 4일에 하원에서 415:2로 가결되었으며, 통과 다음 날인 2020년 3월 5일에 상

원에서 96:1로 최종 확정되었음

* 의회에 최종 통과된 이번 세출예산은 의회 통과된 다음 날 (2020. 3. 6.)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입법 발효됨

- 코로나19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책정된 동 세출예산은 보건복지부, 주 정부 등을 통해 예산의 85%는 국내에서 집행될 예정

<표 2> 코로나 대응 추경예산 내역

(단위: 억달러, %)

| 구분 | 예산 |
|-----------------------------|------|
| 백신/시험(testing)/기타 치료제 개발 연구 | 31 |
| 질병예방통제센터(주·지방정부 포함) | 22 |
| 보건 예방, 의료품, 지역 보건 센터 등 | 10 |
| 대피 및 구호(aid) 등 해외 보건 대응 | 12.5 |
| 의료 전문의의 원격 의료 지원 | 0.5 |
| 기타 지출 | 0.2 |
| 합계 | 83 |

출처: CRFB, Lawmakers release emergency funding request on Coronavirus, 2020. 3. 4.

29)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bill-announcement-84/>

30) OMB,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2/Coronavirus-Supplemental-Request-Letter-Final.pdf>

31)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http://www.crfb.org/blogs/lawmakers-release-emergency-funding-request-coronavirus>

- 2020년 3월 16일 기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29명, 사망자 41명이며, 현재 50개 주 중에서 47개 주에 확진자 발생[출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2020년 3월 13일 기준, 확진자 수: 1,215명, 사망자 36명, 50개 주 중에서 43개 주에 확진자 발생

- 확진자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주는 워싱턴주(457명), 뉴욕주(325명), 캘리포니아주(224명), 메사추세츠주(10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2020년 3월 16일 기준)

* 확진자 미 발생 주는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총 3개 주임

■ 미 의회,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 법안³²⁾

(H.R. 6201) 통과 의결(2020. 3. 18.)³³⁾

* H.R. 6201은 의회에서 2020년 3월 5일에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1차(Phase 1) 추경예산³⁴⁾ 이후의 후속 대책법으로 만들어진 2차(Phase 2) 지원책으로 볼 수 있음

- 2020년 3월 30일(현지) 기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만 904명, 사망자 2,405명
- 확진자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주는 뉴욕주(5만 9,219명), 뉴저지주(1만 3,386명), 캘리포니아주(5,739명), 미시간주(5,48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출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개요) 동 법의 재정지원 규모는 1천억달러 규모³⁵⁾로 추정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식량지원 및 급여(payroll)세 공제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
 - (검사비 지원) 비보험자 및 인디언 원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비용 지원
 - 인디언 원주민의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테스트 비용 지원을 위해 6,400만달러 배정
 - 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테스트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보훈부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6천만달러를 배정하여 재향군인들의 코로나19 진단비용 지원
 - (식량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 예산 배정 등
 - 저소득층 임산부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아동 보호자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영아·아동 특별보조³⁶⁾(WIC: 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에 5억달러 배정
 - 긴급 상황에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식품지원프로그램(TEFAP³⁷⁾)에 높아진 수요를 반영하여 식량 지원 4억달러³⁸⁾ 배정

32)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33)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bill-announcement-88/>

34)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H.R. 6074), P.L. 116-123.

35) Inc.com, <https://www.inc.com/suzanne-lucas/what-senates-passage-of-families-first-coronavirus-response-act-means-for-you.html>

36) 농림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보충 프로그램

37)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38) 미 의회 상원,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minority/senate-appropriations-vice-chair-leahy-statement-on-consideration-of-the-families-first-coronavirus-response-act->



- 노인 영양 프로그램(senior nutrition programs)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음식배달서비스 등을 위해 2억 5천만달러 배정
- (가정 의료 휴가 지원) 종업원(대상: 종업원 500인 이하 고용주 및 정부 고용주의 종업원)들에게 최대 12주간의 가정 의료 휴가를 지원하며, 2주간의 유급 병가휴가 후에는 일반적으로 받았던 급여의 2/3 이상을 고용주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함
- (급여세 공제) 가정 의료 병가 요건을 갖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고용주에게 관련 금액 100% 세금 공제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100% 세금(refundable tax credit) 공제
- (주정부 지원) 주 정부에 실업수당 지원예산 총 10억달러 배정

■ 미 의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3차(Phase 3) 지원예산(H.R. 748; P.L. 116-136) 통과 의결 (2020. 3. 27.)^{39), 40)}

* 법의 공식 명칭: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

- (개요) 동 법은 제1차, 2차 지원책에 이은 종합 경기부양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총규모는 약 2.2조~2.3조달러 규모로 추정⁴¹⁾

* 법의 내용은 ① 근로자 및 가계지원 ② 기업지원, ③ 코로나 및 기타 지원 등으로 구분하였음

- (근로자 및 가계 지원)
 - (현금지급)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리베이트 지급과 함께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0달러씩 추가 지급(리베이트 지급 예산 2,900억달러 소요 전망)
 - (실업수당 확대) 모든 실업수당에 600달러씩 인상하여 지급하며, 지급기간도 13주 연장하여 지급(기존 실업수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까지 실업수당 지급을 확대할 계획)(총 2,600억달러 소요 전망)
 - (사회안전망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식품) 지원 정책(기존명칭: Food Stamp)인 영양보충지원(SNAP⁴²⁾) 프로그램 확대 예정(420억달러 소요 전망)
 - 추가적으로 아동 가정 서비스(child and family service) 자금 확대 및 주택지원(housing support) 등을 계획
- 기업지원
 - (소기업 지원) 소기업(small businesses)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및 긴급 보조금 등 약 3,770억달러 투입 예정
 - (대기업 지원) 대규모 기업 및 주·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대출 및 대출보증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금액은 약 5,100억달러로 추정
- 코로나 및 기타 지원
 - (보건 분야 지출) 병원, 보건 센터 등에 지원

39)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bill-announcement-93/>

40)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h-r-748-cares-act/>

41)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h-r-748-cares-act/>

42) Supplementary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확대 및 메디케어 지급금 인상 계획(1,800억 달러 소요 전망)
- (교육 분야 지출) 코로나19에 대응한 교육부 추경예산 및 교육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해 320억달러 배정
 - (주·지방 정부) 주별 지원금 및 운송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1,500억달러 배정(주별로 최소 12억 5천만달러 배정 계획)
 - (보건 운송업자 및 관련 업계 지원) 총 720억 달러 지원
 - 항공운송 계약자 및 직원 해고 방지를 위해 330억달러, 연방·주·지방 운송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보조금 지급에 250억 달러 소요 예정
 - (연방재난청 지원) 연방재난청(FEMA)은 재난구호기금(disaster assistance fund)을 통해 주·지방에 450억달러 배정

- ① (상원 정책) 1조달러 규모⁴³⁾의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안정화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S.3548) 발의(2020. 3. 19.)^{44), 45)}
- ② (하원 정책) 2.5조달러 규모의 “Take Responsibility for Workers and Families Act”(H.R. 6379) 법안 발의(2020. 3. 23.)⁴⁶⁾

[기타]

- 미 트럼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2020. 3. 13.)^{47), 48)}
 -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주 정부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50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⁴⁹⁾
 -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 절차 및 기준 등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① 원격 의료 지원을 위한 법적 조치 마련, ② 각 주별 의사 면허와 상관없이 수요가 높은 주에 의료진 배치, ③ Critical-Access

<참고>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현재 3차 지원책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 외에 당시 의회에서는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었음

43) NBC News, <https://www.nbcnews.com/politics/congress/negotiations-heat-1-trillion-coronavirus-bill-would-include-cash-payments-n1163826>
 44)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vice-president-pence-members-coronavirus-task-force-press-briefing-6/>
 45) 미 의회 상원, <https://www.republicanleader.senate.gov/imo/media/doc/CARES%20Act%20Final%20-%20Mar%202020.pdf>
 46) 미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democrats-introduce-take-responsibility-for-workers-and-families-act>
 47)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vice-president-pence-members-coronavirus-task-force-press-conference-3/>
 48)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message-congress-declaring-national-emergency-concerning-novel-coronavirus-disease-covid-19-outbreak/>
 49) 스태포드 재해구조 및 긴급 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P.L. 100-707)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법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연방 정부가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음 → 스태포드 법은 재해구조법(Disaster Relief Act of 1974; P.L. 93-288)을 개정한 법



Hospital* 프로그램 기준 조건⁵⁰⁾ 철회 및 의료진 추가 영입 제한 사항 철회, 기타 조치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Critical-Access Hospital은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수적인 농어촌지역 소재의 소규모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빠르게, 안전하게,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전국 주들에 즉시 비상운영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함

■ 미 연방준비제도(Fed), 무제한 양적 완화 및 신용공급 발표(2020. 3. 23.)⁵¹⁾

- 원활한 시장 기능 지원과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파급을 위해 필요한 만큼(in the amounts needed) 재무부 증권과 공적유동화기관(Agency)의 주택저당증권(상업용 포함) 매입을 지속
 - 연준은 지난 15일 양적 완화 규모를 7천억달러로 발표⁵²⁾하였으나 이번 발표에서 그 한도를 해제
- 또한 기 발표한 PDCF, CPFF, MMLF와 함께 PMCCF, SMCCF, TALF 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신용을 공급⁵³⁾
 - 외환안정기금(ESF)을 통해 CPFF, MMLF,

PMCCF, SMCCF, TALF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에 각각 100억달러의 신용보증(credit protection)을 제공

<코로나19 대응 긴급 자금대출제도>

-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공개시장대상기관(PD)에 재할인 대출을 제공(3. 17. 발표)
-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SPV를 통해 기업어음(CP)시장에서 CP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매입(3. 17. 발표, 3. 23. 기준 완화)
- (MMMF Liquidity Facility) SPV를 통해 적격 금융기관이 머니마켓뮤추얼펀드(MMMF)에서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CP 매입자금을 기관에 대출(3. 18. 발표, 3. 23. 기준 완화)
- (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SPV를 통해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투자등급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3. 23. 발표)
-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SPV를 통해 회사채 유통시장에서 투자등급기업이 발행한 채권 및 동 채권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3. 23. 발표)

50) 농어촌지역(또는 농어촌으로 간주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등 병상수가 2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급성기 진료에서의 연평균 환자 당 입원기간이 96시간보다 짧아야 하는 기준 및 기타 다양한 기준이 있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국 농촌지역에서의 병원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료비용 지원, 2015)

51) 미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0. 3. 23.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323a.htm>

52)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1호, 2020을 참고 바람

53) 미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317a.htm>, 2020. 3. 17.

미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317b.htm>, 2020. 3. 17.

미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318a.htm>, 2020. 3. 18.

미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323b.htm>, 2020. 3. 23.

미 재무부,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951>, 2020. 3. 23.

- (Term ABS Loan Facility) SPV를 통해 소비자 또는 소상공인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신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 보유자에게 대출을 제공(3. 23. 발표)

출처: 한국은행, 「연준, 무제한 자산매입 및 광범위한 신용시장 지원대책 발표」, 2020. 3. 23.을 바탕으로 정리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20 예산안 성립 발표(2020. 3. 27.)⁵⁴⁾

- 재무성은 FY2020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성립됨을 발표함
 - FY2020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2% 증가한 102조 6,580억엔으로, 이 가운데 임시·특별조치분은 전년 예산안 대비 12.3% 감소한 1조 7,788억엔임
 - 일반세출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61조 7,184억엔이 편성되었으며, 임시특별조치로 추가 편성된 1조 7,780억엔을 더할 경우 편성액은 63조 4,972억엔으로 편성됨
 - FY2020 예산안에서도 전년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임시·특별조치분이 계상되었으며, 임시·특별조치로 1조 7,788억엔이 추가로 편성되었음

[기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긴급 대응책 제2탄 발표(2020. 3. 10.)^{55), 56)}

- 국내 확산 방지와 동시에 현재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귀국자 지원, 물가대책, 국내 감염 대책 등을 중심으로 현재 예비비 103억엔을 포함한 총액 153억엔의 대응방안 실행 중
 - 사업 규모 26조엔의 「안심과 성장의 미래를 개척하는 종합 경제 대책」을 착실히 실행하고 고용의 유지와 사업의 지속을 당분간 최우선으로 총력전을 추진
 - 이번 감염 확대에 의해 경제적인 영향을 받은 사업자나 정부의 요청을 받아 이벤트나 영업 등을 중지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자금 융통 지원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연도 말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
- 2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3월 10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긴급 대응책 제2탄을 통해 사태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 (규모) 기존의 153억엔에 더해 예비비 2,715억엔(일반회계 2,295억엔, 특별회계 420억엔)의 활용에 의한 긴급 대응책 제2탄으로서 4,308억엔

54) 재무성, <https://www.bb.mof.go.jp/hdocs/bxss010br2.html>

55)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pages/coronavirus_2nd_emergency_response_summary.html

56) 수상관저,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 ー第2弾ー (本文)(令和2年3月10日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https://www.kantei.go.jp/jp/content/000060756.pdf>



<표 3> 긴급대응책 제2탄 규모

| 구분 | 내용 |
|------------------------|--|
| 1. 재정 조치 (4,308억엔) | (1) 감염 확대 방지책과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 486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아소나 간호 시설 등의 감염 확대 방지책: 107억엔 · 수급 양면에서 종합적인 마스크 대책: 186억엔 · PCR검사 체제의 강화: 10억엔 ·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 133억엔 · 치료약 등의 개발 가속: 28억엔 등 |
| | (2) 학교의 임시 휴업에 따른 발생하는 과제에의 대응: 2,463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휴가취득 지원 등 (새로운 지원금: 1,556억엔, 개인용 긴급 소액 자금 등의 특례: 207억엔) · 방과후 아동 클럽 등의 체제 강화 등: 470억엔 · 학교 급식 중단에 대한 대응: 212억엔 · 텔레워크 등의 추진: 12억엔 등 |
| | (3) 사업 활동의 축소와 일자리에 대한 대응: 1,192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조정 지원금 특례 조치 확대: 374억엔 · 강력한 자금 조달 대책: 782억엔 · 관광업에 대한 대응: 36억엔 등 |
| | (4) 사태 변화에 즉각 조치 등: 168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등에 의한 감염 국가 등에 대한 긴급 지원에 대한 출연: 155억엔 등 |
| 2. 금융 조치 (1.6조엔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프티넷 대출·보증(6,060억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5,430억엔) · 일본 정책 투자 은행 등에 의한 대기업 중견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2,040억엔) · 국제 협력 은행의 서플라이 체인 확보 등에 대한 금융 지원(2,500억엔) 등 |

주: 제2탄의 예비비 2,715억엔의 내역은 1.(1) 346억엔(중 일반 회계 346억엔), (2) 1,409억엔(중 일반 회계 989억엔), (3) 797억엔(중 일반 회계 797억엔), (4) 163억엔(중 일반 회계 163억엔)

출처: 수상관저,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 一第2弾 - 」, p. 14를 표로 작성

의 재정 조치를 강구

- 아울러, 자금 조달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본 정책 금융 공고 등에 총 1.6조엔 규모의 금융 조치를 강구
- (법 정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플루 등 대책 특별 조치법을 개정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동 법의 대상에 잠정적으로 추가하기 위한 관계 법안을 국

회에 제출(2020년 3월 10일 각의 결정)

- (확산 방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내에 감염자의 급격한 유입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현재의 입국 제한 및 여행 금지 권고 등을 실시
 - 입국 거부 조치·비자 제한 조치 검역 강화, 감염 위험 정보 등의 신속하고 기동적인 대응
- (행정 절차, 공공 조달 등에 관한 임시 조치)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 입각하여 행정 절차 및 공공 조달 기간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

- 확정 신고 기한 연장(2020년 4월 16일까지) 운전면허 갱신 연장의 임시 조치 등
 - 국제·사회 보험료의 유예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 공공 공사 등에 공사 기간의 연장 및 이월의 탄력적 대응
 - (국제 협력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개발 도상국의 감염 대책에 적극적으로 기여
 - WHO 긴급 지원 등
- (지방 재정 지원) 이미 지난 긴급 조치의 실시 에 즈음 해, 지방 부담이 생기는 경우 특별 교부세를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 대응책
- 실행 시 필요한 지방 부담에 대해서도 지방 공공 단체의 재정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응할 예정
- 재무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특별 대출 제도 창설 등 주요 조치발표 (2020. 3. 14.)^{57), 58)}
 - 제1탄의 자금용통 지원 확충(약 1천억엔) 외에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출제도(5천억엔 규모)를 창설하여 실질적으로 무이자, 무담보 자금용통 지원을 조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업황이 악화된 곳을 대상으로 「신

<표 4> 주요 제도 확충 내용(3월 17일부터 취급 시작)

| 구분 | 내용 |
|-----------|--|
| 특별이자 보급제도 | <p>특히 영향이 큰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주, 또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 등에 대해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실질 무이자화</p> <p>[적용 대상]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을 통해 차입한 중소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개인사업주(프리랜서 포함, 소규모에 한함): 요건 없음 ② 소규모 사업자(법인사업자): 매출액 ▲15% 감소 ③ 중소기업자(위 ①, ② 제외 사업자): 매출액 ▲20% 감소 ※ 소규모 요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은 종업원 20명 이하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은 종업원 5인 이하</p> <p>[이자 보급] 기간: 차입 후 당초 3년간 보급대상 상한: 중소기업 1억엔, 국민사업 3,000만엔 ※ 2020년 1월 29일 이후에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경영상담창구」 등을 경유하여 차입한 자에 대해 상기 특별대부를 소급 적용받아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 제도의 소급 적용이 가능</p> |

57) 재무성, https://www.mof.go.jp/financial_system/fiscal_finance/coronavirus-jigyousya/coronavirus-jigyousya.html

58) 재무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ている事業者の皆様へ～政策金融と国税における取組～」 https://www.mof.go.jp/financial_system/fiscal_finance/coronavirus-jigyousya/corona-jigyousya.pdf



<표 4>의 계속

| 구분 | 내용 |
|---------------------------|---|
| <p>위생환경 격변대책 특별대출</p> | <p>[적용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발생으로 일시적인 업황 악화로 자금 조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여 관업, 음식점 영업 및 식음료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1개월간의 매출고가 전년 또는 전전년의 동기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으며, 또한 향후도 감소가 전망될 것 ②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회복되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될 것</p> <p>[자금 사용처] 운전 자금 [대출한도액] 1,000만엔(여관업은 별도 3,000만엔) [금리] 기준금리 단, 진흥계획 인정을 받은 생활위생 동업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0.9% ※ 대출기간·담보 유무 등에 따라 변동 [대출기간] 운전자금 7년 이내(중 거치기간 2년 이내)</p> |
| <p>세이프티넷 대출</p> | <p>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고려한 특례조치로 2월 14일(금)부터 세이프티넷 대출 요건 을 완화하여 '매출액이 5% 이상 감소'라는 요건에 관계없이 향후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자도 포함하 여 용자 대상이 됨</p> <p>[자금 사용처] 운전 자금, 설비 자금 [대출한도액] 중소기업 7.2억엔, 국민사업 4,800만엔 [대출기간] 설비자금 15년 이내, 운전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금리] 기준 금리 ※ 대출기간·담보 유무 등에 따라 변동</p> |
| <p>국세 납부 유예</p> | <p>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국세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해, 환가의 유예가 인정되므로, 관할의 세무서(징수 담 당)에 상담(신청에 의한 환가의 유예: 국세 징수법 제 151조의 2)</p> <p>① 국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 유지가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② 납세에 대하여 성실한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것 ③ 환가 유예 받고자 하는 국세 이외의 국세 체납이 없을 것 ④ 납부해야 할 국세의 납부기한(주 1)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을 것 ⑤ 원칙적으로 담보의 제공이 있을 것(담보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음)</p> <p>(주 1) 2019년분의 신고소득세, 증여세 및 개인사업자의 소비세의 확정신고는 연장된 기한 (2020년 4월 16일)이 납부기한 (주 2) 이미 체납이 있는 경우나 체납이 된 후 6개월을 넘는 경우여도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한 환가의 유예(동법 제151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p> |

출처: 재무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ている事業者の皆様へ～政策金融と国税における取組～」, https://www.mof.go.jp/financial_system/fiscal_finance/coronavirus-jigyousya/corona-jigyousya.pdf를 요약하여 표로 작성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출」을 창설
- 「마루케이용자(소규모 사업자 경영개선 자금)」 및 「생활위생개선 대출」을 확충하여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자 한도액 인상이나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실시

- 아울러, 위기 대응 업무 등을 활용한 일본 정책투자은행·상공 조합 중앙 금고에 의한 금융 지원(2,040억엔)과 국제 협력 은행에 의한 금융 지원(2,500억엔)을 조치 하는 등 1.6조엔 규모의 금융조치를 확보



독일

[예산·결산 등]

■ 연방내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채택(2020. 3. 23.)⁵⁹⁾

- (재정지출) 연방내각은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패키지 1,225억유로 규모의 추경을 편성, 2020년 예산은 전년 대비 35.8% 증가한 4,845억유로로 집계됨
-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위해 5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도산위험이 있는 10인 이상 중소기업에 세 달간 최대 1만 5천

유로 지원

- 실업기금(Arbeitslosengeld II),⁶⁰⁾ 주거비용 고통자에 대한 기초소득 지원에 77억유로 지출
- 연방정부는 개인 보호장비의 중앙조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연방군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독일 및 EU에 대한 지원 등 추가 조치를 위해 35억유로를 제공
-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기자금으로 550억 유로를 제공하여 전염병의 추가적인 영향에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연방정부는 보증 및 유가증권 분야에서 손해 배상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막기 위해 59억유로를 지원

- (조세수입)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GDP 성장률 감소로 2020년 예산에서 계획된 조세수입은 335억유로 감소할 전망
- (신규차입) 헌법상 채무규정에 의해 규정되는 차입금 상한선인 1천억유로 초과한 1,560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단행
- 연방정부는 기본법 제115조 제2항 6번째 문장에 따라 상한선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비상상황으로 간주함
-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보호막) 조업단축수당의 유연화와 기업유동성 개선을 위한 선택적 이연 등의 세금조치 단행
- (KfW 특별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기업의 대

59) 연방재부무,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 3. 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3/2020-03-23-pm-nachtragshaushalt.html>

60) 실업보험은 실업자들을 대신해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며 1단계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중에는 실업직전 총소득의 80%를 기준으로 기여금이 납부됨. 1단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 및 기여 연수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되며 이후, 자산조사적이며 더 낮은 비율이 지급되는 두 번째 유형의 실업 급여(Arbeitslosengeld II)로 넘어가게 됨(OECD, 2018)



출 조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기업에 최대 300만 유로의 대출과 낮은 이자율 및 간편화된 위험절차를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⁶¹⁾

- 독일재건은행(KfW)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운용자본 및 투자에 최대 90%의 부채면제 비율을 적용
- 또한 KfW를 통해 3월 13일에 논의한 4,650억 유로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3,570억유로 증액한 8,220억유로로 합의함

■ 연방재무부, 2021년 예산안 및 FY2020~2024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Eckwerte) 내각결의(2020. 3. 18.)⁶²⁾

* 채무제한법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기본수치(세출, 세입, 차입액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방식

- (중기재정계획) 2021년 예산안 기본 수치는 기록적인 투자 증가 및 성장정책 등 2024년까지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 제시

-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미 있는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아 동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음
- 독일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이행 중이며 관련 대책은 2020년 연방예산에 추가로 배정될 계획
-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 경제지표는 2020년 4월 봄경제전망, 연금추정치와 2020년 5월 세수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

- (재정지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록적인 투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표어로 2021년 기본수치는 전년 대비 83억유로 증가한 3,703억유로임
- (미래성장동력)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위해 전년 계획 대비 120억유로 증가하였고 2024년까지 매년 430억유로 수준의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

<표 5> FY2020 추경예산안

(단위 : 억유로, %)

| 구분 | 당초예산 | 추경안 | 2020년 예산 |
|------|--------------|--------|---------------|
| 재정지출 | 3,620 (+1.5) | +1,225 | 4,845 (+35.8) |
| 투자 | 429 | +59 | 488 |
| 재정수입 | 3,620 | +1,225 | 4,845 |
| 조세수입 | 3,250 | -335 | 2,915 |
| 신규차입 | - | +1,560 | 1,560 |

주: () 안은 증가율
출처: 연방재무부, Nachtragshaushalt 2020, 2020. 3. 23.

61) 연방재무부, Additional KfW Special Programme 2020 for the economy to be launched today(2020. 3. 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Pressemitteilungen/2020/2020-03-23-KfW-special-programme.html>

62) 연방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3/2020-03-18-pm-eckwertebeschluss.html>

- 매년 인프라 및 디지털화에 31억유로, 운송부 문 투자에 154억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
- 연방예산에 대한 투자 외 기후보호, 디지털 인프라 및 종일케어 확장을 위한 특별기금⁶³⁾에 추가 재원투입계획
- (시민구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연방정부는 아동수당과 누진소득세 보상 및 통일 연대세⁶⁴⁾ 폐지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강화할 계획
- 연방정부는 장기 근로자의 저임금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개선 관련 초안을 준비 중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건설 및 주택에 약 14억유로, NATO 관련 지출 및 국제개발협력 지출에 각각 20억유로 증액할 계획



[예산·결산 등]

- 경제 및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FY2020 수정예산법안(PLFR: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0) 발표(2020. 3. 18.)⁶⁵⁾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및 보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재무부는 2020년도 수정예산법안을 발표함
 - 여행 제한과 상점 영업 금지로 인한 수요 측면의 충격과 공급망 단절로 인한 공급 측면의 충격은 프랑스의 생산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음
 - 수정예산법안은 코로나19에 대한 여행 및 경

<표 6> FY2021 예산 및 FY2020-2024 중기재정계획 기본수치

(단위 : 억유로, %)

| 구분 | 2020 목표 | 2021 기본수치 | 중기재정계획안 기본수치 | | |
|-----------|---------|-----------|--------------|-------|-------|
| | | | 2022 | 2023 | 2024 |
| 재정지출 | 3,620 | 3,703 | 3,765 | 3,811 | 3,870 |
| 전년 대비 증감률 | 1.5 | 2.3 | 1.7 | 1.2 | 1.5 |
| 재정수입 | 3,620 | 3,703 | 3,765 | 3,811 | 3,870 |
| 조세수입 | 3,250 | 3,242 | 3,355 | 3,504 | 3,582 |
| 신규차입 | - | - | - | - | - |
| 투자 | 429 | 429 | 429 | 429 | 429 |

출처: 연방 재무부, Eckwertebeschluss der Bundesregierung zum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21 und zum Finanzplan 2020 bis 2024

63) 독일의 특별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각급정부의 예산과는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공기업과는 달리 그 자체로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원칙법에 규정된 연방과 주의 예산에 관한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산은 연방정부의 예산과는 달리 경제계획(Wirtschaftsplan)이라 불림

64) 통일연대세: 독일의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 1998년부터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5.5% 부과(1997년까지 7.5%)(연방재무부, 2019)

65) 프랑스 예산국, Publication d'un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LFR) 2020 pour répondre aux crises économique et sanitaire en cours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20/publication-d-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plfr-2020-repondre-aux-crisis-economique-sanitaire-en-cours#.XnQFhgzaUk>



제활동 제한 등 현재 프랑스가 내린 조치들의 영향을 반영함

- 위기 기간 동안의 기업 대출 보증과 고용 및 기업 활동 긴급지원을 위한 예산 조치를 담고 있음
 - 450억유로의 직접 지원조치를 비롯해 단기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영투자은행(Bpifrance)의 3천억유로 보증 및 1조유로의 은행 대출 보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마스크 등의 필요 장비 구매와 병원 직원 수당 등에 대한 20억유로 추가 의료비 지출이 포함됨
- (경제전망) 2020년 경제성장률은 예산법에서 전망한 1.3%보다 하락한 -1%를 기록할 전망
 - 경제적 어려움과 글로벌 생산사슬의 단절로 인한 생산 저하에 더하여 경제활동 및 이동제한에 따른 경기활동 부진으로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 (재정수지)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기존 예산안 전망 2.2%에서 1.7%p 악화된 3.9%를 기

록할 전망

- 2020년 수정예산법안의 총재정수지는 2020년 예산법과 비교해 154억유로 악화된 1,085억유로
- 2020년 예산법 전망과 비교해 실업 관련 지출과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따른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악화 예상
- (재정지출) 2020년 예산법과 비교해 통제 가능한 지출 기준 62억 5천만유로가 증가하고 사회복지장 부문 지출 중 건강 관련 지출이 20억유로 증가
- (재정수입)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2020년 예산법과 비교해 2020년 수정예산법안의 재정수입은 107억유로 감소한 2,954억유로

■ 2020년 수정예산법(la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0) 통과(2020. 3. 24.)⁶⁶⁾

- 2020년 수정예산법안이 3월 20일 국민의회, 21일

<표 7> FY2020 수정예산법안

(단위 : 십억유로)

| 구분 | 2019 결산 | 2020 예산법 (A) | 2020 수정예산 법안(B) | B-A |
|------------------------------------|------------|--------------------|-----------------------|-------|
| 재정지출 | 392.2 | 400.4 | 406.7 | 6.3 |
|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 330.3 | 337.7 | 344.0 | 6.3 |
| 부처별 지출(Crédits des ministères) | 246.0 | 253.2 | 259.5 | 6.3 |
| 재정수입(Recettes nettes) | 295.3 | 307.4 | 300.2 | -7.2 |
|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 281.3 | 293.0 | 282.3 | -10.7 |
|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 14.0 | 14.4 | 17.9 | 3.5 |
|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 4.1 | -0.1 | -2.1 | -2.0 |
|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 0.2 | 0.0 | 0.0 | 0.0 |
|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 -92.7 | -93.1 | -108.5 | -15.4 |

출처: 프랑스 재무부, 2020년 수정예산법안(PLFR 2020)

66) 프랑스 예산국, Promulgation de la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0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20/promulgation-loi-finances-rectificative-2020#.Xnqu-IgzaUk>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3월 24일 2020년 수정예산법⁶⁷⁾으로 제정·공표

[기타]

■ 프랑스 재무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 조치 발표(2020. 3. 12.)⁶⁸⁾

-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기(2020. 3. 13.)^{69), 70)}
 -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매월 15일인 고용주 및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납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기한 연장에 대한 페널티는 없음
 - 이미 사회보장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지불을 취소할 수 있음
 - 매월 20일인 자영업자의 사회보장부담금 납부의 경우, 3월엔 납부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4~12월에 걸쳐 납부금이 조정됨

- 납부기한 조정에 대한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 감소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의 변경은 연간 추정이 아닌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함
- 법인세의 경우에도 공공재정청(DGFIP)에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직접 세금 환급도 고려할 수 있음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은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모든 대출을 보장하기로 함
- 실업급여 시스템을 통해 회사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 재무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450억유로 자금 투입(2020. 3. 17.)^{71), 72)}

* 2020년 3월 30일 기준,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4,550명, 사망자는 3,024명⁷³⁾

67) 프랑스 법률 사이트, LOI n° 2020-289 du 23 mars 2020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0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41746298&dateTexte=&categorieLien=id>

68) 프랑스 재무부, Coronavirus Covid-19 : chefs d'entreprise, le ministère de l'Economie est à vos côtés
<https://www.economie.gouv.fr/coronavirus-soutien-entreprises>

69) 프랑스 재무부, Les réseaux des Urssaf et des services des impôts des entreprises prennent des mesures exceptionnelles pour accompagner les entreprises
<https://www.economie.gouv.fr/mesures-exceptionnelles-urssaf-et-services-impots-entreprises>

70) 프랑스 공공행동 및 회계부(Le ministè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Coronavirus - Covid 19 : Mesures exceptionnelles de délais ou de remise pour accompagner les entreprises en difficulté
<https://www.impots.gouv.fr/portail/node/13465>

71) 프랑스 재무부, Coronavirus Covid-19 : chefs d'entreprise, le ministère de l'Economie est à vos côtés
<https://www.economie.gouv.fr/coronavirus-soutien-entreprises>

72) 프랑스 재무부, Intervention de Bruno Le Maire pour détailler les mesures de soutien mises en place pour les entreprises et les salariés face au coronavirus COVID-19 - Mardi 17 mars 2020
https://minefi.hosting.augure.com/Augure_Minefi/fr/ContenuEnLigne/Download?id=379BB721-EE5E-40D9-B9D8-C4006AA2C111&filename=2074%20-%20Discours%20Bruno%20LE%20MAIRE%20sur%20le%20de%CC%81tail%20des%20mesures%20de%20soutien%20mises%20en%20place%20pour%20les%20entreprises.pdf

73) 프랑스 정부, COVID-19 en France, <https://www.gouvernement.fr/info-coronavirus/carte-et-donnees>, 검색일자: 2020. 3. 31.



-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 연기에 총 320억유로 투입(2020. 3. 13.)^{74), 75)}
 -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매월 15일인 고용주 및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납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기한 연장에 대한 페널티는 없음
 - 이미 사회보장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지불을 취소할 수 있음
 - 매월 20일인 자영업자의 사회보장부담금 납부의 경우, 3월엔 납부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4-12월에 걸쳐 납부금이 조정됨
 - 납부기한 조정에 대한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 감소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의 변경은 연간 추정이 아닌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함
 - 법인세의 경우에도 공공재정청(DGFiP)에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 일시적 부분 실업에 대한 임금지급 지원(2020. 3. 17.)⁷⁶⁾
 -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활동이 줄거

- 나 중단되는 경우, 세전 임금 기준 70%(세후 기준 84%)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100% 보상을 받음
 - 실업제도 적용의 단순화와 강화를 통해 고용 상태 유지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체, 자영업자에 1,500유로를 지원하는 등 2개월 동안 약 20억유로 투입
 - 재무부 내 기업중재원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과 고객 간 갈등 조정 지원
 -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수도·가스·전기 등 각종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 또한,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은 단기 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억유로의 은행대출을 보증
 - 모든 규모의 회사에 현금 대출을 허용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 EU집행위는 프랑스의 3천억유로 규모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2020. 3. 21.)⁷⁷⁾

74) 프랑스 재무부, Les réseaux des Urssaf et des services des impôts des entreprises prennent des mesures exceptionnelles pour accompagner les entreprises <https://www.economie.gouv.fr/mesures-exceptionnelles-urssaf-et-services-impots-entreprises>

75) 프랑스 공공행동 및 회계부(Le ministè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Coronavirus - Covid 19 : Mesures exceptionnelles de délais ou de remise pour accompagner les entreprises en difficulté <https://www.impots.gouv.fr/portail/node/13465>

76) 프랑스 재무부, Coronavirus COVID-19 : chefs d'entreprise, le ministère de l'Economie est à vos côtés <https://www.economie.gouv.fr/coronavirus-soutien-entreprises>

77) EU 집행위, State aid: Commission approves French schemes to support economy in Coronavirus outbreak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503



영국

[예산·결산 등]

■ 재무부, 2020 예산안(Budget 2020) 발표(2020. 3. 11.)⁷⁸⁾ HM Treasury, Budget 2020, 2020. 3. 11.)⁷⁸⁾

* 영국은 2017년부터 정부 예산안을 가을에 발표하도록 변경(이전에는 봄 예산안 형식으로 발표)하였으나 2019년에는 조기 총선 추진으로 예산안 발표일을 2020년 봄으로 연기하였음

● 경제전망

* OBR의 이번 경제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은 예산안 발표 2주 전에 작업이 종료되어 코로나19 확산 관련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동 전망은 바이러스 확산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가정에 추계됨

- (경제성장률) 예산책임청(OBR)은 소비 및 기업 투자의 기여도 감소를 반영해 2020년 영국의 GDP 성장률을 1.1%로 2019년 봄 전망치(1.4%) 대비 하향 조정함

• 2021년 GDP 성장률은 1.8%로 전망되며 이후 다소 둔화되어 2024년에는 1.4%를 기록할 전망

• 예산책임청(OBR)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며, 일시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혼란(disrup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⁷⁹⁾

- (노동시장) 실업률은 지난 4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3.8%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도 3.8%를 유지하고 이후 2024까지 4.1%로 점차 높아질 전망

- (물가) CPI 인플레이션이 2020년 1.4%로 전망되며 2022년과 2023년 2.1%로 점차 증가하고 2024년에 2.0%를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낮은 차입비용, 보다 안정적인 재정

<표 8> 영국 경제 전망

(단위 : %, %p)

| 구분 | 실적 | 전망 | | | | | |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실질GDP 성장률 | 1.3 | 1.4 | 1.1 | 1.8 | 1.5 | 1.3 | 1.4 |
| (2019년 3월 전망 대비 변화(%p)) | (-0.1) | (0.2) | (-0.4) | (0.2) | (-0.1) | (-0.3) | - |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 2.5 | 1.8 | 1.4 | 1.8 | 2.1 | 2.1 | 2.0 |
| 실업률(LFS) | 4.1 | 3.8 | 3.8 | 3.8 | 3.9 | 4.0 | 4.1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Table 1.1, 2.8 일부 발췌

78) HM Treasury, Budget 2020, 2020. 3. 11.

<https://www.gov.uk/government/topical-events/budget-2020>

HM Treasury, Chancellor delivers Budget 2020, 2020. 3. 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delivers-budget-2020>

HM Treasury, Budget 2020: What you need to know, 2020. 3. 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budget-2020-what-you-need-to-know>

HM Treasury, Support for those affected by COVID-19, 2020. 3. 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pport-for-those-affected-by-covid-19/support-for-those-affected-by-covid-19>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 3. 11.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march-2020/>

79) 일시적인 결근, 글로벌 공급망 중단으로 영국의 생산 능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영국 경제는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소비 지출 및 기업 투자 감소, 수출 수요 약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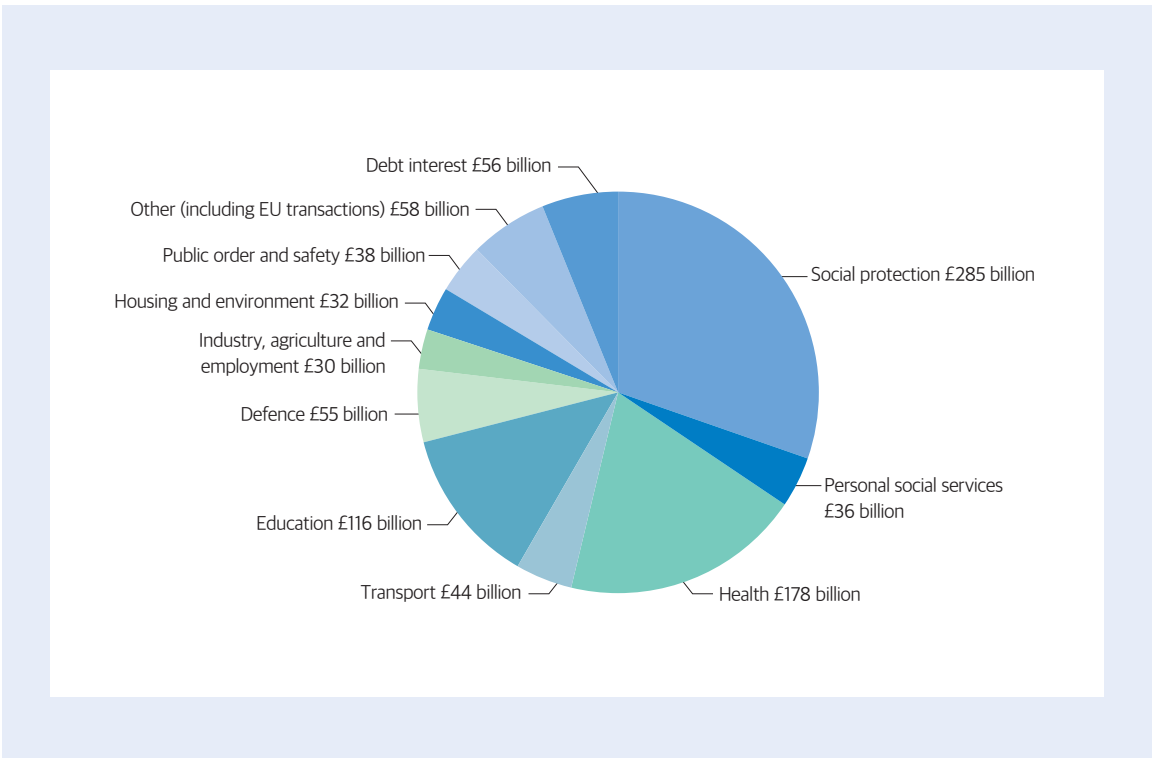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경기 부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성장 및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기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

- (수입) FY2020-21의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전년 대비 약 336억파운드 증가한 8,729억파운드(GDP 대비 37.9%)로 전망
 - 소득세(약 2,080억파운드), 부가가치세(약 1,610억파운드), 국가보험기여금(약 1,500억 파운드)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지출) FY2020-21의 총관리지출(TME)은 전

년 대비 약 409억파운드 증가한 9,277억파운드(GDP 대비 40.3%)로 전망

- FY2019-20 ~ FY2024-25 기간 동안 총관리 지출의 연간 실질증가율은 약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FY2020-21 기능별 총관리지출은 사회보호(약 2,850억파운드), 보건(약 1,780억파운드), 교육(약 1,160억파운드)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재정수지)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2019-20년 2.1%에서 2020-21년 2.4%,

[그림 5] FY2020-21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 비중



출처: HM Treasury, Budget 2020, 2020. 3. 11, p. 7. Chart1.

<표 9> 수입 및 지출 규모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 실적 | 전망 | | | | | |
|---------------|---------|---------|---------|---------|---------|---------|---------|
| | 2018-19 | 2019-20 | 2020-21 | 2021-22 | 2022-23 | 2023-24 | 2024-25 |
| 공공부문 경상수입 | 812.9 | 839.3 | 872.9 | 910.8 | 949.2 | 984.7 | 1022.3 |
| 총관리지출(TME) | 851.3 | 886.8 | 927.7 | 977.4 | 1010.7 | 1044.9 | 1080.2 |
| 경상지출(자원지출) | 758.3 | 787.7 | 815.8 | 854.1 | 881.5 | 909.9 | 940.8 |
| 부처별 지출한도(DEI) | 295.6 | 316.3 | 339.8 | 361.3 | 375.9 | 391.8 | 408.6 |
| 연간관리지출(AME) | 462.7 | 471.4 | 476.0 | 492.8 | 505.6 | 518.1 | 532.2 |
| 총투자(자본지출) | 93.0 | 99.1 | 111.9 | 123.3 | 129.2 | 135.0 | 139.4 |
| 부처별 지출한도(DEI) | 50.8 | 59.9 | 71.2 | 82.2 | 86.6 | 91.5 | 94.8 |
| 연간관리지출(AME) | 42.2 | 39.1 | 40.7 | 41.1 | 42.6 | 43.5 | 44.6 |

주: 부처별 지출한도(DEI)은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이며, 연간관리지출(AME)은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 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임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Table 1.2, 3.13 일부 발췌

2021-22년 2.8%로 점차 증가하고 2022-23부터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전망기간 동안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는 예산안의 주요 결정 조치 등을 반영해 2019년 3월 기준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됨
- (국가채무) 2020-21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77.4%를 기록할 전망이며 2021-22년 75.0%까지 하락한 이후 2024-25년 까지 75.2%로 다소 상승할 전망
- 이는 2019년 3월 기준 전망치 대비 2020-21년은 0.8%p 하향 조정된 것이며 나머지 전망 기간은 주로 차입 증가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됨
- (예산안 주요 내용)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응, 근로자 지원,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공공 서비스 제고, 기업 지원, 친환경 경제를 위한 정책 등에 중점을 둔 예산안을 발표함
-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약 120억파운드 규

모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를 지원

- NHS 및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50억 파운드의 긴급 대응 자금,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연구를 위한 4천만파운드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 등
- 법정 질병수당(Statutory Sick Pay) 확대(자가격리자 포함), 자영업자 및 특정 기준 미만 소득자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hardship fund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질병수당 보전, 소매업에 대한 사업용 재산세 감면 확대, British Business Bank를 통한 사업 중단 대출 제도(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중소기업 보조금 제공을 위해 지방정부에 추가 자금 지원(22억파운드) 등 기업 지원



<표 10> 영국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 구분 | 실적 | 전망 | | | | | |
|-----------------------|---------|---------|---------|---------|---------|---------|---------|
| | 2018-19 | 2019-20 | 2020-21 | 2021-22 | 2022-23 | 2023-24 | 2024-25 |
| 수입 및 지출 | | | | | | | |
| 공공부문 경상수입 | 37.5 | 37.7 | 37.9 | 38.0 | 38.3 | 38.4 | 38.5 |
| 총관리지출(TME) | 39.3 | 39.8 | 40.3 | 40.8 | 40.8 | 40.8 | 40.7 |
| 2020 예산의 재정 목표 | | | | | | | |
| 경상예산적자 | -0.3 | -0.1 | -0.2 | -0.1 | -0.5 | -0.7 | -0.8 |
| 공공부문순투자 | 2.0 | 2.2 | 2.6 | 2.9 | 3.0 | 3.0 | 3.0 |
| 수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 4.1 | 3.8 | 3.3 | 3.5 | 3.3 | 3.1 | 2.9 |
| 기존에 법제화된 재정 목표 | | | | | | | |
| 공공부문순차입 | 1.8 | 2.1 | 2.4 | 2.8 | 2.5 | 2.4 | 2.2 |
| 경기조정순차입 | 1.9 | 2.2 | 2.4 | 3.0 | 2.7 | 2.5 | 2.2 |
| 공공부문순채무 | 80.6 | 79.5 | 77.4 | 75.0 | 75.4 | 75.6 | 75.2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Table 1.2.

- (공공서비스) 의회 회기 말까지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상지출은 현재보다 약 1천억파운드 더 증가할 전망

- 이번 의회 회기 동안 NHS에 대한 60억파운드(연간 일반의(GP) 진료 예약 5천만 건 이상, 간호사 5만명 이상 보장 등) 신규 지원
- 대테러 정책에 대한 추가 자금,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 스포츠 시설 활용 지원 등

- (지역 균형 발전(Level up) 및 인프라 투자) 도로, 통신, 주택 등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전역에 대해 수십억 파운드의 투자를 제공

- * 영국의 도로, 철도, 통신망, 주택, 연구 등에 향후 5년 동안 약 6400억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이번 의회 회기 말까지 순 투자 규모는 지난 40년 기간 평균의 3배를 기록할 전망
- 2025년까지 주요 도로 개선에 270억파운드, 포트홀 등 도로 보수에 25억파운드, 취약 지역 기가비트 통신망 제공에 50억파운드, 향후 6년간 홍수 방지에 52억파운드 투자

- (생계비 지원) 국민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8,632→9,500파운드)하여 약 3,1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조세 감면을 제공하고,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인상(8.21→8.72파운드)

- 서민주택지원제도(Affordable Homes Programme)에 95억파운드 추가 투자, 6억 4,300만파운드 규모의 노숙자 지원, 연료세 10년 연속 동결, 주류세 동결, 탐폰세 폐지 등

- (기업 지원) 소기업의 국민보험기여금 고용 공제(Employment Allowance) 상한 인상(3천→4천파운드), 창업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대출 프로그램을 FY2021-22까지 확대, 사업용 재산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시행 등

- (친환경 경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5억파운드 지원, 저공해 차량 지원 보조금

(plug-in grant) 확대에 5억 3,300만파운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3억 4백만파운드 지원,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등

- (지방 지원) 잉글랜드 북부에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허브 신설 및 일부 재무부 인력 이전, 지역 성장 및 투자 제고를 위한 West Yorkshire Devolution Deal 발표 등

- 스코틀랜드 정부 6억 4천만파운드, 웨일즈 정부 3억 6천만파운드, 북아일랜드 2억 1천만파운드 추가 자금 지원

- (재정준칙) 이번 예산안은 기존에 법제화되어 있는 재정준칙⁸⁰⁾이 아닌 보수당 총선 공약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에 따라 수립하였으며 향후 발표될 지출 검토도 이 재정준칙에 따라 지출한도를 설정할 예정임

* 한편 가을 예산안 발표 전까지 재정 프레임 워크(재정준칙 포함)를 검토하여 거시경제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임

- 경상예산(current budget)은 5년 전망기간 중 세 번째 연도까지 적어도 균형을 달성

- 5년 전망기간 평균 공공부문 순투자자 GDP 대비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

-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이 6%를 계속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정부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을 감축하도록 조치를 마련

[기타]

■ 영국 중앙은행,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발표(2020. 3. 11.)⁸¹⁾

- (개요) 영국 중앙은행의 각 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기업·가계가 극복하고 일자리, 성장, 영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표

- 통화정책위원회(MPC)는 특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신규 TFSME⁸²⁾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0.25%로 50 basis point 인하

* 영국의 기준금리는 2016년 8월에 0.25%까지 낮아진 이후 2017년 11월에 0.25%p, 2018년 8월에 0.25%p 인상한 바 있음

- (신규 TFSME 개시)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통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12개월 동안 TFS(Term Funding Scheme)⁸³⁾를 통해 은행

<표 11> 최근 영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 구분 | '08. 2. | '08. 4. | '08. 10. | '08. 11. | '08. 12. | '09. 1. | '09. 2. | '09. 3. | '16. 8. | '17. 11. | '18. 8. | '20. 3. |
|----|---------|---------|----------|----------|----------|---------|---------|---------|---------|----------|---------|---------|
| 금리 | 5.25 | 5.00 | 4.50 | 3.00 | 2.00 | 1.50 | 1.00 | 0.50 | 0.25 | 0.50 | 0.75 | 0.25 |

출처: Bank of England 홈페이지,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검색일자: 2020. 3. 12.

80)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에서 설정한 재정준칙

81) Bank of England, Bank of England measures to respond to the economic shock from Covid-19, 2020. 3. 11.

<https://www.bankofengland.co.uk/news/2020/march/boe-measures-to-respond-to-the-economic-shock-from-covid-19>

82) Term Funding Scheme with additional incentives for SMEs

83) 2016년 8월에도 TFS를 도입하여 1천억파운드가 넘는 자금을 제공한 바 있음



권에 기준 금리에 가까운 저리로 자금 제공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자금 지원도 가능
- 한편 회사채 매입(100억파운드)과 국채 매입(4,350억파운드) 규모는 동결

- 금융정책위원회(FPC)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비율을 기존 1%에서 0%로 하향 조정하고 최소 12개월 이상 유지할 예정
- 이를 통해 최대 1,900억파운드 규모의 은행 기업대출을 지원할 전망
- 건전성규제기구(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는 은행들이 이번 정책 조치에 대응해 배당금, 보너스 등을 늘릴 수 없도록 권고

■ 영국 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조치 발표

- (주요 경과) 2020년 예산안에서 120억파운드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들을 발표함

※ 이하 내용은 예산안 발표 이후 최근까지 발표된 주요 추가 대책을 요약한 것임.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3월 1호 재정동향」 또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원문 자료를 참고 바람

- 기업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발표(2020. 3. 17.)⁸⁵⁾
 - 기업에 대해 3,300억파운드(영국 GDP의 약 15% 수준) 규모의 대출 보증 제공
 - (대기업 지원) 영국 중앙은행의 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를 통해 대기업

<표 12>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정책 발표 경과

(단위: 파운드)

| 일자 | 주요 대책 | 내용 | 규모 |
|--------|--|--|----------------|
| 3. 11. | 2020 예산안 ⁸⁴⁾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포함) | 공공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 지원 등 | 120억 |
| 3. 17. | 기업 지원 추가 대책 | 기업 대출 지원, 사업용 재산세 감면 및 보조금 지원 | 3,300억 200억 |
| 3. 20. | 근로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 기업에 고용 유지 보조금 지급, 통합급여의 표준 수당과 근로세액공제급여의 기본 항목 상향 조정 등 | *, 70억 |
| 3. 26. | 자영업자 지원 추가 조치 |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에 현금 보조금 지급 | * |

주: 별표(*)는 총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임, 규모는 각 대책 간 중복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음
출처: 영국 재무부의 보도자료들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84) HM Treasury, *Budget 2020*, 2020. 3. 11.

<https://www.gov.uk/government/topical-events/budget-2020>

HM Treasury, Support for those affected by COVID-19, 2020. 3. 11.

85) HM Treasury, Chancellor announces additional support to protect businesses, 2020. 3. 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additional-support-to-protect-businesses>

HM Treasury, Chancellor of the Exchequer, Rishi Sunak on COVID19 response, 2020. 3. 17.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chancellor-of-the-exchequer-rishi-sunak-on-covid19-response>

BOE, HM Treasury and the Bank of England launch a 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CCFF), 2020. 3. 17.

<https://www.bankofengland.co.uk/news/2020/march/hmt-and-boe-launch-a-covid-corporate-financing-facility>

이 발행하는 1년 만기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을 매입하여 기업에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단 대출 제도(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의 대출 한도 상향 조정[120만(3. 11. 예산안)→500만파운드] 및 일정 기간 이자 비용 정부 부담
- 200억파운드 규모의 사업용 재산세 지원 및 현금 보조금 지원
 - 잉글랜드의 소매업, 접객업, 레저사업의 사업용 재산세 100% 감면(12개월)
 - 소매, 접객, 레저 기업 중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만 5천파운드의 현금 보조금(Retail and Hospitality Grant Scheme) 지급
 - * 과세표준가액 1만 5천~5만 1천파운드
 - 잉글랜드의 소규모 사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Small Business Grant Scheme) 인상[3천(3. 11. 예산안)→1만파운드]
 - * 사업용 재산세의 소기업 감면 대상과 농어촌 감면 대상 업체
- 코로나19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의 상환 유예(최대 3개월)
-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와 소득 보호를 위한

정책 패키지 발표(2020. 3. 20.)⁸⁶⁾

-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카페, 펍, 식당 등의 영업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추가 지원 대책 마련
- (고용 유지 보조금(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되 직원이 일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직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
 - (지원 대상)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고용주를 지원(국세관세청(HMRC)에 신청 절차 필요)
 - (지원 규모) 세전 정규 임금(2월 28일자 기준)의 80%(인당 최대 2,500파운드/월)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가보험 분담금 및 연금 분담금⁸⁷⁾을 지원
 - * 총소요비용은 제시되지 않음
 - (지원 기간) 3월 1일부터 최소 3개월 기간(필요시 연장 예정)
- (복지시스템을 통한 약 70억파운드의 추가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표준 수당(standard allowance)과 근로세액공제급여(Working Tax Credit)의 기본 항목(basic element)을 각각 연간 약 1천파운드 상향 조정

86) HM Treasury, The Chancellor Rishi Sunak provides an updated statement on coronavirus, 2020. 3. 20.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the-chancellor-rishi-sunak-provides-an-updated-statement-on-coronavirus>

HM Treasury, Chancellor announces workers' support package, 2020. 3. 20.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workers-support-package>

87) 3월 27일 발표된 추가 지침에 따르면 임금의 80%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납부하는 국가보험 분담금과 연금 분담금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이를 통해 직원 1인당 월 300파운드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전망

HM Treasury, Further details of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announced, 2020. 3. 27.<https://www.gov.uk/government/news/further-details-of-coronavirus-job-retention-scheme-announced>



-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 중단 대출 무이자 제공 기간 12개월로 연장, 주택 수당 및 통합급여를 통한 주택 임차인 추가 지원(약 10억파운드) 등의 조치를 포함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2020. 3. 26.)⁸⁸⁾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직접 현금 보조금(Self-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을 지급할 예정

- (지원 대상) 수익이 5만파운드 미만이고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총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지급

* 수급 자격이 있는 자영업자가 국세관세청(HMRC)에 신청하면 현금 지급

- (지원 규모) 최근 3년간 월 수익 평균의 80%(최대 2,500파운드/월)를 보조

* 총소요비용은 제시되지 않음

- (지원 기간) 최소 3개월(3~5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6월 초에 지급할 예정

■ 코로나19 대응 관련 영국 중앙은행의 금융·통화 정책 조치

- (주요 경과) 영국 중앙은행은 3월 11일에 기준금리 인하(0.75%→0.25%), 신규 TFSME⁸⁹⁾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비율 하향 조정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 금리 인하, 자산매입 규모 확대 등 추가 조치를 발표함

※ 3월 11일에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중앙은행의 조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3월 1호 재정동향」 또는 영국 중앙은행 보도자료를 참고 바람

- 추가 금리 인하 및 자산매입 규모 확대(2020. 3. 19.)⁹⁰⁾

- (배경)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들과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위원회(MPC)가 추가 특별회의를 개최함

- 주요 결정

- (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0.25%에서 0.1%로 15 basis point 추가 인하

- (자산매입 규모 확대) 국채와 회사채 보유 잔액을 기존 4,450억파운드에서 2천억파운드 증액한 6,450억파운드로 확대

* 자산 추가 매입의 대부분은 국채로 이루어질 전망

- 또한 TFSME의 규모 확대도 만장일치로 찬성 결정

<표 13>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 구분 | '08. 2. | '08. 4. | '08. 10. | '08. 11. | '08. 12. | '09. 1. | '09. 2. | '09. 3. | '16. 8. | '17. 11. | '18. 8. | '20. 3. (11일) | '20. 3. (19일) |
|----|---------|---------|----------|----------|----------|---------|---------|---------|---------|----------|---------|---------------|---------------|
| 금리 | 5.25 | 5.00 | 4.50 | 3.00 | 2.00 | 1.50 | 1.00 | 0.50 | 0.25 | 0.50 | 0.75 | 0.25 | 0.1 |

출처: Bank of England 홈페이지,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검색일자: 2020. 3. 31.

88) HM Treasury, Chancellor gives support to million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2020. 3. 26.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gives-support-to-millions-of-self-employed-individuals>

89) Term Funding Scheme with additional incentives for SMEs

90) BOE, Monetary Policy Summary for the special Monetary Policy Committee meeting on 19 March 2020, 2020. 3. 19.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0/monetary-policy-summary-for-the-special-monetary-policy-committee-meeting-on-19-march-2020>

- 금융 감독 및 건전성 관리 정책 관련 추가 조치 발표(2020. 3. 20.)⁹¹⁾
 - (목적)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
 - (주요 내용) 8개 주요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에 대한 2020년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Annual Cyclical Scenario: ACS)⁹²⁾ 시행 취소 결정
 - 경기대응완충자본 비율 하향 조정(3월 11일)에 따른 조치로, 금융기관이 기업·가계에 대한 신용 공급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조치임
 - 또한 경기순환 이외의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Biennial Exploratory Scenario: BES, 격년 시행) 관련 일정 조정, 코로나19의 충격 및 정부 대응 정책을 고려한 IFRS 9 관련 지침 발표 등도 추진 예정

보장(三保, 이하 3보) 역량제고를 발표(2020. 3. 4.)^{93), 94)}

- 지방정부는 재정지출에서 3보 관련 지출을 우선으로 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유용비율(财政资金留用比例)을 단계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발표
 -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현재 확정된 각 성(省) 정부의 재정유용비율을 5%p씩 상향 조정함
 - 각 지방정부가 자금유용비율을 높여 현금 유동성을 늘리고 이를 현(县)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함
-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관련 재정지출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정부에 이전지급금 하달을 가속화하고 있음
 - 최근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 지급한 금액은 총 6조 2,800억위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조 2,600억위안 증가
 - 2019년 4분기 이미 2020년 이전지급 예산 6조 1천억위안을 사전 하달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의료위생, 일자리 및 투자 안정 등의 재정 보조금 지원을 위해 1,839억위안을 사전 지급함
 - 사전 지급된 이전지급금 중 현(县) 단위 기본 재정보장체제 보조금 2,844억위안,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 지원금 603억위안, 의료 및 치료 보조금 260억위안, 의료서비스 및



중국

[기타]

- 국무원,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강화와 기초생활보장 및 임금, 조직운영

91) BOE, Bank of England announces supervisory and prudential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Covid-19, 2020. 3. 20. <https://www.bankofengland.co.uk/news/2020/march/boe-announces-supervisory-and-prudential-policy-measures-to-address-the-challenges-of-covid-19>

92) 경기순환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

93)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3/04/content_5486914.htm

94) 新浪经济, <https://finance.sina.com.cn/china/gncj/2020-03-06/doc-iimxyqvz8185694.shtml>, 검색일자: 2020. 3. 11.



보장능력 개선 보조금 173억위안, 중앙 인
프라 관련 지출 439억위안으로 나타남

- 또한 비상대응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출[일반지
출 및 비(非)긴급 지출 등]을 감소시키고 재정지
출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 인민은행, 선별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를 결정
(2020. 3. 13)⁹⁵⁾

- 2020년 3월 16일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⁹⁶⁾
을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은행에 대해 지급준비
율 0.5~1.0%p 인하하기로 결정
- 조건에 부합하는 주식제 상업은행(股份制商业
银行)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1%p 추가 인하여
포용적 금융 분야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
-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로 4천억위안, 주식제
상업은행에 대한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 1,500억
위안으로 장기자금은 총 5,500억위안이 공급될
것임

■ 국무원 및 통계청,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
주요 경제지표 해석」 발표(2020. 3. 16.)^{97), 98)}

- 코로나19는 중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중
합적으로 볼 때 전염병의 영향은 단기적이고 통
제 가능 범위에 있다고 언급
- 다양한 정책조치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빠르게

조업을 재개함으로써 생활이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민생보장도 안정
적으로 유지되었음

- 2020년 1~2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 신흥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체 서비
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 소비
재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했으나 생
필품 및 온라인 쇼핑 매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식품류 9.7%, 음료류 3.1%, 약품류 0.2% 증가
-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하였으나 그중 상품 판매액은 3.0% 증가
- 2020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
기 대비 5.3% 상승
- 항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는 식품 15.6%, 의
류 0.5%, 주거 0.4%, 생활필수품 및 서비
스 0.1%, 교통·통신 -0.4%, 교육·문화·오락
1.6%, 의료·보건 2.2%, 기타용품 및 서비스
4.6%임
-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주요 계층의 취업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국 실
업률은 6.2%, 대도시(31개 도시) 실업률 5.7%, 주
요 취업계층(25~59세) 실업률은 5.6%를 기록

■ 재무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 2020년
1~2월 재정수입 및 지출 발표(2020. 3. 25.)^{99), 100)}

95) 중국 인민은행,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3989112/index.html>

96) 2005년 UN이 제시한 것으로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97) 중국 통계청,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2003/t20200316_1732244.html

98) 중국 국무원 신화사(2020. 3. 17), http://www.gov.cn/xinwen/2020-03/17/content_5492169.htm

99) 재무부,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renminwang/202003/t20200325_3487953.htm

100) 재무부 재무데이터, http://gks.mof.gov.cn/tongjishuju/202003/t20200324_3487618.htm

- 2020년 1~2월 일반정부 예산수입 3조 5,232억 위안(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 중앙정부 예산 수입 1조 7,242억위안(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 지방정부 예산수입¹⁰¹⁾ 1조 7,990억위안(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
 - 국세수입 3조 1,175억위안(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 세외수입 4,057억위안(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 재정수입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세금 및 수수료,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영향,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세금납부기간 연기, 전염병의 영향(특히 2020년 2월)으로 나타남
 - 특히 차량구매세(车辆购置税)가 32.8%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숙박시설(住宿餐饮), 거주민 서비스(居民服务), 교통운수세(行业税)의 세입은 각각 55.1%, 41.6%, 37.3% 감소함
 - 부동산, 건설, 제조업 등의 세입도 크게 감소
- 재정수입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자금, ‘3보(三保)’¹⁰²⁾ 지출을 위한 재정은 잘 보장되고 있음
 -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직접적 지출은 2,716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22.7% 증가함
 - 지방정부 재정능력 강화를 위해 현(县)급 기본 재정능력보장 보조금(基本财力保障机制奖补资金)으로 406억위안 등을 지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비확대 및 질적 발전을

통한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에 관한 시행의견」 발표(2020. 3. 13.)¹⁰³⁾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은 소비라고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이 필요
- 국내시장의 공급 개선, 문화관광 및 여가에 대한 소비 개선, 도농 간 소비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소비생태계 구축 가속화, 국민 소비력 제고, 안정적인 소비환경 조성 6가지 측면에서 19가지 조치를 제시
 - (국내시장의 공급 개선) 국내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독자적인 자체 브랜드 구축, 면세정책에 대한 정책 개선 등
 - (문화관광 및 여가에 대한 소비 개선) 문화·관광 상품 및 복합레저소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관광산업 시범구역 건설, 인바운드 관광 및 쇼핑 환경 개선 등
 - (도농 간 소비 네트워크 구축) 지역발전전략에 맞춘 소비센터 구축, 도시와 농촌의 물류 인프라 건설 강화 등
 - (‘스마트+’ 소비생태계 구축 가속화) 5G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에 중점을 둔 차세대 정보 인프라 구축, 친환경 스마트 제품 사용 장려, 온·오프라인 융합 소비모델 개발 필요
 - (국민 소비력 제고) 중점 그룹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잠재력 자극, 자산가치 안정화 및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

101) 본급 지방정부의 일반공공예산 수입(地方一般公共预算本级收入)을 의미

102) 지방재정 강화, 기초생활보장 및 임금, 조직운영 보장을 의미

10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关于促进消费扩容提质加快形成强大国内市场的实施意见」,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003/t20200313_1223046.html



- (안정적인 소비환경 조성) 시장질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소비분야 신용 체계 구축 등

- 향후 정부는 자동차, 가구, 가전 등 중점상품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할 것¹⁰⁴이며 각 지방정부는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함¹⁰⁵

- 난징(南京) 3억위안, Ningbo(宁波) 1억위안 등 소비쿠폰을 발행¹⁰⁶

- 난징에서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스포츠, 도서, 농촌여행, 정보쿠폰, 빈곤층 소비쿠폰 등이 있으며 쿠폰의 액면가가 다양하고 할인쿠폰의 형태도 존재함
- Ningbo의 경우 지정된 관광명소, 호텔, 영화관 서점 등을 대상으로 문화 및 관광 소비쿠폰을 발행함

- 광시(广西)는 1억위안의 소비쿠폰을 발행¹⁰⁷

- 광시에서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광시 지방정부에 등록된 쇼핑, 숙박, 음식점 등 5만여 개 업체에서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호주

[재정]¹⁰⁸

1) 근로자 및 가게 지원

■ (일회성 지원금) 연금 수급자, 사회보장수급자 등에게 1인당 750~1,500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88억호주달러를 지원

- 1차 경기부양책에서 연금수급자, 사회 보장·재향 군인·기타 소득 지원 수급자, 적격 우대 카드 보유자에게 750호주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48억 호주달러 지원

- 지원금은 비과세 적용 및 사회보장소득 등에 비산정

-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도 1회만 지급하며 3월 31일부터 지급 계획

- 2차 경기부양책에서 사회 보장·재향 군인 수급자, 적격 우대 카드 보유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 비대상자에게 추가로 750호주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40억호주달러를 지원

■ (다회성 지원금) 적격 소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Coronavirus supplement)

104) 중국 국무원 신화사(新华社)(2020. 3. 18.), http://www.gov.cn/xinwen/2020-03/18/content_5492917.htm

105) 중국 국무원 언론인터뷰, <http://www.gov.cn/xinwen/gwylflkjz61/index.htm>

106) 중국 제1경제일보(2020. 3. 14), <https://www.yicai.com/news/100548226.html>

107) 중국 국무원 신화사(新华社)(2020. 3. 25.), http://www.gov.cn/xinwen/2020-03/25/content_5495148.htm

108) 재정 호주 재무부, Economic Stimulus Package, 2020. 3. 12.(1차 경기부양책)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osh-frydenberg-2018/media-releases/economic-stimulus-package>

호주 재무부, Supporting Australian workers and business, 2020. 3. 22.(2차 경기부양책)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osh-frydenberg-2018/media-releases/supporting-australian-workers-and-business>

을 6개월간 2주마다 550호주달러씩 지원하기 위해 141억호주달러 지출

- 구직수당, 청년구직수당, 보육수당, 농가수당, 특별수당의 기존 및 신규 수급자에게 지원

■ 2차 경기부양책에서 연금조기수령에 12억호주달러, 사회보장추정요율 인하를 통한 연금 등 소득 지원 증가분에 9억호주달러 지출

- 관련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으며, 2019-20년과 2020-21년 각각 최대 1만호주달러씩 수령 가능
- 호주는 연금 및 보조금 수령자 등의 기준 소득 산정 시, 보유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을 고시된 요율(deeming rate)로 평가하고 있으며, 요율 인하로 기준 소득이 하향되어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2) 기업 지원(대출포함)

■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운영 유지, 임대료 및 요금 납부, 직원 고용 유지 등 현금 흐름 지원 (Boost Cash Flow for Employers)을 위해 319억호주달러 지원

- 1차 경기부양책에서 직원을 고용한 매출액 5천만호주달러 미만 적격 중소기업에 2천~2만 5천호주달러 현금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67억호주달러 지원
- 2차 경기부양책에서 직원을 고용한 비영리단체까

지 확대하고 현금흐름 지원을 2만~10만호주달러로 확대하는 조치에 252억호주달러 지원

- 원천징수사업자에게 원천징수액의 100%(1차부양책 50%에서 상향)를 지급하고, 비원천징수사업자에게도 기본액을 지급

■ 1차 경기부양책에서 견습생 임금 보조금 13억호주달러 지원

- 약 12만명에 달하는 견습생과 교육생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고용인에게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
- 소기업이 견습생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견습생을 새로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 지급 가능

■ 기업 투자 세제 지원과 대출 지원

- 1차 경기부양책에서 기업의 즉시상각(instant asset write off) 확대에 7억호주달러, 사업투자 지원(back business investment)에 32억호주달러 지원
 - 즉시상각 한도를 3만호주달러에서 15만호주달러로 상향하고 대상도 연매출 5천만호주달러 미만 기업에서 5억호주달러 미만 기업으로 확대¹⁰⁹⁾하며, 5억호주달러 미만 기업에 향후 15개월간 가속상각을 적용
- 2차 경기부양책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 대출 400억호주달러의 50%인 200억호주달러를 보증

109) 기존 지원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19년 상반기, 2019를 참고 바람



■ 관광업, 항공업 등 심각한 피해를 받은 산업 및 지역 지원

- 1차 경기부양책에서 코로나19에 크게 영향을 받는 관광업, 농업, 교육업 등 산업과 지역에 10억 호주달러 지원
 - 그레이트베리어리프해양공원(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과 연방국립공원(Commonwealth National Park) 입장료 면제, 기업의 대체 수출 시장 또는 공급망 구축 지원, 국내 관광 촉진 등이 포함됨
- 2차 경기부양책에서 앞서 3월 18일 발표¹¹⁰⁾된 호주 항공 및 공항에 7억 1,500만호주달러 지원
 - 항공 연료세, 국내 항공 서비스 운영료, 항공 보안료를 포함해 항공 업체가 정부에 지불하는 요금 환불 및 감면 등이 포함됨

3)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기타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차 진료, 요양 진료, 병원, 연구 등 보건 대책에 24억호주달러를 지원(2020. 3. 11.)¹¹¹⁾
 - 원격진료 지원 1억호주달러, 가정 의약품 지원 2,500만호주달러, 일반의 및 약국 지원 500만 호주달러, 보건상담콜센터 5,700만호주달러, 호

흡기전용병동 100개소 2억호주달러, 원주민 지역의 이동식 병동 6천만호주달러, 건강보험 1억 7천만호주달러

- 요양 간호 인력의 교육·훈련 및 간병인 고용 지원 1억호주달러
- 앞서 3월 6일 발표한 주·준주(territory) 정부 보건기금 협약 5억호주달러¹¹²⁾
 -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의 진단 및 치료로 인한 주 및 준주 보건서비스 추가 비용의 50%를 연방 정부가 지원
 - 연방 정부 5억호주달러를 포함해 총 10억호주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되 수요 상황에 따라 향후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 백신 개발 연구 3천만호주달러, 의약품·마스크 등 의료진의 개인 보호구 제공 11억호주달러, 보건 종사자의 교육 프로그램 3천만호주달러, 보건 지침·치료 안내 등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3천만호주달러

- 정신건강지원, 가정폭력지원, 자가격리자 의료보조, 긴급식량구호지원 등을 위해 11억호주달러 지원(2020. 3. 29.)¹¹³⁾
 - 원격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6억 6,900만호주달러 지원

110) 호주 총리실, Update on coronavirus measures, 2020. 3. 18. <https://www.pm.gov.au/media/update-coronavirus-measures>

111) 호주 총리실, \$2.4 Billion health plan to fight COVID-19, 2020. 3. 11. <https://www.pm.gov.au/media/24-billion-health-plan-fight-covid-19>

112) 호주 총리실, Coronavirus public health partnership with the states - Commonwealth to meet 50 per cent of state costs, 2020. 3. 6. <https://www.pm.gov.au/media/coronavirus-public-health-partnership-states-commonwealth-meet-50-cent-state-costs>

113) 호주 총리실, \$1.1 billion to support more mental health, Medicare and domestic violence services, 2020. 3. 29. <https://www.pm.gov.au/media/11-billion-support-more-mental-health-medicare-and-domestic-violence-services-0>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정폭력, 성폭력을 겪고 있는 호주인을 위해 행동변화프로그램, 상담전화, 피해자지원프로그램 등에 1억 5천만호주달러 지원
- 디지털 정신건강포털(Head to Health), 커뮤니티 케이션 캠페인 등 정신건강지원을 위해 7,400만 호주달러 지원
- 긴급 식량 구호를 제공하는 자선 단체 및 기타 지역사회 단체에 식품, 의복, 유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호주달러 지출
- 호주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자금 대출 및 국채 매입 발표(2020. 3. 19.)¹¹⁴⁾
- 예금취급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s)¹¹⁶⁾에 3년간 0.25%의 고정금리로 최소 900억호주달러의 자금을 제공해 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 동 기관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

[금융·통화]

- 호주중앙은행,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 금리 인하(2020. 3. 3., 2020. 3. 19.)¹¹⁴⁾
 - 3월 3일,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대응하여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리(cash rate)를 0.75%에서 사상 최저인 0.50%로 25bp 인하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 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하락할 전망
 - 해외의 코로나19 발생이 현재 호주 경제, 특히 교육 및 관광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호주 재무부, 예금취급기관 및 비예금취급기관의 채권 매입 발표(2020. 3. 19.)¹¹⁸⁾
 - 3년 만기 국채의 목표 수익률을 0.25%(현재 0.45% 수준)로 조정해 채권시장에서 국채를 매입 - 총재는 이번 매입이 수량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¹¹⁷⁾

114) 호주중앙은행(RBA), Statement by Philip Lowe, Governor: Monetary Policy Decision, 2020. 3. 3. <https://www.rba.gov.au/media-releases/2020/mr-20-06.html>
 호주중앙은행(RBA), Statement by Philip Lowe, Governor: Monetary Policy Decision, 2020. 3. 19. <https://www.rba.gov.au/media-releases/2020/mr-20-08.html>

115) 호주중앙은행(RBA), Statement by Philip Lowe, Governor: Monetary Policy Decision, 2020. 3. 19. <https://www.rba.gov.au/media-releases/2020/mr-20-08.html>

116) 관련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예금 수취가 인가된 은행, 신용조합, 주택금융조합

117) 호주중앙은행(RBA), Speech by Governor Philip Lowe, 2020. 3. 19. <https://www.rba.gov.au/speeches/2020/sp-gov-2020-03-19.html>

118) 호주 재무부, Government to invest up to \$15B in support of SME lending, 2020. 3. 19.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osh-frydenberg-2018/media-releases/government-invest-15b-support-sme-lending>



- 같은 날 발표된 호주중앙은행의 자금 대출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호주재무관리청(AOFM)을 통해 주택저당담보부채권, 기타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매입해 예금취급기관(ADIs) 및 비예금취급기관에 1년간 150억호주달러의 신용 여력을 제공



캐나다

[재정]

1) 근로자 및 가계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근로자 및 기업에 최대 27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 조치를 발표¹¹⁹⁾

- (임시소득지원) 병가, 유급병가가 없는 자, 격리자, 가정에서 자녀 돌봄 중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 지원 조치를 실시
 - 격리되는 1주일간 고용보험 질병급여 청구
 - 질병급여 청구를 위한 의료증빙서류 불필요
 - 다음 대상자들은 최대 900캐나다달러의 응급 치료혜택(최대 15주간 격주치료)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관리됨
 - 코로나19 격리자나 확진자 중 자영업자 포함 고용보험 질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가족이 코로나19 격리자나 확진자여서 가족 돌봄 중인 자영업자 포함 고용보험 질

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

- 고용보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돌봄 또는 감독이 필요한 자녀가 있고 고용소득이 없는 자
- (장기소득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긴급지원 혜택이 제공됨
 - 고용보험 자격이 없고 실업자인 근로자들에게 최대 50억캐나다달러 지원
 - 고용보험은 작업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
- (특정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한 특정그룹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원주민 커뮤니티(First Nations, Inuit, and Métis Nation communities) 3억 5백만캐나다달러 지원
 - 캐나다 학생대출상환에 6개월 무이자 지불유예(moratorium) 제공
 - 시장상황의 변동과 노인들의 퇴직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020년 등록된 퇴직소득기금(RRIFs) 최소인출요구를 25% 감소
 - 코로나19 발생기간 동안 노숙자 대피소의 밀집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숙박 시설 확보, 침대구입 등 Reaching Home Initiative 계획에 1억 5,750만캐나다달러 지원
 - 원주민 공동체 시설 기금을 포함한 캐나다 폭력피해 여성 및 어린이 지원을 위해 최대 5천만

119)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 검색일자: 2020. 3. 18.

캐나다달러 지원

- (모기지 금융 지원) 재무부, 주택청(CMHC)¹²⁰⁾ 및 기타 모기지 보험사를 통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조치 시행
 - 상환 연기, 대출금 할부 재상환(loan re-amortization), 미지급 이자 및 적격 비용의 자본화, 특별 상환 등을 포함

2) 기업 지원(대출 포함)

-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작업공유 프로그램(Work-Sharing Program)¹²¹⁾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임금보조금을 제공¹²²⁾
 - 고용주와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작업공유 프로그램의 강화조치를 발표
 -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특정 부문 및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용되며 프로그램 적용기간을 최대 38주에서 76주로 변경
 - 작업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요건 완화, 고용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감소시킴
 - 작업공유 프로그램 도입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체 운영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으

며 고용주에게 요구되던 판매 및 생산 실적보고의 부담을 덜어줌

-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보조금 지원조치를 발표
 - 정부는 매출손실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해 적격 고용주에게 3개월간 임시 임금 보조금을 지원
 - 해당 기간 동안 지불된 보수의 10% 수준, 직원 당 최대 1,375캐나다달러, 고용주당 최대 2만 5천캐나다달러 지원

3)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기타 지원

- 전염병의 위협에 대응하고 건강,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초기 조치에 총 11억캐나다달러를 지원¹²³⁾
 -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캐나다달러가 할당
 - 국경 및 여행 관련 조치, 건강포트폴리오 운영센터(the Health Portfolio Operations Centre) 및 국립미생물연구소(the National Microbiology Laboratory)의 지속적인 활성화 등
 - 캐나다 자국민 본국 송환을 위해 710만캐나다달러, WHO에 2백만캐나다달러 기부 등

120) 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121)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를 지원하고 피고용인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기업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규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데 동의하는 적격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혜택을 제공

122)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wage_subsidies 검색일자: 2020. 3. 27.

123)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canadas-reponse/government-canada-takes-action-covid-19.html> 검색일자: 2020. 3. 18.



-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약 27백만 캐나다달러를 투자
 -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의 개발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캐나다 전역의 47개 연구팀을 지원하고 있음
- 각 주(provinces)와 준주(territories) 등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5억캐나다달러를 제공
 -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각 지역 의료기관(보건소 등), 필수용품 및 의약품 확보에 대한 협력 등
- 개인보호장비(PPE) 및 기타 필요한 의료용품, 장비구매에 5천만캐나다달러를 지원, 세계보건

기구에 2백만캐나다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WHO 및 기타 국제 파트너들에게 추가 5천만캐나다달러를 지원

[금융·통화]

- (금리 인하) 캐나다 중앙은행, 지난 3월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 인하를 발표(2020. 3. 4.,¹²⁴⁾ 3. 13.¹²⁵⁾)
- 코로나19가 캐나다 및 세계 경제전망에 부정적인 충격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3월 4일 정책금리를 기존 1.75%에서 1.25%로

<표 14> 캐나다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내역 | 합계 |
|--|--------|
| 즉각적인 공중보건 대응 | 50 |
| 캐나다 자국민 본국 송환 | 7 |
| WHO에 대한 초기지원 | 2 |
|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교육 | 50 |
| 연구에 대한 투자 | 275 |
| 각 주(provinces)와 준주(territories)에 대한 지원 | 500 |
|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지원 | 50 |
| 국제 원조 | 50 |
| 고용보험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 5 |
| 작업 공유 프로그램(Work Sharing Program) | 12 |
| 원주민 관련 지원을 포함한 추가적인 공중보건 대응 | 100 |
|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 27,000 |
| 합계 | 28,101 |

주: 캐나다의 코로나19 초기 재정 지원(2020. 3. 13.), 추가 조치(2020. 3. 18.) 정리
출처: 캐나다 정부, 코로나19(COVID-19) 대응 조치

124) "Bank of Canada lowers overnight rate target to 1 ¼ percent," 캐나다 중앙은행, 2020. 3. 4.(<https://www.bankofcanada.ca/2020/03/fad-press-release-2020-03-04/>)

125) "Bank of Canada lowers overnight rate target to ¾ percent," 캐나다 중앙은행, 2020. 3. 13.(<https://www.bankofcanada.ca/2020/03/bank-of-canada-lowers-overnight-rate-target-to-%c2%be-percent>)

0.5%p 인하

- 코로나19의 캐나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최근 유가 급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13일 정책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0.5%p 인하(3월 16일 발효)

■ (유동성 공급) 캐나다 중앙은행,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2020. 3. 12.)¹²⁶⁾

- 정부 채권 환매 프로그램(Canada bond buyback program)의 범위 확대
- 6개월 및 12개월 기간의 새로운 기간물(term repo)¹²⁷⁾ 운용 추가

■ (금융 조치) 재무부,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몇몇 금융 조치를 발표(2020. 3.

13.)¹²⁸⁾

- (민간부문 자금조달) 코로나19 대응기간 동안 ‘기업 신용 이용 정책’¹²⁹⁾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

- 주로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주관은 ‘캐나다 기업개발은행(BDC)’¹³⁰⁾ 및 ‘캐나다 수출개발은행(EDC)’¹³¹⁾

- BDC 및 EDC는 100억캐나다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대내 안정성 버퍼) 캐나다 금융감독원(OSFI)¹³²⁾은 국내 주요 은행들의 대내 안정성 버퍼(Domestic Stability Buffer) 요구를 위험가중자산의 1.25%로 하향 조정

- 이 조치를 통해 캐나다 대형은행의 대출규모를 높여 3천억캐나다달러 이상의 추가 대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126) “Bank of Canada Announces the Expansion of its Bond Buyback Program and Term Repo Operations,” 캐나다중앙은행, 2020. 3. 12. (<https://www.bankofcanada.ca/2020/03/expansion-bond-buyback-term-repo/>)

127) 만기가 2일 이상으로 사전에 만기가 확정된 repo(환매 조건부) 거래를 의미

128) “Canada outlines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and the financial sector,” 재무부, 2020. 3. 13.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03/canada-outlines-measures-to-support-the-economy-and-the-financial-sector.html>

129) BCAP;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130) BDC;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131) EDC; Export Development Canada

132) OSFI;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재정포럼

2020년 4월호 통권 제286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편집위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0년 4월 16일 발행 / 제24권 제4호(통권 제28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 인쇄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4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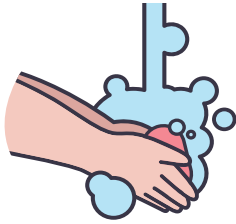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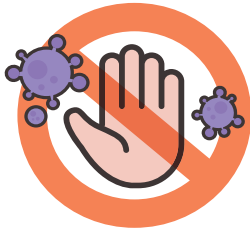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